

연구보고서 2021-01

서울지역 필수노동자 노동실태와 권익개선방안 :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을 중심으로

최은영
이상아

발 간 사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노동의 최전선(frontline)에서 근무하고 있는 '필수노동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보건·의료, 돌봄 서비스, 운송서비스, 환경미화 분야에서 우리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노동조건은 고강도·저임금·고용불안 등으로 취약하며, 사회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필수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였고, 2021년 1월 제정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필수노동자'를 지원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였고, 필수노동자의 안전과 사회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필수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있는 '서울 지역 필수노동자 실태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필수노동자 조사대상은 서울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환경미화원입니다. 이들의 노동은 공공성이 강한 만큼, 서울시와 기초지자체의 의지로 청소노동자의 근로조건과 환경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어려운 노동현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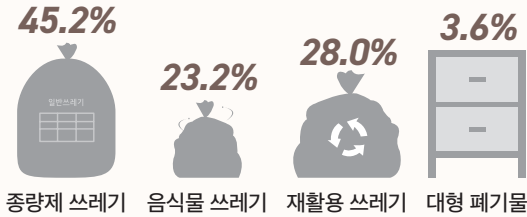
연구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서울시 필수노동지원팀, (사)서울특별시 생활폐기물협회, 민주노총 서울일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지역시설환경관리지부 등 관련 기관에서 협조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 설문지 개발부터 많은 조언을 해주신 민주노총 서울일반노동조합 김영수 부위원장님, (주)민영주택 정진훈 전무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가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소속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의 근로조건과 노동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길 기대합니다.

2021년 12월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 이 남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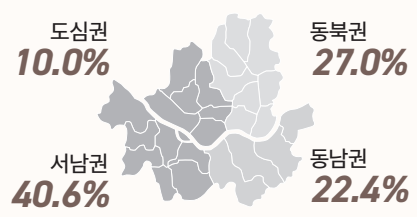
서울지역 필수 노동자 노동실태조사

설문응답자 일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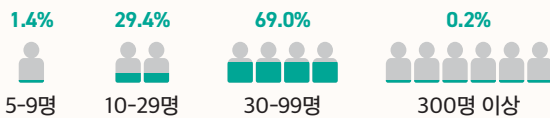
생활폐기물 성상별



현재 직장 지역(권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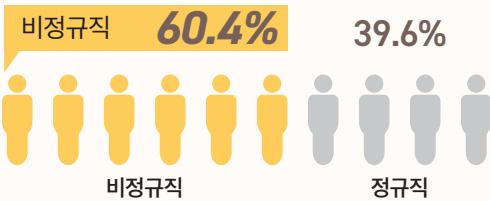
직장(사업체)의 종사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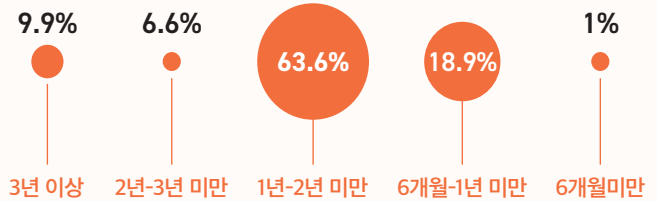
업무경력



고용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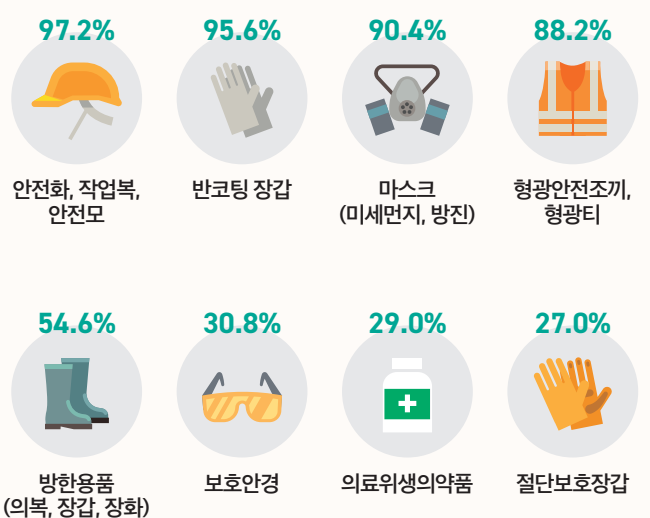
비정규직의 경우 일하는 곳에서의 근로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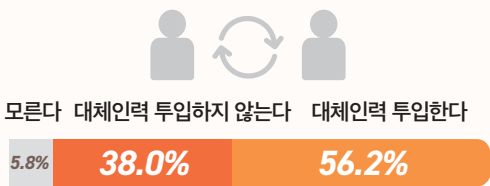
월 평균 임금 (세후 급여)



지급받고 있는 안전보호장구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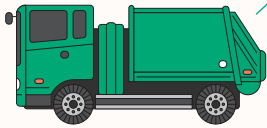
연차휴무 사용시 회사에서 대체인력 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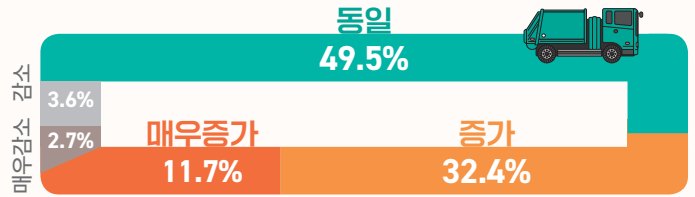
✓ 청소차량 안전장치 (중복응답)

66.5% 70.4% 66.9% 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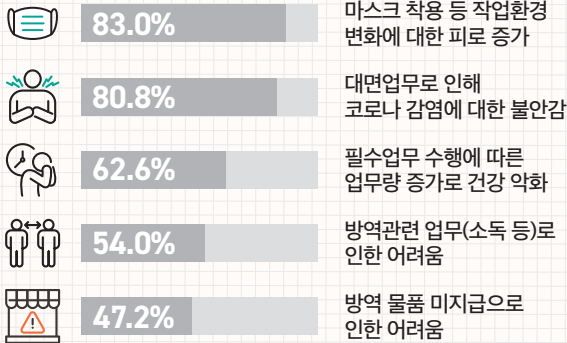
전방영상장치 안전멈춤바 안전스위치 후방영상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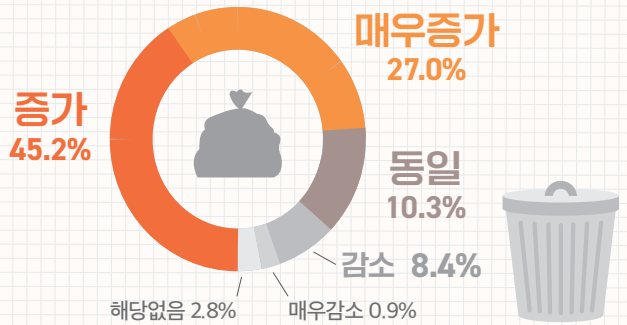
✓ 코로나19 이후, 청소차량의 하루 평균 이동 거리 변화



✓ 코로나19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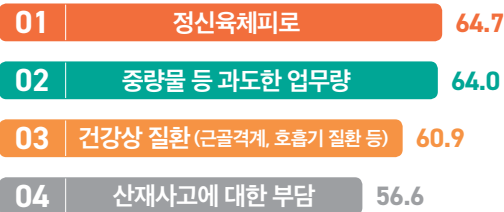


✓ 코로나19 이후, 하루 평균 수거하는 쓰레기 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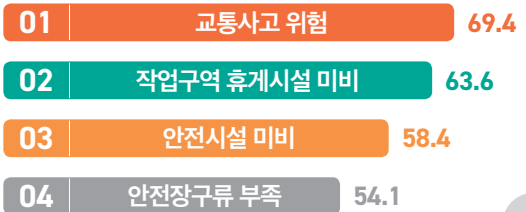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TOP 4

✓ 노동환경에서



✓ 작업환경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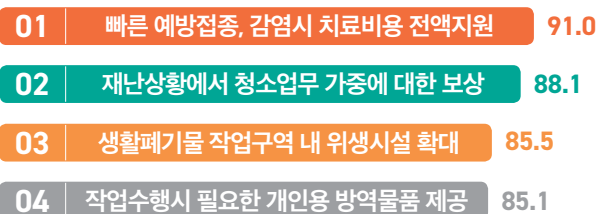


(참고: 귀하는 ○○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100점만점
매우 그렇다 100점, 그런편이다 75점, 그저 그렇다 50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5점,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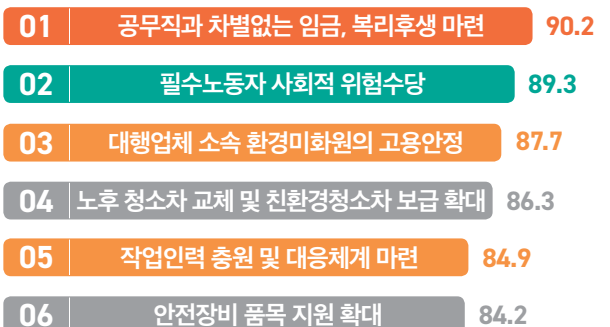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 대책 TOP 4~6

✓ 코로나19 재난 시



✓ 노동환경적 측면



(참고: 지원해야 할 과제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100점만점
매우 동의함 100점, 동의함 75점, 보통 50점, 동의하지 않음 25점, 전혀 동의하지 않음 0점

- 목 차 -

I.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안전한 일상적 삶을 지켜주는 필수노동	1
2) 사회 서비스 영역의 필수노동자	1
3) 국가 및 자치단체의 필수노동자 보호법	2
4) 서울지역 필수노동자(환경미화원) 보호·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3
1) 연구대상	3
2) 연구방법	3
3) 연구진행절차	5
II. 코로나19와 필수노동자	6
1. 국제사회의 필수노동자는 누구이며, 그들에게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가?	6
1) 국제기구의 필수노동자 개념	6
2) 미국의 필수노동자	8
3) 영국의 필수노동자	12
4) 캐나다의 필수노동자	14
5) 국제사회의 필수노동자 지원 종합	16
2. 한국의 필수노동자는 누구이며, 그들의 노동환경은 어떠한가?	16
1) 국내 필수노동자 현황	20
2)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국내 필수노동자	26
3) 서울지역의 필수노동자	28
4) 필수노동자 지원은 지역단위에서 출발해야..	37
III. 필수노동자로서 환경미화원의 노동현황	39
1.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의 쓰레기 수집·운반 작업의 이해	39

1) 종량제(일반쓰레기) 수집·운반	39
2)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40
3) 재활용쓰레기 수집·운반	41
4)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42
2.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42
1) 전국 생활폐기물 발생, 처리, 관리현황	42
2) 서울시 생활폐기물 발생, 처리, 관리현황	47
3.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	53
1) 사고 및 건강문제 요인	53
2) 안전지침	54
3) 정부 및 지자체의 대응	56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민간위탁	58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운영 현황	58
2) 서울시 생활폐기물 관리체계와 민간위탁 현황	60
IV. 서울지역 필수노동자(환경미화원) 노동실태 조사 결과	63
1. 조사목적과 의의	63
2. 조사방법과 내용	63
1) 설문조사	63
2) 대면면접조사	64
3. 설문조사 결과	65
1) 응답현황	65
2) 일반사항	66
3) 업무범위 및 수행방식	67
4) 노동환경(작업환경, 휴게시간)	71
5) 고용안정(고용형태, 계약형식)	82
6) 노동조건(임금·근로시간)	84
7) 코로나19 상황	89
8) 애로사항	97
9)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 대책	107

4. 정성조사 결과	119
1) 서론	119
2) 고용안정	119
3) 노동조건	122
4) 업무 수행 방식	129
5) 산업재해	132
6) 코로나19 예방 및 감염 시 대응 체계	141
7) 현장에 필요한 대책	147
8) 결론	150
V. 서울지역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제언	151
1. 서울지역 필수노동자 지원 대책	151
1) 1단계: 긴급지원 - 감염예방, 백신휴가제, 자가격리자 폐기물 처리	151
2) 2단계: 단기적 지원 - 인력 충원, 사회적 위험수당, 유급 병가	151
3) 3단계: 중장기적 지원 - 환경공무직 수준의 보호 안전장구, 휴게시설 마련 ·	152
2. 서울지역 필수노동자 지원 조직과 서울시의 역할	153
3. 서울지역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수요	155
1) 근로조건 개선	155
2) 중장기적 고용안정	156
3) 작업안전 개선	156
4) 협력적 노사관계	157
4. 서울지역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제	149
1) 임금체계	158
2) 민간위탁과 고용안정	159
3) 생활폐기물 재활용쓰레기 수거 차량	159
4) 생활폐기물 수거 및 운반 작업의 선진화	160
5) 환경 및 자원순환에 대한 교육, 주민과의 협의체	161
참고문헌	162

부록 1. 서울지역 필수노동자(환경미화원) 노동실태조사 설문지	165
부록 2. 서울지역 필수노동자(환경미화원) 노동실태 면접조사지	175

- 표 목차 -

〈표 1-1〉 연구 추진일정	5
〈표 2-1〉 국제기구의 필수노동자	7
〈표 2-2〉 CISA에서 제공하는 필수노동자 16개 직종	10
〈표 2-3〉 영국의 필수노동자	13
〈표 2-4〉 영국의 분야별 필수노동자 수	14
〈표 2-5〉 캐나다의 필수서비스 노동자	15
〈표 2-6〉 중앙정부 필수노동자 지원 대상	17
〈표 2-7〉 전국 및 서울지역 필수노동자 인원	21
〈표 2-8〉 서울특별시 자치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현황	29
〈표 2-9〉 서울지역 필수노동자 수	31
〈표 2-10〉 서울지역 필수노동자의 종사상 지위와 정규직/비정규직 여부	33
〈표 2-11〉 서울지역 필수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34
〈표 2-12〉 서울지역 필수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35
〈표 2-13〉 서울지역 필수노동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35
〈표 2-14〉 서울지역 필수노동자의 직무만족도	36
〈표 2-15〉 서울지역 필수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성	37
〈표 2-16〉 서울지역 필수노동자의 주관적 경제 수준	37
〈표 3-1〉 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 현황	45
〈표 3-2〉 생활폐기물 관리예산	46
〈표 3-3〉 서울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48
〈표 3-4〉 서울시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쓰레기) 배출량 통계	49
〈표 3-5〉 서울시 쓰레기수거 장비	50
〈표 3-6〉 서울시 청소예산 주민부담률 통계	51
〈표 3-7〉 서울시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통계	52
〈표 3-8〉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별 작업인력(3인 1조 원칙)	57
〈표 3-9〉 업무분야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환경미화원 현황	59
〈표 3-10〉 생활폐기물 관리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60
〈표 4-1〉 대면면접 조사지역과 직무별 인원	64
〈표 4-2〉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 조사 응답률	65

〈표 4-3〉 현재 직장 지역(권역별)	66
〈표 4-4〉 직장(사업체)의 종사자 비율	67
〈표 4-5〉 업무 경력	67
〈표 4-6〉 직무별·쓰레기 종류별 인원	68
〈표 4-7〉 상차원·업무수행시, 하루 평균 걸음 수	68
〈표 4-8〉 3인 1조 작업수행 여부	69
〈표 4-9〉 담당업무 구역(중복응답)	69
〈표 4-10〉 작업현장 업무(중복응답)	70
〈표 4-11〉 적환장(또는 자원순환센터) 마감 시간	70
〈표 4-12_a〉 지급받고 있는 안전 보호 장구(중복응답)	71
〈표 4-12_b〉 지급받고 있는 안전 보호 장구(중복응답)	71
〈표 4-13〉 서울시 자치구별 환경미화원 안전 보호 장구 지급 물품	72
〈표 4-14〉 안전수칙(중복응답)	73
〈표 4-15〉 청소차량 안전장치(중복응답)	74
〈표 4-16〉 작업 중지 명령을 받은 경험(중복응답)	75
〈표 4-17〉 주위 동료들이 일하는 도중에 다쳤다는 소식을 들은 경험	76
〈표 4-18〉 작업도중 넘어졌거나 넘어질 뻔한 경험	77
〈표 4-19〉 먼지 때문에 호흡기 질환(천식, 감기 등)을 겪은 경험	77
〈표 4-20〉 계속 서 있거나 걸어 다닌 경험	77
〈표 4-21〉 오염되거나 씻지 못해 피부에 발진이나 수포가 생긴 경험	78
〈표 4-22〉 쓰레기(유리 등)에 찔려서 피가 난 경험	78
〈표 4-23〉 중량물을 들다가 어깨나 허리가 삐끗해 심각한 통증을 겪은 경험	78
〈표 4-24〉 청소차량으로 이동 중 교통사고를 겪었거나 겪을 뻔한 경험	79
〈표 4-25〉 청소차량에서 떨어졌거나 떨어질 뻔한 경험	79
〈표 4-26〉 적환장 휴식공간 유무 및 시설 상태	80
〈표 4-27〉 작업구역 내 휴식공간 유무 및 시설 상태	80
〈표 4-28〉 작업구역 내 세면·사위실 유무 및 시설 상태	81
〈표 4-29〉 작업구역 내 세탁공간(세탁기) 유무 및 시설 상태	81
〈표 4-30〉 작업구역 내 탈의 공간 유무 및 시설 상태	81
〈표 4-31〉 고용형태	82
〈표 4-32〉 비정규직 근로계약기간	83

〈표 4-33〉 비정규직 근로계약 갱신한 횟수	83
〈표 4-34〉 정년퇴직 연령이 정해져 있는가	84
〈표 4-35〉 출근시간	85
〈표 4-36〉 평균 근무일과 노동시간	85
〈표 4-37-a〉 현재 지급받고 있는 수당(중복응답)	86
〈표 4-37-b〉 현재 지급받고 있는 수당(중복응답)	86
〈표 4-37-c〉 현재 지급받고 있는 수당(중복응답)	86
〈표 4-38〉 임금수준(야간근무, 토요일근무, 휴일근무 포함)	87
〈표 4-39〉 연차휴무 사용 시 회사에서 대체인력 투입	88
〈표 4-40〉 현재 직장에서 상해보험 가입 유무	89
〈표 4-41〉 마스크 착용 등 작업환경 변화에 대한 피로도 증가	90
〈표 4-42〉 대면업무가 불가피하여 코로나 감염에 대한 불안감	90
〈표 4-43〉 필수업무 수행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건강 악화	91
〈표 4-44〉 방역관련 업무(휴게실 및 청소차량 소독 등)로 인한 어려움	91
〈표 4-45〉 방역 물품 미지급으로 인한 어려움	91
〈표 4-46〉 작업현장,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정도	92
〈표 4-47〉 코로나19 영향으로 노동환경의 변화(중복응답)	92
〈표 4-48〉 코로나19 이후, 하루 평균 수거하는 쓰레기 양(ton) 변화	93
〈표 4-49〉 코로나19 이후, 청소차량의 하루 평균 이동 거리(km) 변화	93
〈표 4-50〉 코로나19 이후 임금(상여 포함) 변화	94
〈표 4-51〉 코로나19,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호 장구(중복응답)	94
〈표 4-52〉 현재 직장에서 코로나19 유증상 시 휴가 사용 가능정도	95
〈표 4-53〉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휴가 기준	95
〈표 4-54〉 코로나19, 정기 소독 실시	96
〈표 4-55〉 코로나19 방역지침 교육이나 안내	96
〈표 4-56〉 임금	98
〈표 4-57〉 부족한 인력	98
〈표 4-58〉 부족한 휴식/휴가	98
〈표 4-59〉 고용안정성	99
〈표 4-60〉 장시간 근무	99
〈표 4-61〉 야간근무	99

〈표 4-62〉 승진·승급제도	100
〈표 4-63〉 정신육체피로	101
〈표 4-64〉 높은 업무 강도	101
〈표 4-65〉 중량물(1일 25Kg이상 1인 작업) 등 과도한 업무량	102
〈표 4-66〉 건강상 질환(근골격계, 호흡기 질환 등)	102
〈표 4-67〉 주민 응대의 어려움	102
〈표 4-68〉 산재사고에 대한 부담(산재신청이 어려움)	103
〈표 4-69〉 교통사고 위험	104
〈표 4-70〉 작업구역 권역별 휴게실 등 복지시설 미비	104
〈표 4-71〉 매립지, 소각장, 자원순환시설 등 안전시설 미비	104
〈표 4-72〉 작업도구 및 안전 장구류 수량 부족	105
〈표 4-73〉 직영/민간 청소노동자 간의 차별	106
〈표 4-74〉 낮은 사회적 평가	106
〈표 4-75〉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	106
〈표 4-76〉 임금체계 개선	108
〈표 4-77〉 건강검진(공단) 및 입원(외래포함)시 유급평가 지원	108
〈표 4-78〉 근무대기실 개선, 휴게실 정비 등 복지시설 확충	108
〈표 4-79〉 위험성평가 등 작업안전 사고 대응 시스템 도입	109
〈표 4-80〉 근로시간(작업시간) 단축	109
〈표 4-81〉 작업복 및 작업용품 제공	109
〈표 4-82〉 스트레스, 정신적 소진 등 심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지원	110
〈표 4-83〉 직영 공무원과 차별 없는 임금, 복리후생 마련	111
〈표 4-84〉 필수노동자 사회적 위험수당 등 금전적 보상	111
〈표 4-85〉 대형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고용안정(일방적 해고금지)	112
〈표 4-86〉 노후 청소차 교체 및 친환경청소차 보급 확대	112
〈표 4-87〉 작업인력 충원 및 대응체계 마련	112
〈표 4-88〉 안전장비 품목 지원 확대	113
〈표 4-89〉 감염방지를 위한 빠른 예방접종 실시 및 감염 시 치료비용 전액지원	114
〈표 4-90〉 재난상황의 청소작업 업무 가중에 따른 보상	114
〈표 4-91〉 생활폐기물 작업구역 내 위생시설 확대(휴게·샤워시설 등)	114
〈표 4-92〉 마스크, 일화용 장갑 등 작업수행 시 필요한 개인용 방역물품 제공	115

〈표 4-93〉 청소차량 및 시설물 소독 강화	115
〈표 4-94〉 재활용품 기계식 상차차량 지원	116
〈표 4-95〉 생활폐기물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을 직영으로 전환으로 위한 예산 지원 ..	117
〈표 4-96〉 작업환경 개선(휴식 공간, 화장실, 우천 설비 등) 재정지원	117
〈표 4-97〉 노동조합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 보장	117
〈표 4-98〉 안전장구 지급 및 안전기준 설정 매뉴얼 개선	118
〈표 4-99〉 지방정부 및 민간위탁 대형업체 관리·감독 강화	118
〈표 4-100〉 청소업무 심야노동 금지	118
〈표 4-101〉 FGI 참여자 정보	119
〈표 4-10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주간작업 여부	123
〈표 4-10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3인1조 작업 여부	130
〈표 4-104〉 2015~2020년 8월 서울지역 환경미화원 산재 신청 및 승인 현황	133

- 그림 목차 -

[그림 2-1] 세계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	6
[그림 2-2] 미국의 필수노동자 포스터	8
[그림 2-3] 필수(essential) 및 최전방(frontline) 노동자 구성비	11
[그림 2-4] 필수노동자 연령 분포	22
[그림 2-5] 필수노동자 성별 비율	23
[그림 2-6] 필수노동자 학력 비율	23
[그림 2-7] 필수노동자 단시간·장시간 근로비율	24
[그림 2-8] 필수노동자 저임금 비율	25
[그림 2-9] 서울지역 자치구별 필수노동자 현황	32
[그림 3-1] 환경미화원의 종량제(생활쓰레기) 작업 방식	40
[그림 3-2] 환경미화원의 음식물쓰레기 작업 방식	41
[그림 3-3] 환경미화원의 재활용쓰레기 작업 방식	41
[그림 3-4] 환경미화원의 대형폐기물 작업 방식	42
[그림 3-5] 연도별 생활(가정)폐기물 발생 추이	43
[그림 3-6] 지역별 생활(가정)폐기물 발생량	44
[그림 3-7] 생활폐기물 성상별 발생 현황	44
[그림 3-8] 생활폐기물 관리인원 및 장비현황	46
[그림 3-9] 환경미화원의 안전위험 요인	54
[그림 3-10]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환경미화원 비율(%)	59
[그림 3-11] 서울지역 자치구별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및 종사자 수	61
[그림 4-1] 업무 중 경험 있음	75
[그림 4-2] 직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험 있음	89
[그림 4-3] 근로조건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97
[그림 4-4] 노동환경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100
[그림 4-5] 작업환경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103
[그림 4-6] 사회적 환경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105
[그림 4-7]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지원에 대한 동의 정도	107
[그림 4-8] 서울시 지원에 대한 동의 정도	110
[그림 4-9] 코로나19 재난 시 서울시 지원에 대한 동의 정도	113

[그림 4-10] 중앙정부 지원에 대한 동의 정도	115
[그림 4-11]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체계	129
[그림 4-12] 자가격리자 폐기물 보관·처리 체계	143
[그림 4-13] 개인보호 장비	145
[그림 5-1] 서울지역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수요	157

연구 요약 문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본 연구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지원 대책’을 서울시에서 마련하기 위해 필수노동자 노동환경을 조사·분석함
- 필수노동자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환경미화원에 대한 노동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서울지역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및 작업환경 개선 등의 지원방안을 제안함
- 본 연구는 서울시 필수노동자 노동정책 및 지원체계 수립에 활용가능 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 연구배경

-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보건·의료, 돌봄, 교통·운수, 환경미화, 택배·배달 업종)의 중요성 및 보호 필요성이 부각됨
- 필수노동자의 상당수는 불안정한 고용형태, 불명확한 업무범위, 인력 부족 및 열악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함
- 필수노동자 중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은 재활용쓰레기 배출의 증가로 노동 강도가 높아지고, 대면서비스로 인해 감염, 과로 등 산업재해 위험이 가중되고 있음
 - 택배·배달음식 급증으로 생활폐기물 배출 업무량이 폭증하고 있으며, 주야간 매일같이 종량제 쓰레기를 치워야 하는 환경미화원은 늘 감염위험을 감수하고 있음

○ 연구내용 및 방법

- 국내외 필수노동자 선행연구 검토
 - 해외의 필수노동자 개념과 논의 및 지원방안: 문헌자료
 - 국내의 필수노동자 현황: 통계청, 한국노동연구원 데이터 활용 분석
- 필수노동자로서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의 노동현황 자료 분석
 -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의 노동 현장 업무에 대한 이해: 문헌자료
 -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 관련 통계 분석: 환경부,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데이터

- 필수노동자 노동실태 조사 시행 및 조사결과 분석
 - 연구대상: 서울지역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 500명(종량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대형폐기물 수거 및 운반 업무 종사자)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설문조사 및 FGI 면접조사

○ 국내외 필수노동자 개념과 논의

- ILO - 'Frontline worker' (최전방 노동자)
 - 원격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 종사자
- Amnesty - 'Essential worker' (필수 노동자)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
- 미국은 필수노동자 범위를 '주요한 인프라의 지속을 위해 필수적 서비스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
- 영국의 필수노동자는 8개 직업군(보건복지, 교육 및 보육, 주요 공공서비스, 지방 및 중앙정부, 치안 및 국가안보, 식품 및 필수재, 교통 및 항공, 금융서비스)에 해당
- 한국은 보건·의료 종사자, 돌봄서비스 종사자, 운송서비스 종사자, 환경미화 종사자, 기타 업무 종사자 약 200만명에 대해 필수노동자로 지정
- 서울시는 2021년 7월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후 보건·의료·돌봄, 교통·운수, 택배, 환경미화 직종을 대상으로 필수노동자 노동실태 조사를 수행

○ 필수노동자로서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의 노동

- 청소행정서비스의 최전방에서 대면업무를 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은 사회 기능유지와 국민의 일상적인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동을 수행
-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19년 기준 서울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9천 847톤, 서울시 주민 1인당 하루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평균 1kg
- 2015-2020년 8월까지 서울지역에서 작업 중 사고나 질병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환경미화원은 5천 700명. 이 중 35명은 사망했고, 5천 421명은 부상. 작업 중 유해인자 노출에 대한 위험도(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박테리아 등)도 높음

○ 서울지역 필수노동자(환경미화원) 노동실태 조사 결과 - 설문조사

- 조사 응답률

- 직무: 수집원 50%, 운전원 50% (표본설계)
- 성상별: 종량제쓰레기 45%, 음식물쓰레기 23%, 재활용쓰레기 28%, 대형폐기물 4%
- 현재 직장 지역: 서남권 41%, 동북권 27%, 동남권 22%, 도심권 10%
- 직장(사업체)의 종사자 비율: 30-99명 69%, 10-29명 29%, 5-9명 1.4%
- 업무 경력: 환경미화 총 업무경력: 6년 6개월, 현재 직장 경력: 5년 3개월

- 환경미화원 업무범위 및 수행방식

- 담당업무 구역: 아파트 단지 81%, 단독, 빌라 21%, 회사 사무실 등 13%
- 수집원 업무수행 시, 하루 평균 걸음 수: 2만-3만보 42.8%, 3만보 이상 19.6%
- 작업수행 방식: 3인 1조 41%, 2인 1조 70%, 1인 1조 29%
- 현장작업 업무(중복응답): 골목길 쓰레기 수거 70%, 쓰레기 적하작업 61%, 청소차 운전 55%, 재활용품, 적재함 선별, 분류 작업 11%

- 노동환경(작업환경, 휴게시설)

- 지급받고 있는 안전 보호장구(중복응답): 안전화, 작업복, 안전모 97%, 반코팅장갑 96%, 마스크(미세먼지, 방진) 90%, 형광안전조끼, 형광티 88%, 방한용품(의복, 장갑, 장화) 55%, 보호안경 31%, 의료위생의약품 29%, 절단보호 장갑 27%
- 안전수칙(중복응답): 안전근무복, 반사판이 부착된 안전조끼 착용 95%, 미끄럼방지 신발, 손 보호 장갑 등의 개인보호구 착용 74%, 작업환경 및 조건에 맞는 보호구 착용 53%, 차량에 매달려 이동하지 않음 39%, 야간작업시 헤드램프 등 간이용 조명기구 사용 17%, 중량물 취급시 이동대차 등을 활용 8%
- 청소차량 안전장치(중복응답):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98%, 비상시 적재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70%, 비상시 제어할 수 있는 양손 조작 방식의 안전스위치 67%,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전방영상장치 67%,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좌우측방 영상장치 49%
- 업무 중 경험(중복응답): 주위 동료들이 일하는 도중에 다쳤다는 소식을 들은 경험 85%, 작업도중 넘어졌거나 넘어질 뻔한 경험 72%, 먼지 때문에 호흡기 질환(천식, 감기 등)을 겪은 경험 71%, 계속 서 있거나 걸어 다닌 경험 68%, 오염되거나 씻지 못해 피부에 발진이나 수포가 생긴 경험 67%, 쓰레기(유리 등)에 찔려서 피가 난 경험 51%, 중량물을 들다가 어깨나 허리에 심각한 통증을 겪은 경험 49%, 청소차량으로 이동 중 교통사고를 겪었거나 겪을 뻔한 경험 43%

-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경험(중복응답): 작업중지 받은 적 없음 46%, 폭설, 폭우 35%, 태풍, 강풍 11%, 폭염, 강추위 6%, 미세먼지(매우 나쁨) 1%
- 적환장 휴식공간 79.4%, 작업구역 내 휴식공간 58%, 작업구역 내 세면·샤워실 61%, 작업구역 내 세탁공간(세탁기) 57% 보유
- 고용안정(고용형태, 계약형식)
 - 고용형태: 정규직 40%, 비정규직 60%, 비정규직의 91%는 계약직
 - 비정규직 근로계약기간: 1년-2년 미만 64%, 6개월-1년 미만 19%, 3년 이상 10%, 2년-3년 미만 7%, 6개월 미만 1%
 - 비정규직 근로계약 갱신 횟수: 1회 25%, 갱신한적 없음 18%, 2회 17%, 5회 이상 17%, 3회 13%, 4회 10%
- 노동조건(임금·근로시간·휴게시간)
 - 임금수준(야간근무, 토요일 근무, 휴일근무 포함): 300만원 미만 27%, 300-320만원 미만 25%, 320-340만원 미만 22%, 340-360만원 미만 14%, 360만원 이상 13% (월 평균 세후 급여 314.5만원, 수거원 310.8만원, 운전원 318.3만원)
 - 연차휴무 사용 시 회사에서 대체인력 투입한다 56%, 대체인력 투입하지 않는다 38%, 모른다 6%
 - 현재 직장에 상해보험 가입되어 있다 56%, 가입되어 있지 않다 11%, 모른다 33%
- 코로나19 상황
 - 직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험: 마스크 착용 등 작업환경 변화에 대한 피로도 증가 83%, 대면업무로 인해 코로나 감염에 대한 불안감 81%, 필수업무 수행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건강 악화 62%, 방역관련 업무(소독 등)로 인한 어려움 54%, 방역 물품 미지급으로 인한 어려움 47%
 - 코로나19 영향으로 노동환경 변화: 변화 없음 43%, 노동 강도 증가 38%, 전체 근로시간 증가 26%, 새로운 업무가 추가됨 9%, 전체 근로시간 감소 6%, 일하는 방식이 바뀜 5%
 - 코로나19 이후, 하루 평균 수거하는 쓰레기 양(ton) 변화: 증가 72%, 감소 9%
 - 코로나19 이후, 청소차량의 하루 평균 이동 거리(km) 변화: 증가 44%, 감소 6%
 - 코로나19 이후, 임금(상여 포함) 변화: 변화 없음 97%
 -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호 장구(중복응답): 마스크 98%, 일회용 장갑 35%, 보호복 14%, 일회용 토시 4%, 안면설투 보호대 1%, 지급받지 못함 1%

- 현재 직장에서 코로나19 유증상 시 휴가 사용: 가능 54%, 가능하지 않음 46%
- 코로나19 백신 유증상 시 휴가 사용: 가능한 편 54%, 가능하지 않은 편 46%
- 코로나19 백신 접종 휴가 기준: 백신 접종 당일 공가 휴가 6%, 백신 접종 당일 유급 휴가 14%, 정해진 바 없음: 80%
- 애로사항 (100점 환산)
 - 근로조건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임금 71점, 부족한 인력 67점, 부족한 휴식/휴가 63점, 고용안정성 61점, 장시간 근무 59점, 야간근무 54점
 - 노동환경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정신육체피로 65점, 높은 업무 강도 64점, 중량물 등 과도한 업무량 64점, 건강상 질환(근골격계, 호흡기 질환 등) 61점
 - 작업환경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교통사고 위험 69점, 작업구역 권역별 휴게실 등 복지시설 미비 64점, 매립지, 소각장, 자원순환시설 등 안전시설 미비 58점
 - 사회적 환경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직영/민간 청소노동자 간의 차별 80점, 낮은 사회적 평가 77점
-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 대책 (100점 환산)
 - 회사 지원에 대한 동의 정도: 임금체계 개선 80점, 건강검진 및 입원(외래포함)시 유급병가 지원 77점, 근무대기실 개선, 휴게실 정비 등 77점, 위험성평가 등 작업안전 사고 대응 시스템 도입 75점
 - 서울시 지원에 대한 동의 정도: 공무원과 차별없는 임금, 복리후생 마련 90점, 필수노동자 사회적 위험수당 등 금전적 보상 89점,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고용안정 88점, 노후 청소차 교체 및 친환경청소차 보급 확대 86점
 - 코로나19 재난 시 서울시 지원에 대한 동의 정도: 빠른 예방접종 실시 및 감염시 치료비용 전액지원 91점, 재난상황의 청소작업 업무 가중에 따른 보상 88점, 생활폐기물 작업구역 내 위생시설 확대 86점
 - 중앙정부 지원에 대한 동의 정도: 재활용품 기계식 상차차량 지원 88점,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 지원 86점, 작업환경 개선 재정지원 85점, 노동조합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 보장 82점

○ 서울지역 필수노동자(환경미화원) 노동실태 면접조사 결과 - FGI 정성조사

- 조사(인터뷰) 일반사항

- 조사 지역: 도봉구, 금천구, 강남구, 구로구, 강동구

- 조사 인원: 운전원 10명, 수거원 9명, 자원순환센터 1명
- 조사 업체: 9개사
- 고용안정
 - 고용승계: 자치구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변경으로 고용불안, 업체가 변경되지 않아도 고용안정성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님
 - 정년보장: 민간대행업체의 경우 정년을 60세이며, 이후 축락직 형태로 근무, 청년취업난으로 청년고용지원금 때문에 고령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이 확실치 않음
- 근로시간
 - 지속해서 야간근무(21시-6시)를 하고 있음. 주간근로에는 출근길 차량들로 이동 시간이 많이 소요
 - 초과근로가 자주 발생. 특히, 코로나19로 쓰레기양이 많을 경우 자발적으로 2시간 먼저 나감
- 임금
 - 기본급 최대 2,265,500원 최소 1,952,779원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자치구도 있음
- 업무 수행과정
 - 성상별 쓰레기 수집 ⇒ 상차 ⇒ 정리 ⇒ 이동 ⇒ 하차 : 적환장 과정이 없고 바로 처리장으로 옮겨짐
 - 3인1조: 환경부 권고 사항인 3인 1조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3인1조는 2인 1조로 할 때 보다 훨씬 많은 지역을 맡아야 하는 부담이 증가
- 산업재해
 - 폭설 시에는 수거를 보류하지만, 폭염 시에는 어떠한 대책도 없음
 - 산업재해 안전교육은 형식적
 - 산업재해 발생 후 처리 방식도 업체마다 차이가 있음. 산업재해가 발생한 환경미화원에게 위로금 형식으로 공상처리 하거나 산업재해로 더 이상 일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자발적 퇴사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노동환경 변화
 - 코로나19로 재활용이 증가한 경우에도 여전히 2인 1조
 - 코로나19로 증가한 쓰레기양을 처리하기 위해 휴식시간 줄이기, 2시간 일찍 출근

(초과근무 인정 안 됨)

- 코로나19 예방 대책

- 코로나19 예방 대책으로 개인보호 장비 지원 거의 없음(제공되더라도 일회용 장갑, 마스크 지원 정도)
- 백신 접종 유급휴가 권고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 코로나19 예방 감염 시 대응 체계

- 코로나19 감염 시 유급휴가 처리는 되지만, 대체 인력은 없음
- 확진자가 발생하여 검사를 받아야 할 때도 쉬는 시간에 검사 받고, 다시 일을 하고, 주간에 검사를 받음

- 현장에 필요한 대책

- 고용 안정화 - 직영 전환
- 적정 임금 표준체계 마련 - 서울시 안에서라도 통일된 기준이 필요
- 작업환경 개선 - 보호 장구 제공, 작업장 내의 휴게시설 부족 등
-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 - 필수노동자 지정되었으나 지원 없고, 체감도 낮음

○ 서울지역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제언

- 서울지역 필수노동자 지원 대책

- 1단계: 긴급지원 - 감염예방, 백신휴가제, 자가격리자 폐기물 처리
- 2단계: 단기적 지원 - 인력 충원, 사회적 위험수당, 유급 병가
- 3단계: 중장기적 지원 - 환경공무직 수준의 보호 안전장구, 휴게시설 마련

- 서울지역 필수노동자 지원 조직과 서울시의 역할

- 서울시는 필수노동자 지원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수노동자와 관련된 서울시 산하 출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기관의 기능들을 확대해야 함(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시 이동노동자 쉼터,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권역/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등)

- 서울지역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수요

- 임금격차 축소, 복리후생(사회적 위험수당, 유급병가) 등 근로조건 개선
- 공공서비스 부분의 중장기적 고용안정,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고용 불안 해소
- 노후 청소차 교체, 작업안전사고 대응 시스템, 안전장비 확대 등 작업안전 개선

-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 노사 합의,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
- 서울지역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제
 -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대행업체 노무비 산정 방식 검토, 자치구별 재정여건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는 단서조항 폐지
 - 기존의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사업방식에서 서울시가 직접 운영관리 할 수 있는 고용구조로 개편
 - 생활폐기물 재활용쓰레기 수집·운반 차량 개선(1톤 차량에서 3.5톤 압착 차량 보급), 친환경 차량(전기차 또는 수소차량)으로 교체
 - 생활폐기물 수거 및 운반 작업의 선진화(종량제 봉투는 50L 이하로 부피 제한, 음식물쓰레기는 배출 용기 비치, 재활용쓰레기는 분리배출 절실, 대형폐기물은 리프트 차량으로 수거차량 구조 변경)
 - 환경 및 자원순환에 대한 교육, 주민과의 협의체 마련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안전한 일상적 삶을 지켜주는 필수노동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과 사회전반의 모습은 바뀌었다. 지금 마스크 없이 외출하다가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가 하면,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가려면 체온 측정과 방문 기록을 남겨야 한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언택트(비대면·비접촉)은 그 끝이 언제가 될지 기약할 수 없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재택근무, 원격수업, 화상회의 등이 확대되고, 비대면 서비스가 사회전반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필수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언택트,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은 먼 나라 이야기이다. 간호사들은 최전방에서 방호복을 입고 밀려드는 환자를 돌봐야 하며, 확진자의 생활공간에서 사용한 물건을 수거하고 소독하는 방역 요원들은 감염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돌봄 종사자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서비스 이용자와 대면접촉을 해야 하며, 택배 종사자는 온라인 주문 등 비대면 소비 확대로 택배 물동량이 급증하여 과로사 위험이 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은 코로나 쓰레기로 늘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들은 우리의 안전한 일상적 삶을 지켜주기 위해 사회적 저평가 속에서 그림자처럼 일해 온 필수노동자들이다.

2) 사회 서비스 영역의 필수노동자

코로나19 시대의 필수노동은 대면 노동이 불가피한 사회 서비스 영역이다. 지금까지의 필수공익사업 종사자 대부분은 전통산업의 정규직 노동자인 반면, 새로운 필수노동자의 다수는 임금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이다. 이들은 고용·산재 보험 적용 대상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성, 임금, 근로 여건 등 사회·경제적 지위에서도 취약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다.

대표적으로 사회 서비스 영역에서의 필수노동자는 보건·의료, 돌봄, 교통·운수, 환경미화, 택배·배달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이며, 이들의 노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야 사회기능이 유지될 수 있고, 코로나19 재난 상황을 하루 빨리 극복할 수 있다.

3) 국가 및 자치단체의 필수노동자 보호법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필수노동자 보호법) 제정안이 2021년 4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커지면서 법안이 마련되었고, 필수노동자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자치단체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최초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2020년 9월)했고, 현재 전국에서 72개 자치단체에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특별시는 2021년 1월 7일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필수노동자 노동실태 조사를 시행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13개 자치구에서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4) 서울지역 필수노동자(환경미화원) 보호·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코로나19로 보건·의료, 돌봄, 교통·운수, 환경미화, 택배·배달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필수노동자의 상당수는 불안정한 고용형태, 불명확한 업무범위, 인력 부족 및 열악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지역 필수노동자 보건·의료, 교통·운수, 택배 분야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본 연구는 서울지역 필수노동자인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노동실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환경미화원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노동자로서 공공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보호·지원해야 하는 노동자다. 코로나19로 택배·배달음식이 급증하여 생활폐기물 배출 업무량이 폭증하고 있으며 주야간 매일같이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치워야 하는 환경미화원은 늘 감염위험에 노출되어 있다.¹⁾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지역 환경미화원의 노동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서울지역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및 작업환경 개선, 사회안전망제도 개편 등의 지원 방안과 서울지역 환경미화원의 노동환경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

1) 2020년 8월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생활폐기물은 4,890톤에서 5,349톤으로 늘어 전년 동대 대비 11.2% 증가했음. 종이류는 23.9% 증가한 889톤, 플라스틱류는 15.6% 증가한 848톤, 비닐류는 11.1% 늘어난 951톤으로 나타났음.

리고 서울시 필수노동자 노동정책과제 및 지원체계 수립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차별화된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문헌자료와 2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외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국제기구 및 해외의 필수노동자 개념과 코로나19 지원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문헌자료를 이용하여 필수업종 종사자를 연구하고, 국내 필수노동자는 통계청,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2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한다.

그리고 서울지역 필수노동자 노동실태 조사 대상은 “서울지역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민간위탁 소속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대상이다. 서울지역 생활폐기물 종량제(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을 수행하는 환경미화원은 대부분 각 구청의 민간위탁 대행업체 소속으로 사업장별 고용형태와 임금체계가 상이하다.

조사규모는 서울지역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 500명이며, 구조화된 설문지로 표본 조사를 실시한다. 모집단은 서울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환경미화원 3,600여명이다. 직무별(상차원_수집원, 운전원)로 각각 50%를 할당하여 조사한다.

2) 연구방법

(1) 국내외 필수노동자 선행연구 검토 및 자료 분석

본 연구는 필수노동자의 개념과 특징에 대한 국내외적 논의를 선행연구와 2차 데이터 분석으로 검토한다. 국제사회의 필수노동자에 대한 논의는 국제기구(OECD, ILO, Amnesty)와 해외국가(미국, 영국, 캐나다)에서 발행한 문헌 자료와 해외 공공기관의 보도자료, 언론 기사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국내 필수노동자 연구는 관련 법·제도뿐만 아니라, 국내 필수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살펴보기 위해, 국가 통계자료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2차 데이터를 가공하여 분석한다. 특히, 전국과 서울지역 필수노동자에 대한 비교 분석과 서울지역 자치구별 필

수노동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2차 데이터들을 재가공하여 보다 정확한 수치를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서울지역 필수노동자 노동실태 조사에 대한 근거로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을 소개한다.

(2) 필수노동자로서 환경미화원의 노동현황 자료 분석

필수노동자로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미화원의 노동현황 업무 및 생활폐기물 발생, 처리, 관리현황 등을 문헌자료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살펴본다. 성상별(종량제(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대형쓰레기)로 환경미화원의 노동 현황을 관련 자료를 통해 파악하고, 환경부 자원순환정보시스템과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조사통계를 활용하여 서울지역 자치구별 생활폐기물 발생, 처리, 관리 현황을 살펴본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 실태와 산재현황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문헌자료를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3) 서울지역 환경미화원 노동실태 조사(정량조사, 정성조사)

① 정량조사(설문조사)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 서울지역 환경미화원의 노동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서울지역 민간위탁 소속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이며, 표본 구성은 상차원(수집원) 250명, 운전원 250명으로 구성했다. 성상별로는 종량제(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대형폐기물 수거 및 운반 환경미화원이며, 서울지역 5대권역과 25개 자치구별 비례할당을 실시했다.²⁾

설문은 총 46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설문내용은 환경미화원의 업무범위 및 수행방식, 노동환경(작업환경, 휴게시설), 고용안정(고용형태·계약형식), 노동조건(임금·근로시간), 휴게시간, 코로나 상황, 애로사항,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 대책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된다. 설문문항 개발은 환경미화원, 생활폐기물 협회, 관련 공공기관 등의 협조로 수정·보완 작업을 통해 진행되었다.

2) 최초 조사 설계에서 서울지역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 모집단 3,600여 명 중 500명 표본 조사를 실시할 때, 5대 권역별 · 25개 자치구별 비례할당으로 서울지역 전체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하였음. 그러나 실사 단계에서 코로나19와 조사협조 부족 등으로 일부 권역과 자치구에서 설문을 수행할 수 없었음. 따라서 본 조사결과가 서울지역 전체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② 정성조사(면접조사)

정량조사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내용과 조금 더 심층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환경미화원 당사자 인터뷰를 시행했다. 심층면접조사 질문 내용은 고용안정, 노동조건, 업무수행 방식 및 업무범위, 산재위험, 코로나 상황에 대한 질문, 직장에서의 복리후생, 현장에서 필요한 대책 등이다. 피면접자(환경미화원) 20명의 인터뷰 내용은 녹취 후 스크립터를 작성하고, 면접조사 결과를 통합하여 분석했다.

3) 연구진행절차

연구진행절차는 크게 4단계로 구성했다. 먼저, 공동연구진을 섭외하고, 전문가/지역단체 자문회의를 통해 조사 설문지를 작성했다. 다음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로 정량조사를 실시하고, 정량조사에서 도출하기 어려운 부분은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정량 및 정성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최종보고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절차로 서울지역 필수노동자(환경미화원) 노동실태 조사는 약 6개월에 간 진행되었다. 주요 추진 사항은 연구 설계, 자료 분석, 설문지 개발, 실사, 면접조사, 최종보고서 발간이다.

<표 1-1> 연구 추진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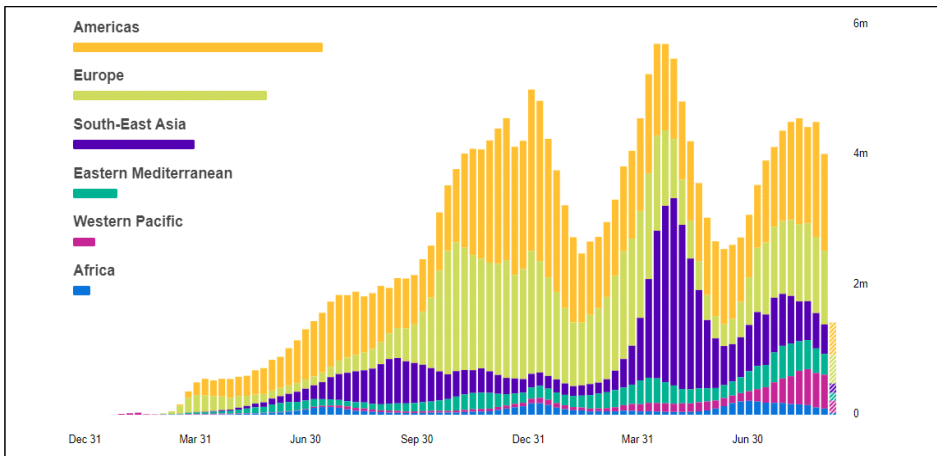
연구내용		월 별 추 진 일 정				
		5	6	7	8	9~10
연구설계	연구세부계획서 작성	●				
	연구진 구성 및 역할 분담	●	●			
	자문회의			●		
자료분석	선행연구 검토	●	●			
	기존 정부통계 가공 및 분석		●	●		
연구수행	설문조사 및 분석		●	●	●	
	심층면접조사 및 분석		●	●	●	
	중간보고				●	
	정책방안 제안				●	●
최종보고	최종 연구결과 보고					●
	최종보고서 발간					●

II. 코로나19와 필수노동자

1. 국제사회의 필수노동자는 누구이며, 그들에게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급증함에 따라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팬데믹(pandemic)을 선언했다. 이러한 코로나19 사태는 사회적 환경과 방역 체계, 산업과 노동의 전환, 기후 환경, 도시의 성장 등에 큰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 중에서도 전 세계 시민의 삶의 방식을 바꾼 노동과 서비스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도 사회기능 유지에 꼭 필요한 필수노동자들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지원과 정책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고 있다.

[그림 2-1] 세계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



자료: World Health Organization, covid19.who.int_confirmed cases per week (2021.09.16)

1) 국제기구의 필수노동자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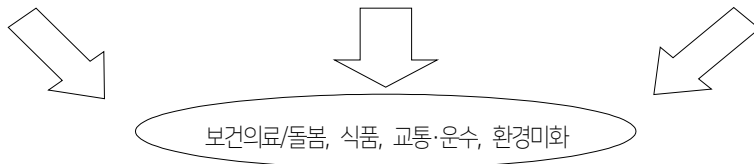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원격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 종사자를 '최일선 근로자(Frontline worker)'라 부르며, 이들은 의료 종사자뿐만 아니라 계산원, 생산 및 식품 가공 작업자, 경비원 및 시설 관리 작업자, 농업 종사

자 및 트럭 운전사가 포함된다고 밝혔다(OECD, 2020: 31-32).

국제노동기구(ILO)는 코로나19 위기의 최전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필수노동자의 70%가 여성 의료-돌봄 종사자라고 설명했다.³⁾ 그리고 인간의 생명과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 수도, 위생, 소방, 교정, 해외 통신 서비스 종사자도 필수노동자에 속했다. 또한, 운송, 석유, 항공, 은행 등의 주요 산업 종사자와 음식 소매업 및 식료품업 종사자도 국민의 식량 안보와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노동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Knäbe, T., & Carrión-Crespo, C.R., 2019: 10).⁴⁾

<표 2-1> 국제기구의 필수노동자

OECD	ILO	Amnes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업 종사자 (보건의료 보조인 포함) - 식품소매종사자 (식품가공 종사자 포함) - 도매업 종사자 - 건물 관리인 - 농업 종사자 - 트럭 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종사자 (간호사, 의사, 사회복지, 요양, 돌봄, 청소 종사자) - 운수 및 교통 - 음식 및 식료품업 - 제조업, 도·소매업 종사자 -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종사자 (전기, 수도, 통신 서비스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 서비스 종사자 (의사, 간호사, 구급차 운전기사, 병원 행정직원 등) - 식품 공급자 (식료품점, 배달 서비스업 종사자) - 긴급한 공공서비스 종사자 (대중교통 종사자, 환경미화원 등)



자료: OECD(2020), Knäbe, T., & Carrión-Crespo, C.R.(2019), Exposed, S.(2020)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필수노동자(essential worker)를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로 정의했다. 이는 긴급대응 종사자, 대중교통 종사자, 청소노동자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개방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사업체 종사자(예, 식료품점 또는 배달 서비스) 등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노동자를 지칭한다(Exposed. S, 2020: 12-13).

이와 같이 국제기구들은 공통적으로 ‘일상적인 사회의 기능유지와 안전을 위해 반드시

3) <https://ilostat.ilo.org/how-women-are-being-left-behind-in-the-quest-for-decent-work-for-all/>

4) https://www.ilo.org/global/about-the-ilo/multimedia/video/institutional-videos/WCMS_758036/lang--en/index.htm

시 필요한 노동자’, ‘재난상황에서도 최전방에서 대면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규명하고, 이들 대부분은 보건의료/돌봄, 식품, 교통·운수, 환경미화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2) 미국의 필수노동자

[그림 2-2]는 미국의 필수노동자 관련 포스터다. 미국 버지니아(Virginia)주 린치버그(Lynchburg)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고 있는 모든 필수노동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지역사회 네트워크(Community Access Network) 블로그에 필수노동자에 대한 감사 글을 게시했다(왼쪽). 그리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19로부터 필수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포스터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가운데). 미국 정부는 필수노동자가 지역사회 대학으로부터 무료 등록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미시간(Michigan)주는 등록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필수노동자를 화학, 식품, 금융, IT 등의 각 산업에서 코로나19 감염위험이 있는 ‘최전방’ 노동자로 지칭했다(오른쪽).

[그림 2-2] 미국의 필수노동자 포스터



자료: <https://www.communityaccessnetwork.org/a-thank-you-to-essential-workers/>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cation/print-resources.html?Sort=Date%3A%3Adesc&Page=3>
<http://daily.kellogg.edu/2020/11/10/futures-for-frontliners-what-is-an-essential-worker/>

미국은 중앙정부와 주별 필수노동자 지정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원방법도 주(State)마다 다양하고, 애매하게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필수노동자 정의 및 지원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자.

뉴저지(New Jersey)주의 경우, 마트 캐셔나 실험실 연구자, IT 정비 노동자, 건설노동자, 창고노동자 등이 필수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고, 이 종사자들은 재택근무 전환에서

제한적으로 출근하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20: 51).⁵⁾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주는 연방 「CARES Act」⁶⁾ 5,000만 달러를 재원으로 ‘코로나19 PA 위험부담금 보조금 프로그램’이 있다. 보조금 지원 자격은 필수업종 의료 돌봄, 사회지원, 음식제조, 음식 소매, 운송, 보안 서비스, 청소용역 등으로 고용주에게 지원되며, 직원 당 최대 1,200달러의 위험수당 지급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⁷⁾ 버지니아(Virginia)주는 코로나19 치료 최전선의 의료 전문가, 식료품 및 식품 서비스 직원, 지역사회의 긴급대응 상황의 최초 대응자, 우편물 및 재고품을 배달하는 운송 노동자, 공공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유지관리 직원 등을 필수노동자로 규명하고, 이들에게 백신접종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주고 있다.⁸⁾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CISA: 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에서 발표한 ‘필수노동자 분류’는 의료/공중보건, 긴급 서비스, 식품 및 농업, 에너지, 수자원, 교통 및 물류, 공공업무 및 기반시설, 댐, 정보통신, 정보기술, 필수 제조업, 원자로, 재료 & 폐기물, 금융 서비스, 화학, 방위산업, 상업시설 등과 같이 미국 전역의 산업 다양성을 반영하여 16개 직종으로 제시했다(CISA, 2020: 5).

미국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 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는 최일선 필수노동자(Frontline essential workers)와 기타 필수노동자(Other essential workers)로 구분하여 백신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최일선 필수노동자는 소방관이나 경찰과 같이 비상상황에서도 일선에서 지역사회가 의존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다. 뿐만 아니라 팬데믹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어린이집 교사, 식품 및 농업 종사자,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질 수 있는 폐쇄된 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정직 근로자, 우편국 직원들, 대중교통 노동자 등이 필수노동자에 해당한다. 기타 필수노동자는 교통과 물류, 음식 서비스, 건설, 금융 서비스, 에너지, 방송, 법률, 기술, 물과 폐수 등 공공서비스 및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노동자들이다.⁹⁾

5) <https://covid19.nj.gov/faqs/nj-information/general-public/what-businesses-are-closed-what-is-considered-essential>

6) 「CARES Act」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미국의 제3차 대응책으로 총 2.2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법안임. 「CARES Act」에 대한 추가적인 재원 투입적 성격을 지닌 제4차 대응책이 4,840억 달러 규모로 2020년 4월 23일 통과되었음(김준현, 2020)

7) <https://www.brookings.edu/blog/the-avenue/2021/04/06/with-federal-aid-on-the-way-its-time-for-state-and-local-governments-to-boost-pay-for-frontline-essential-workers/>

8) <https://www.vdh.virginia.gov/content/uploads/sites/191/2021/01/Phase-1c-In-Depth.pdf>

9) <https://www.aarp.org/work/working-at-50-plus/info-2020/covid-vaccine-essential-workers.html>

<표 2-2> CISA에서 제공하는 필수노동자 16개 직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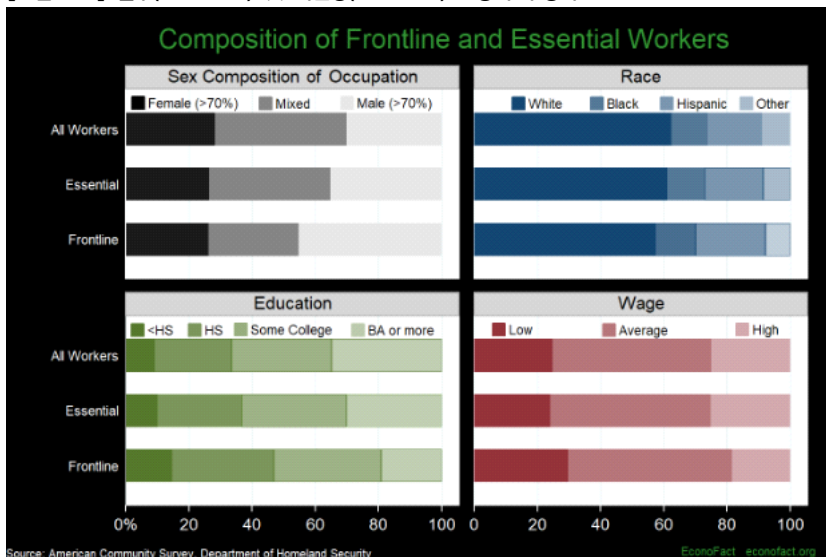
연번	분야	종사자
1	의료/공공보건 Healthcare/Public Health	의사, 치과의사, 심리학자,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방사선사, 검안사, 언어병리사, 척추치료사, 진단 및 치료사, 방사선사 등
2	긴급 서비스 Emergency Services	응급관리 체계에 종사하는 공공, 민간 및 자원봉사자, 소방 구조대, 응급 의료 서비스(EMS), 보안, 공공 및 민간 위험물 대응자, 항공의료서비스 제공자, 수색 및 구조요원 등
3	식품 및 농업 Food and Agriculture	음식료품 종사자, 배달음식 종사자, 편의점 종사자, 식품 제조업체 근로자 및 해당 공급업체 근로자, 식품 포장 및 유통지원 종사자, 농장 및 목장 근로자, 동물보건 종사자 등
4	에너지 Energy	에너지부문 지원 근로자, 에너지 시스템 인프라 지원 종사자, 전기, 석유, 천연가스, 천연가스 액체(NGL), 프로판 및 기타 액체 연료 가공 및 제조 종사자 등
5	수자원 Water	수자원 운영 직원, 지역수도 시스템 운영 종사자, 폐수 처리 시설, 물 및 폐수 운반물 수리·모니터링 작업자 등
6	교통 및 물류 Transportation Systems	화물차/버스 운전기사, 운송업자, 정비 및 수리 기술자, 창고 작업자, 운송 및 물류 기능을 지원하는 작업자, 도로, 교량, 터널 등 고속도로 필수 인프라 운영 지원 인력 등
7	공공업무 및 기반시설 Government & Facilities	주요 인프라 구축, 유지보수 지원 작업자, 폐기를 제거, 보관 및 처리를 지원하는 근로자, 안전, 위생 및 필수적 유지 서비스 제공자 등
8	댐 Dams	댐과 제방의 운영, 점검, 유지보수를 지원 작업자 등
9	정보통신부문 Communications	기술자, 통신 인프라 유지보수 작업자, 통신 서비스 공급자, 통신 장비 지원 근로자, 인터넷·네트워크 관리자 등
10	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	데이터 센터 운영자, 시스템 관리자, HVAC 및 전기 엔지니어, 보안 요원, IT 관리자와 구매자, 데이터 전송 엔지니어 등
11	필수 제조업 Critical Manufacturing	금속제조원, 반도체, 의료 및 운송 관련 공급망에 필요한 제품 제조원, 항공우주, 에너지, 통신, 정보 기술, 식품 농업, 화학 제조원 관련 공급망 종사자 등
12	원자로, 재료 & 폐기물 Nuclear Reactors, Materials & Waste	원자력 시설, 고형 폐기물 처리 작업자, 기타 필수 활동과 관련된 위험 물질(의료 폐기물과 에너지를 포함)을 관리하는 작업자, 위험 물질 대응 및 정화를 지원하는 작업자 등
13	금융서비스 Financial	금융처리, 시스템 점검, 유지보수가 필요한 작업자, 지불, 청산 및 결제를 포함한 금융 거래 및 서비스 종사자 등
14	화학 Chemical	화학 및 산업용 가스 공급망을 지원하는 작업자, 화학제조 공장, 실험실 종사자와 기초 원료 운송 종사자 등
15	방위산업 Defense Industrial Base	국가 안보 약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필수 서비스를 지원하는 다양한 분야 근로자(IT지원, 보안, 항공기 유지관리자 등)
16	상업시설 Commercial Facilities	유통, 창고, 콜센터 시설 및 기타 필수운영 지원자, 운송 및 배송을 용이하게 하는 전자상거래 지원 근로자 등

자료: Cybersecurity &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 (2020, April 17). Guidance on the essential critical infrastructure workforce: Ensuring community and national resilience in COVID-19 response (Version 3.0).

이처럼 미국 국토안보부가 "필수"라고 규정한 직종에서 일하는 종사자는 약 4천 9백만~6천 2백만 명으로, 주로 공공 안전, 의료, 식품 소매 및 제조와 같은 산업에서 고객을 대면하는 직종에서 일하고 있다.¹⁰⁾ 그리고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종 긴급 서비스, 에너지, 수자원, 교통 및 물류 등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2017~2018년 미국 커뮤니티 조사(American Community Survey)는 전체 노동자와 필수노동자, 최전방노동자로 구별하여 성별, 인종, 교육, 임금 4가지 요인으로 살펴보았다.

[그림 2-3] 필수(essential) 및 최전방(frontline) 노동자 구성비



자료: [https://econofact.org/essential-and-frontline-workers-in-the-covid-19-crisis\(2020.04.30\)](https://econofact.org/essential-and-frontline-workers-in-the-covid-19-crisis(2020.04.30))

먼저, 필수(essential)노동자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노동자의 7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필수노동자를 전체 노동자와 비교해 보면, 여성의 비율이 다소 낮고(47% vs. 44%), 비슷한 평균임금을 받으며(\$25.65 vs. \$25.96), 소수 민족의 비율이 조금 더 높고, 교육성취도는 다소 낮았다.

10) Tomer, A., & Kane, J. W. (2020, April 2). Government public health power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Stay-at-home orders, business closures, and travel restrictions. JAMA, 323, 2137-2138. <https://doi.org/10.1001/jama.2020.5460>

다음으로 미국의 최전방(frontline) 노동자는 필수노동자의 60%에 해당하며, 대부분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직종에서 근무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더 낮은 임금을 받으며, 전체 노동자에 비해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집단에 속했다. 최전방 노동자의 평균 임금(\$21.85)은 전체 노동자 및 필수노동자의 평균 임금보다 낮았다.

미국의 최전방 노동자의 약 20%는 의료종사자이며, 식료품 및 필수품 판매 종사자도 15%를 차지했다. 식료품 종사자는 식당들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 동안에도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다. 이러한 최전방 노동자의 50% 이상이 블루칼라 직종이며, 운송 및 자재 이동 노동자, 생산직 노동자, 건설노동자, 부지 및 건물 청소노동자, 설치 유지보수 및 수리 노동자 등이 포함됐다(EconoFact, 2020)¹¹⁾.

그리고 최전방 노동자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임금이 낮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고,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지지가 거의 없다. 구체적으로 유급 병가, 유연한 근무 스케줄 또는 과도한 업무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도 있다. 또한, Kossek & Lee(2020)는 대다수의 필수근로자들이 일과 삶의 균형 및 평등한 고용기회를 요청했을 때, 고용주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승윤 외(2021)에 따르면, 미국의 주정부별 및 연방정부별 필수노동자 관련 정책은 대부분 임금보조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대부분 1회성 지급으로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갖는다고 하였다. 특히, 미국의 전염병에 대한 대응 노력은 지역에서 실행되고, 주정부에서 관리하며, 이를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¹²⁾

3) 영국의 필수노동자

영국 정부는 EU의 코로나19 대응에 중요한 보건 및 사회서비스, 기타 주요 분야 종사자를 필수노동자(Key worker, Critical workers)로 정하고 있다. <표 2-3>은 영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총 8개 분야(보건 및 사회보장, 교육 및 보육, 주요 공공서비스,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 식품 및 필수재, 공공안전 및 국가안보, 수송 및 국경, 공익사업과 통신 및 금융 서비스) 필수노동자 직업군을 보여준다.

2019년 기준 영국의 필수노동자 규모는 1,060만 명(전체 노동자의 33%)이며, 이 중 여성이 58%를 차지한다. 교육 및 보육분야는 81%가 여성이고, 운송에 종사하는 노

11) [https://econofact.org/essential-and-frontline-workers-in-the-covid-19-crisis\(2020.04.30\)](https://econofact.org/essential-and-frontline-workers-in-the-covid-19-crisis(2020.04.30))

12) 이승윤 외(2021), 성동구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및 지원 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성동구청

동자의 대부분은 남성(90%)이다. 이러한 필수노동자의 약 15%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위협에 처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가지고 있다.¹³⁾ 특히, 최전방 의료 및 복지인력은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이 높고, 이들의 감염이 다른 취약 환자들에게 확산될 우려도 크다.

<표 2-3> 영국의 필수노동자(critical workers)

분야	종사자
보건 및 사회복지	의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 사회복지사, 간병인 등 최전방 의료 및 복지인력, 의료 지원인력, 의약품 직원, 의료 및 개인 보호 장비 생산자, 의료 유통업체 직원
교육 및 보육	보육교사, 교직원, 보조교사, 사회복지사, 코로나19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 교육교사
주요 공공서비스	사법제도 운영 필수인력, 종교관련 종사자, 주요 최전방 서비스를 수행하는 자선단체 및 노동자, 사망에 대한 관리 책임자, 공익방송을 제공하고 있는 언론인과 방송인
지방 및 중앙정부	코로나19 대응 및 EU 이행과 대응 행정원, 정부 독립기관들과 단체들을 포함한 수출입 상품의 인증 또는 검사 관련 업무 행정원, 보조금 지급과 같은 필수 공공 서비스 행정원
식품 및 필수재	식품 및 다른 주요 물품의 제공에 필수적인 재화(예: 위생 및 수의약품)를 생산, 처리, 유통 종사자, 판매 및 배달 종사자
공공안전 및 국가안보	경찰, 국방 인력, 군인, 소방관, 구조지원 인력, 국가범죄수사국 직원, 국경 보안관, 교도소 및 보호관찰 직원
교통 및 국경	항공, 수상, 도로 및 철도 여객 및 화물 운송 직원, 운송 시스템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국경 기반 시설 운영 인력
공익사업과 통신 및 금융서비스	은행 및 금융서비스 직원, 석유, 가스, 전기 및 물(하수) 관리 인력, 정보기술 및 데이터 인프라 지원인력, 원자력, 화학, 통신 핵심 인력, 우편 서비스 및 배달, 폐기물 처리 인력

자료: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ronavirus-covid-19-maintaining-educational-provision/guidance-for-schools-colleges-and-local-authorities-on-maintaining-educational-provision>

영국의 필수노동자들의 2019년 임금 중위값(median)은 시간당 12.26파운드(한화 약 18,400원)로 여타 노동자(13.26파운드, 약 19,900원)에 비해 약 8%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약 12만 2천여 명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영국 정부는 필수노동자들의 임금 및 처우개선과 인력확보를 위해 정부지출을 검토하고 있으

13)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healthandsocialcare/conditionsanddiseases/articles/coronaviruscovid19roundup11to15may2020/2020-05-15>

며, 부처별 예산 배정 등을 발표했다. 그리고 보건복지 분야 인력 부족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 비자 무료연장 등의 혜택으로 외국인 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¹⁴⁾

<표 2-4> 영국의 분야별 필수노동자 수

분야	노동자 수(명)	비율(%)
보건 및 사회복지	3,276,595	30.88
교육 및 보육	2,168,876	20.44
공익사업과 통신 및 금융서비스	1,726,847	16.27
식품 및 필수재	1,473,490	13.89
교통 및 국경	611,742	5.76
주요 공공서비스	560,433	5.28
공공안전 및 국가안보	539,386	5.08
지방 및 중앙정부	254,728	2.40
Total	10,612,097	100.00

자료: 채민석(2020), 코로나19 확산과 영국의 필수노동자,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4) 캐나다의 필수노동자

캐나다는 국가 전략의 중요한 기반 시설에서 국민의 건강, 안전, 보안 또는 경제적 복지와 효과적인 정부 기능에 역할을 하고 있는 종사자를 필수서비스 노동자(essential service worker)로 정의하고 있다. 캐나다 공공안전국(Public Safety Canada)은 COVID-19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경제적 안녕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능들을 개발하여 민간부문에서 자체적으로 필수적인 기능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캐나다 공공안전국은 필수서비스 기능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지정함에 있어 산업계 대표들과 협의하여 <표 2-5>와 같이 공표하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산업계와 협의하여 필수서비스 기능에 종사하는 노동자 목록(list)을 수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필수노동자 지원 프로그램(essential Worker Support Program)을 통해 필수노동자 지원 소득 한도를 \$3,000에서 \$3,500로 인상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기간 동안 필수 서비스 및 기능에 종사하는 최대 월 소득이 \$3,500

14) 채민석(2020), 코로나19 확산과 영국의 필수노동자,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이하인 노동자는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15)

또한, 캐나다는 각각의 주(州)에서도 노동자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퀘벡주는 주급 550캐불¹⁶⁾ 이하 필수사업장 근로자에게 주당 100캐불 최대 16주간 임금보조를 실시하고,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해고(laid-off), 질병(sick), 격리(quarantined) 근로자 긴급 지원으로 1회 1,000캐불을 지원한다. 뉴브런즈윅주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 자영업자에게 900캐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실업자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외교부, 2020).¹⁷⁾

<표 2-5> 캐나다의 필수서비스 노동자(essential services workers)

필수서비스 분야	종사자
건강	COVID-19 검사 인력, COVID-19 임상 작업자, 간병인, 병원 및 실험실 직원, 의료장비 직원, 기타 의료시설 직원, 혈액 및 혈장 관련 관리 직원, 의료관련 원격근무가 어려운 자
물	식수 및 폐수/배수 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 직원, 수질 유지 및 테스트 직원, 물 부문 관련 프로젝트 및 서비스 수행자
음식	식료품 및 음료 판매 근로자, 식품 제조업체 직원, 식품 공급업체 직원, 농업, 수산업 근로자, 식품 안전 관련 종사자
정보통신기술	통신 시스템 및 인프라 유지 관리 직원, 뉴스 기자, 미디어 서비스 근로자, 데이터 센터 및 기타 네트워크 사무실 시설 유지 관리자
에너지 및 유틸리티	전기 산업 근로자, 천연 가스 및 프로판 가스 작업자, 석유 노동자
운송	운전자, 운송 시설 직원, 항만 근로자, 비상 대응 지원 운송 작업자, 물류 지원 및 유통서비스 제공 근로자, 택배기사, 트럭기사
제조	재료 및 제품 제조에 필요한 근로자, 금속 제조, 1차 금속 생산업체 근로자, 석유 및 가스, 광업 공급망 기업 근로자
금융	금융 거래, 은행 및 대출 서비스에 필요한 근로자, 연금 서비스 및 복지후생 서비스 제공 근로자, 재무운영 지원 근로자
안전	응급 의료 기술자, 911 콜센터 직원, 최전선, 비상관리 시스템 인력, 의료폐기물 관리 근로자, 테스트 키트 처리 실험실 작업자
정부	필수 기능, 지원 시스템 및 서비스, 통신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연방, 지방 자치단체 직원, 필수 공공정보(공고, 규정, 법률, 공공서비스 발표 등) 보급에 관련된 근로자

자료: <https://www.publicsafety.gc.ca/cnt/ntnl-scrtr/crtcl-nfrstrctr/esf-sfe-en.aspx>

15) <https://www.gov.nl.ca/releases/2021/fin/0112n02/>

16) 캐나다 달러

17) 외교부, 코로나19 관련 캐나다 정부 경제지원 방안(2020.04.30.)

5) 국제사회의 필수노동자 지원 종합

미국연방은 CARE act를 통과시켜 2020년 3월 연간 75,000달러 이하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현금지원을 포함하여 부양가족 현금지급, 연방 실업급여, 중소기업 급여지원, 고용유지 세금공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¹⁸⁾ 또한, 의료, 에너지, 교육 등 필수노동자에게 1인당 최대 2만 5,000달러(약 3,000만원)의 안전수당을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¹⁹⁾ 그리고 주(州)자체 지침을 수립한 22개 주의 경우 연방 지침을 참고하되 주 자체의 사정에 맞추어 지침을 수립하고 있다. 예를 들어 종교단체 및 교회 종사자가 필수노동자인 주가 있는 반면, 카나비스 산업(합법 대마 재배)이 필수노동 산업인 주(州)도 있다.²⁰⁾ 이와 같이 미국은 연방정부 및 주(州)자체 필수노동자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대부분 임금보조의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정부는 최전방 의료 및 복지인력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우선적으로 접종하고, 필수노동자 임금 및 처우개선을 위해 연소득 2만 4,000파운드(약 3,600만 원) 이하 공공 부문 종사자 임금을 직업별로 2~3.1% 인상하였다. 그리고 필수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비자(Visa) 발급 완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²¹⁾

마지막으로 캐나다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지원정책, 돌봄노동자 지원 정책,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지원정책, 노동자 임금보조정책 등을 연방정부 및 주(州)별로 실시하고 있다.

2. 한국의 필수노동자는 누구이며, 그들의 노동환경은 어떠한가?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수업무'의 범위를 규명하고,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게 분야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필수업무의 범위는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와 직결되는 업무, 비대면 사회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업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업무이다. 한국 정부는 이와 같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규모가 약 200만명 정도라고 밝히고 있으며, 각 부처에서 인력확충, 종사자 보호, 처우개선, 제도개편 등의 추진과제를 분야별(보건·의료, 돌봄서비스, 운송서비스, 환경미화, 기

18) 이승윤 외(2021), 성동구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및 지원 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성동구청

19)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21416000004986>

20) 인건보건공단(2020), 국제, '코로나 일상'속 필수노동자의 안전보건 확보 방안, 주요 국제안전보건동향 제476호

21) 채민석(2020), 코로나19 확산과 영국의 필수노동자,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타 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보건·의료 종사자에게는 교육전담 간호사 확대, 의료시설 종사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는 대체인력 지원과 방역 대응 매뉴얼 마련,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운송서비스 종사자에게는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 대책, 배송업체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방안 검토,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보호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고 있다. 환경미화 종사자에게는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 위생시설 개선 지원과 재활용품 선별 지원금 인상 등을 지원하고, 콜센터 상담원에게는 휴게시간, 휴가 보장 등 산업안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22)

<표 2-6> 중앙정부 필수노동자 지원 대상

분야(인원)	종사자
보건·의료 종사자 (22.5만명)	의료시설 간호인력, 의료시설 파견의료인력(민간),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자, 방역소독인력(공공/민간)
돌봄 서비스 분야 종사자 (108.7만명)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아돌봄지원사, 가사·육아도우미, 아이돌보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육교사, 노인돌봄 종사자, 가사·간병서비스 종사자, 산모신생아서비스 종사자
운송서비스 분야 종사자 (44.4만명)	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유통관련 배송기사, 대형 화물차주, 택배기사, 배달기사, 퀵서비스기사
환경미화 분야 종사자 (4.1만명)	환경미화원(직/공영), 환경미화원(위탁),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원, 재활용품 선별원
기타 업무 종사자 (17만명)	콜센터 상담원

자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2020.12)_관계부처 합동

※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대책

- ① 직종별 건강진단 확대 등 건강 보호 강화
 - 택배기사, 배달 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진단을 하며 필수노동자 방역 지원을 위한 개인보호장구 지급을 지속 확대
- ② 산재보험 전속성 기준 폐지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추진
- ③ 취약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집단감염이 반복, 다발하는 업종에 대한 관계부처 협동 집중 관리

22)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2020.12)_관계부처 합동

- ④ 돌봄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을 추진.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교대 근무 인력 등을 추가 지원하며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
- ⑤ 필수노동자 보호 추진체계를 제도화하여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필수노동자 보호 추진체계를 제도화
- ⑥ 그 밖에 방문 돌봄 종사자 등의 한시적 생계 지원, 대리기사 각종 비용부담 완화 추진, 이륜차 기사 보호, 환경미화원 보호·지원을 추진

자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2020.12)_관계부처 합동,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그리고 국내에서 필수노동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 2021년 4월 29일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재난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수업무 및 그 종사자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지원 방안, 재원 조달 등의 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심의하기 위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고용노동부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재난이 종료된 경우 지원계획의 이행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치단체, 공공·민간단체 등의 포상과 정부 업무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평상시에는 재난유형에 따른 필수업무의 현황과 종사자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재난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²³⁾

- ① “필수업무”를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 ② “필수업무 종사자”를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
- ③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23) 권오성(2021). 필수노동자 지원에서 중앙·지방정부·노동센터의 역할에 대한 토론문, 제20회 서울노동권익포럼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에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고,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등이 추천하는 사람,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및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8조).
- ⑤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원계획에는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1조).

그리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발생한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 등을 자율적으로 수립할 권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등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중략…)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재정적 지원)

- ① 국가는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권한의 위임·위탁)

-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등을 통하여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제도적으로 국가(고용노동부장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비영리법인으로 분담할 수 있다.²⁴⁾

1) 국내 필수노동자 현황

국내 필수노동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 2019년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살펴보았다.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등도 국내 노동자 직업(직종)별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필수노동자 직업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중분류 이하의 세부 직업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서울지역 필수노동자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자료도 필요하다. 따라서 직업 중분류, 시도지역 자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로 국내 필수노동자 현황을 분석하였다.

앞에서 논의된 사항과 같이 필수노동자는 공공안전 및 사회서비스 기능을 담당하면서 대면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종사자로 보건/사회복지, 돌봄 서비스, 운송/배달 서비스, 청소/경비 4개의 직업군으로 구분할 수 있다.²⁵⁾ 2019년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보건/사회복지 종사자는 1,485,616명, 돌봄 서비스 종사자는 1,637,992명, 운송/배달 서비스 종사자는 1,723,944명, 청소/경비 종사자는 1,182,030명이다. 이 중 서울지역에

24) 권오성(2021). 필수노동자 지원에서 중앙·지방정부·노동센터의 역할에 대한 토론문, 제20회 서울노동권익포럼

25) 필수노동자 직업군 기준은 <표 2-6> 중앙정부 필수노동자 지원대상에서 「지역별고용조사」 직업 분류를 고려하였음. 「지역별고용조사」는 2가지 유형(A유형: 시군_중분류, B유형: 전국_소분류)의 자료가 공개되고 있음. 본 분석에서는 전국과 서울시를 비교하기 위해 A유형 자료를 활용함. 보건/사회복지 직군은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중분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24)'을 적용하여, 종교 관련 종사자가 포함되어 있음. 돌봄 서비스 직군은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42)',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95)'를 적용하였고, 운송/배달 서비스 직군은 '운전 및 운송 관련직(87)',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92)', 청소/경비 직군은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94)'를 적용하였음

거주하는 필수노동자는 보건/사회복지 295,641명, 돌봄 서비스 312,523명, 운송/배달 서비스 222,946명, 청소/경비 223,932명이다. 따라서 국내 필수노동자의 약 17.71%가 서울지역에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²⁶⁾

2020년 12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에서 공시한 전국 필수노동자 지원규모(약 200만명)를 고려해보면, 서울지역에 있는 정부지원 필수노동자는 약 35만명임을 확인할 수 있다.²⁷⁾

<표 2-7> 전국 및 서울지역 필수노동자 인원

직업군	인원(명)		비중(%)
	전국	서울	
보건/사회복지	1,485,616	295,641	19.90
돌봄 서비스	1,637,992	312,523	19.08
운송/배달 서비스	1,723,944	222,946	12.93
청소/경비	1,182,030	223,932	18.94

각주: <표 2-7> 통계청, 2019 지역별고용조사 자료와 2020년 12월 기준 중앙정부 관계부처 합동 집계 자료(전국 필수노동자 규모 200만명)는 약 3배 정도 차이가 발생한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에는 직업군별 전체 노동자 규모를 제공함(예를 들어, 보건/사회복지 직업군에는 관계부처 합동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의사, 한의사, 치료·재활사 및 의조기사 등이 모두 포함)
자료: 통계청, 2019 「지역별고용조사」 (상/하반기) A유형

필수노동자 개인의 일반적인 현황과 근로조건을 이해하기 위해 전국 및 서울지역 필수노동자의 인구학적 요인(연령, 성별, 학력)과 단시간근로, 장시간근로, 저임금 및 최저임금 수준을 직업군별로 살펴보았다.

먼저, 필수노동자 평균 연령을 직업군별로 살펴보면, 보건/사회복지 40세, 돌봄 서비스 51세, 운송/배달 서비스 50세, 청소/경비 63세로 청소/경비 종사자의 평균 연령이 가장 높고, 보건/사회복지 종사자의 평균 연령은 40세로 낮은 편이다. 운송/배달 서비스 종사자는 서울지역이 54세로 전국에 비해 평균 연령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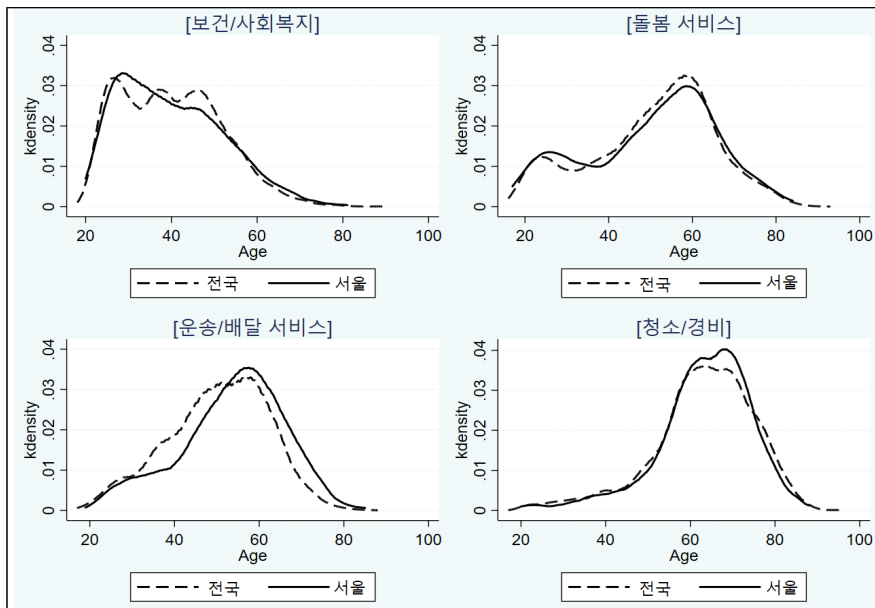
[그림 2-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필수노동자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보건/사회복지지는 30대, 돌봄 서비스와 운송/배달 서비스는 60대, 청소/경비는 70대가 높게 나타났

26) <표 2-7>에서 계산한 필수노동자 인원에서 전국대비 서울 비중 평균은 17.71%이다.

27) 정부지원 필수노동자 200만명에서 전국대비 서울지역 필수노동자 비율(17.71%)을 곱하여 계산하였음. 이 수치는 과대/과소 우려가 있음. 정부지원 필수노동자에서 콜센터 등의 기타 업무종사자는 서울지역에 필수노동자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서울지역 필수노동자 자료의 한계로 세부직종별 규모를 파악할 수 없어, 직업군 전체 규모로 계산하여 과대 계산 우려도 있음.

다. 그리고 보건/사회복지 종사자는 30대, 40대, 50대가 각각 30%씩 차지하고 있고, 서울지역의 보건/사회복지 종사자는 30대가 40-50대에 비해 더 집중되어 있다. 돌봄 서비스 종사자는 60대가 30% 이상이다. 서울지역은 전국보다 40-60대 비중은 낮고, 60-80대 비중은 조금 더 높다. 운송/배달 서비스 종사자는 서울지역이 전국에 비해 30-50대 연령 분포는 낮고, 50대 이상 연령 분포는 높다. 그리고 청소/경비 종사자는 서울지역이 전국에 비해 60-70대 연령이 더 집중되어 있다. 서울지역 청소/경비 종사자는 70대가 약 40% 가까이 차지한다.

[그림 2-4] 필수노동자 연령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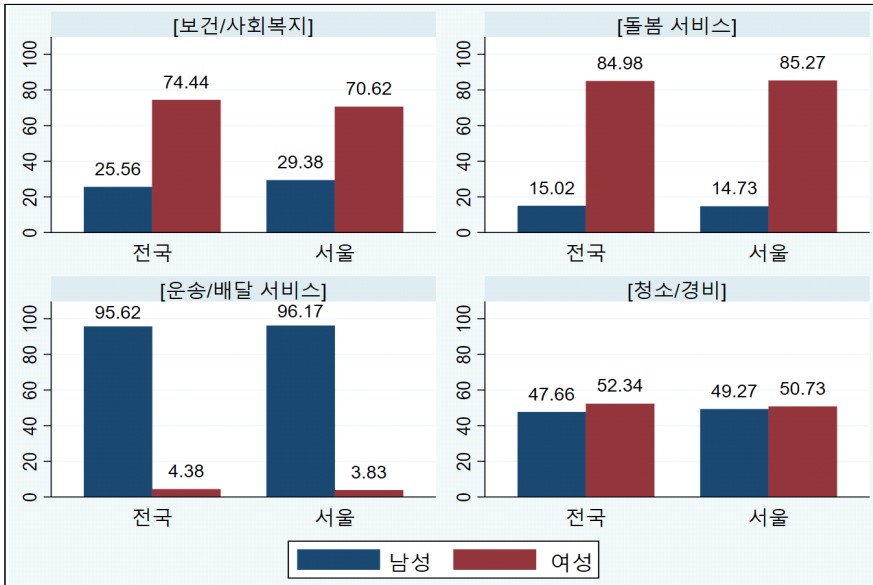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19 「지역별고용조사」(상/하반기) A유형

필수노동자 성별은 4개의 직업군에서 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다. 보건/사회복지 종사자는 여성이 70% 이상 차지했고, 돌봄 서비스 종사자는 여성이 85%로 매우 높다. 국제노동기구(ILO)도 필수노동자의 70%가 여성 의료-돌봄 종사자라고 밝히고 있다. 운송/배달 서비스 종사자는 남성이 95% 이상 차지했다. 청소/경비 종사자는 남녀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청소/경비 종사자 모두 포함되었기에 남녀 성비가 유사하게 나타난 것으로 예측된다.²⁸⁾ 일반적으로 청소노동자는 여성비율이, 경비노동자는 남성비율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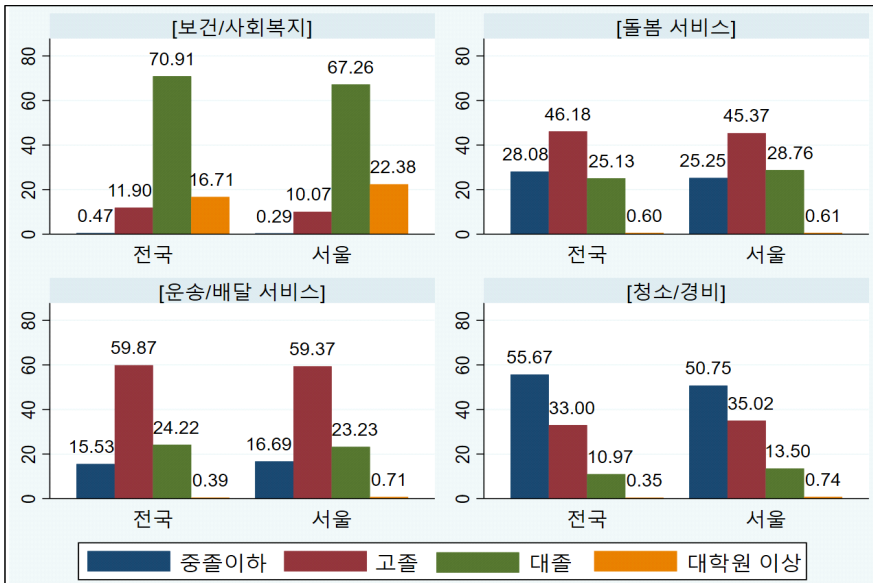
28) 정진호 외(2018), 경비업 근로시간 개선을 통한 고용안정 효과 보고서에서 2016년도 국내 경비원은 남

[그림 2-5] 필수노동자 성별 비율(%)



자료: 통계청, 2019 「지역별고용조사」 (상/하반기) A유형

[그림 2-6] 필수노동자 학력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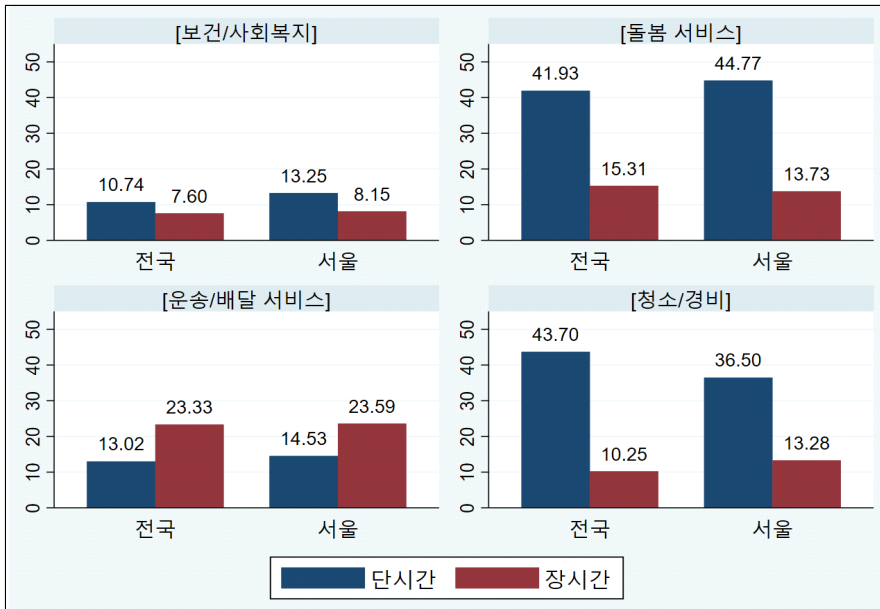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19 「지역별고용조사」 (상/하반기) A유형

성이 99.4%를 차지한다고 밝히고 있음

필수노동자 학력을 살펴보면, 보건/사회복지 종사자는 대졸이 약 70%, 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운송/배달 서비스 종사자는 고졸이 각각 약 45%, 약 60%, 청소/경비 종사자는 중졸이하가 약 50%로 가장 높게 차지했다. 따라서 보건/사회복지 종사자는 고학력자 비중이 높고 청소/경비 종사자는 중졸이하 저학력자 비중이 높다. 전국과 서울지역의 필수노동자 학력을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서울지역에서 고학력 비중이 조금 더 높다.

[그림 2-7] 필수노동자 단시간·장시간 근로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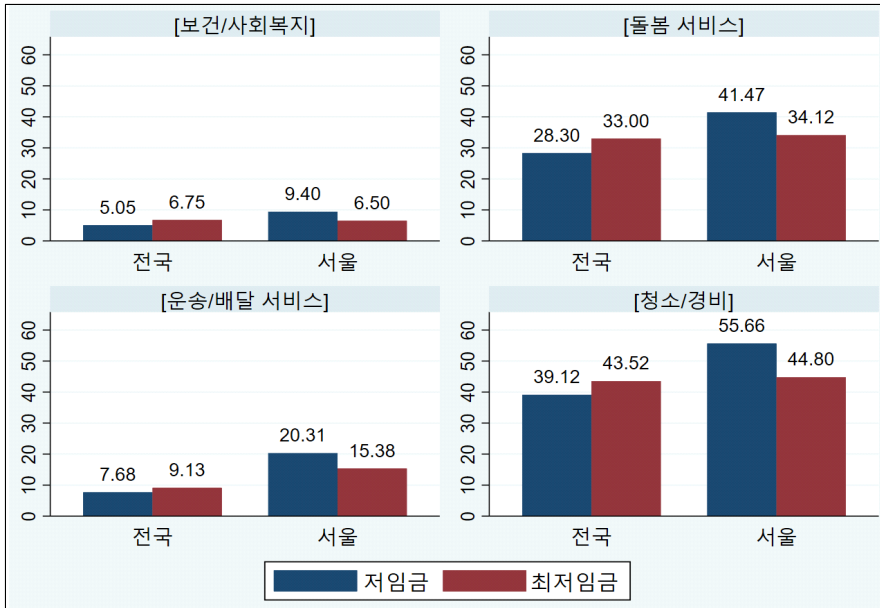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19 「지역별고용조사」(상/하반기) A유형

필수노동자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보건/사회복지 41.4시간, 돌봄 서비스 36.6시간, 운송/배달 서비스 45.7시간, 청소/경비 33.2시간으로 운송/배달 서비스 종사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길다. 서울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운송/배달 서비스 종사자(45.5시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길고, 보건/사회복지 41.3시간, 청소/경비 37.4시간, 돌봄 서비스 35.6시간 순이다.

필수노동자의 단시간 근로와 장시간 근로 비중을 살펴보면, 돌봄 서비스와 청소/경비는 단시간 근로 비중이 40% 이상 높고, 운송/배달 서비스는 장시간 근로가 약 23%를 차지했다.

[그림 2-8] 필수노동자 저임금 비율(%)



자료: 통계청, 2019 「지역별고용조사」(상/하반기) A유형

필수노동자 평균 시간당임금²⁹⁾은 보건/사회복지 16,862원, 돌봄 서비스 9,442원, 운송/배달 서비스 11,794원, 청소/경비 8,912원으로 보건/사회복지 종사자의 시간당임금이 가장 높다. 서울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보건/사회복지 종사자(14,793원)의 평균 시간당임금이 가장 높고, 운송/배달 서비스 종사자 12,738원, 돌봄 서비스 종사자 9,214원, 청소/경비 종사자 8,968원 순이다.

필수노동자의 저임금 근로³⁰⁾와 최저임금 미만³¹⁾ 근로 비중을 살펴보면, 보건/사회복지 종사자는 저임금 근로가 약 5%, 최저임금 미만 근로가 약 7%를 차지했고, 서울지역은 저임금 근로 비중이 약 9%로 전국보다 높다. 돌봄 서비스 종사자는 저임금 근로자 약 28%, 최저임금 미만 근로가 약 33%를 차지했다. 서울지역 돌봄 종사자는 저임금 근로가 약 41%, 최저임금 미만 근로가 약 34%로 모두 전국에 비해 높다. 운송/배달 서비스 종사자는 저임금 근로가 약 7%, 최저임금 미만 근로가 약 9%를 차지했으며,

29) 시간당임금은 주된 일자리의 월평균 시간당임금에서 주당 근로시간*4.345를 나눈 값으로 계산하였음

30) 저임금근로 비중은 2019년 주된 일자리의 시간당임금이 전국 중위임금의 2/3 미만 근로자 비중으로 계산하였으며, 서울지역 저임금근로 비중은 2019년 주된 일자리의 시간당임금이 서울지역 중위임금의 2/3 미만 근로자 비율임

31) 최저임금 미만 비중은 2019년도 최저임금 8,350원 미만 근로자 비중으로 계산하였음

서울지역 운송/배달 서비스 종사자는 저임금 근로가 약 20%로 전국에 비해 약 3배 가까이 높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는 약 15%로 역시 전국에 비해 높다. 청소/경비 종사자는 저임금, 최저임금 미만 근로가 40% 이상 매우 높다. 특히, 서울지역 청소/경비 종사자의 저임금 근로 비율이 약 56%로 절반 이상이 저임금 근로자이다. 최저임금 미만 비율도 45%로 높은 편이다.

2)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국내 필수노동자

코로나19로 인해 필수노동자들은 업무강도가 높아져, 힘들었던 노동현실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실제 현장에서 당사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기사나 자료를 통해 수집했다. 코로나19 전담병원 간호사, 어르신 돌봄 요양보호사,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역 노동자,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육교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의 사례를 살펴봤다. 이들은 필수노동자로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업무를 중단할 수 없으며, 오히려 더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업무를 해야 하는 현실을 토로하고 있고,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임금) 및 휴식을 요구하고 있다.

▷ 간호사

코로나19 전담병원 간호사들은 1년 넘게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고 있다. 의료인력 부족으로 민간 파견인력을 받고 있으나, 파견인력은 3주마다 교체되고, 그 때마다 간호사들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게다가 파견인력은 전담병원 간호사보다 두세 배 많은 임금을 받고 있어, 간호사들은 파견인력과의 임금격차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자료: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755>

▷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는 돌봄을 신청한 가정에 방문해 어르신의 식사를 돕고 양치질과 세면, 기저귀 케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코로나19 고위험군 노인들과 밀접 접촉하여 일한다. 록다운(봉쇄조치) 되더라도 업무를 멈출 수 없다. 요양보호사의 방문 중단은 요양보호에 의존하는 대상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자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8291114021

▷ 방역 노동자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역학조사관들은 심각한 ‘번-아웃’(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로 상태)에 빠져 있다. 길게는 아홉 달 동안 쉴 새 없이 같은 일을 반복해야 했던 역학조사관들은 육체적으로 크게 지쳐 있으며, 격리 ‘명령’을 내려야 했던 역학조사관들은 심리적 갈등에도 시달리고 있다.

자료: <https://wspaper.org/article/24851>

▷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코로나19 감염위험에도 불구하고, 대면 기피현상으로 장애인과 연결이 잘 되지 않아, 활동지원사의 임금이 불안정해졌다. 또한, 활동지원기관은 민간사업자이며, 활동지원서비스 시간당 단가에 따라 활동기관별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동일하지 않고, 미지급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자료: http://www.cnnrec.or.kr/bbs/board.php?bo_table=B37&wr_id=2610

▷ 보육교사

보육교사의 80%가 여전히 휴게장소가 없거나 서류업무가 많아 휴게를 못 하고 있다. 보육교사들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국에 필수노동자로서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으나, 휴식도 없고, 휴가도 없고, 시간외근무는 주52시간 노동 제도가 무색하고, 비정규직이고,페이백으로 급여를 뜯기고, 인권이 짓밟히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자료: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9127>

▷ 택배기사

코로나19 이후 무점포 인터넷 쇼핑과 같은 비대면 소비의 증가로 택배물량은 크게 늘어났다. 택배기사는 근무시간의 1/4 이상의 시간 동안 증량물 취급으로 인한 육체적 위험과 고객 상대로 인한 정신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업무환경에서도 택배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노동법적 보호 범위에 들지 못한다.

자료: 김진하·황민영(2021) 택배기사 근로환경 문제와 개선 방안, 정책리포트(2021.03.08.)

▷ 배달라이더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주문 수요가 증가하면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배달노동자들은 대부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배달라이더들은 종합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 보니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치료비 등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료: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2204018&memberNo=375154&vType=VERTICAL>

▷ 환경미화원

코로나19 이후 택배와 포장이 급증하면서, 재활용 폐기물 수거팀의 일상은 이전보다 바빠졌다. 수거량이 많은 날에는 차량을 4번까지 꽉 채워야 할 만큼 쓰레기가 늘었고, 최소 3톤 이상의 규모로 업무강도가 과중해졌다. 수집원 혼자만으로는 벽차, 운전기사도 수거를 도와야만 작업을 마칠 수 있다.

자료: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88609>

3) 서울지역의 필수노동자

(1)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는 2021년 1월 7일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적용대상은 서울시의 재난 상황 및 특성, 공동체 유지,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필수업종은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이다. 여기서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시민의 생명·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시민과 필수적으로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노동활동을 말한다.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추진사항은 재난 발생에 따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수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필수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사업,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도 있다.

서울시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2021년에 필수노동자 실

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서울시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교통·운수 종사자, 택배 종사자이다. 서울시는 필수노동자 실태조사를 통해 필수업종의 범위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필수노동자 지원체계 및 지원정책을 만들고 있다.

<표 2-8> 서울특별시 자치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현황

연번	자치구	공포번호	시행일자	부서
1	강동구	제1577호	2021. 3.31.	노동권익센터
2	강서구	제1384호	2021. 5. 6.	일자리정책과
3	관악구	제1336호	2021. 2.18.	일자리벤처과
4	구로구	제1513호	2020.11.10.	지역경제과
5	금천구	제1142호	2020.12.31.	일자리창출과
6	노원구	제1491호	2021. 3.18.	일자리경제과
7	동대문구	제1382호	2020.12.31.	경제진흥과
8	마포구	제1368호	2020.12.31.	일자리지원과
9	서대문구	제1410호	2021. 2.24.	일자리경제과
10	성동구	제1377호	2020. 9.10.	일자리정책과
11	성북구	제1362호	2021. 3.18.	일자리경제과
12	양천구	제1570호	2021. 4. 5.	일자리경제과
13	영등포구	제1462호	2021. 9.23.	일자리경제과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021.09.18.기준)

서울시 13개 자치구에서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이루어졌다. 성동구는 2020년 9월 10일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최초로 제정하고, 가장 먼저 필수노동자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성동구의 필수노동자 정의는 공공 안전, 공공 관리, 의료, 돌봄, 복지, 보육, 물류, 운송 등 재난 시에도 사회기능 유지,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재산 보호,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대면(대중 또는 위험한 환경에 직면)업무를 지속해야 하는 업종 종사자이다. 성동구의 필수노동자 기준은 필수노동, 대면업무, 지역적 범위로 설정하였다(성동구, 2021).

성동구의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로 마련된 필수노동자 지원대상은 사회복지 및 돌봄 종사자(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보육서비스 종사자(보육교사, 보조교사, 보육 도우미 등), 병원운영 지원인력(청소방제인력, 경비원 등), 기타 지역 사회기능유지 관련 서비스 종사자(공동주택관리인력, 택배원, 마을버스 기사 등)이다. 이들에게는 지원조례를 바탕으로 마스크, 보안경 등 안전장구 우선 지급, 정기적인 건강검진, 전염병 감염 또는 자연재난 대응에서 부상을 얻을 시, 우선적 치료, 각종 예방접종 및 안전조치에도 최우선적 혜택, 필수노동자들이 정신건강을 유지하며 업무수행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지원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 재정적 조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필수노동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진작하고 필수노동자를 예우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슬로건 제작, 언론보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성동구, 2021).³²⁾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국에서도 부산광역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등 총 72개 자치단체에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1.09.18. 기준).

(2) 서울지역 필수노동자 현황

서울시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직업군(보건·의료·돌봄, 교통·운수, 택배, 환경미화)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필수노동자 규모를 계산했다. 분석 자료는 직업별 소분류 이하 자료와 시군구 자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했다. 직군별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한국표준직업분류(소분류)로 필수노동자 인원을 계산했다.

서울지역 필수노동자는 보건·의료·돌봄 종사자(간호사, 보건교사, 보건 의료 관련 종사자,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가사 및 육아도우미 등), 교통·운수 종사자(택시운전원, 버스운전원, 화물차 및 특수차 운전원, 대리 운전원 등), 택배 종사자(음식 배달원, 택배원 등), 환경미화 종사자(건물 청소원, 쓰레기 수거원, 거리 미화원, 재활용품 수거원 등)로 4개 직업군으로 분류했다.³³⁾

32) 성동구(2021), 성동구 필수노동자 정책자료집

33)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필수노동자는 재난 발생 시에도 시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유지를 위하여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필수업종 종사자로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버스운전, 환경미화** 등의 노동활동을 수행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서울지역 필수노동자 종사자 수는 보건·의료·돌봄 종사자가 약 20만명, 교통·운수 종사자가 약 8만명, 택배 종사자가 약 7만명, 환경미화 종사자가 약 16만명으로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수가 가장 많다.

<표 2-9> 서울지역 필수노동자 수

직업군	한국표준직업분류(소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세분류)	인원(명)
보건·의료·돌봄 (20만명)	243. 간호사	전문 간호사, 일반 간호사, 보건교사 등	57,454
	246. 보건 의료 관련 종사자	응급 구조사, 위생사, 의무 기록사, 간호조무사 등	41,851
	421.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돌봄 서비스 종사원, 보육 및 교사 보조 서비스 종사원, 기타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원	72,930
	951. 가사 및 육아도우미	가사 도우미, 육아 도우미	29,862
교통·운수 (8만명)	873. 자동차 운전원	택시운전원, 버스운전원, 화물차 및 특수차 운전원,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 포함)	82,154
택배 (7만명)	922. 배달원	택배원, 음식 배달원, 기타 배달원 등	71,084
환경미화 (16만명)	941.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160,995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22차년도(2019년)

서울시 자치구별로 필수노동자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의료·돌봄 종사자는 성북구, 관악구, 노원구, 강남구, 강서구 등에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교통·운수 종사자는 양천구, 노원구, 강동구에, 택배 종사자는 영등포구, 은평구, 구로구, 중랑구에, 환경미화 종사자는 노원구, 중랑구, 서대문구, 구로구, 성동구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필수노동자의 거주지 기준으로 계산하였기 때문에 자치구의 필수업종 분포와는 다르다. [그림 2-9]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서울지역 필수노동자들은 동북권과 서남권에 주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도봉구, 강북구, 관악구는 4개 직업군의 필수노동자가 서울시 전체 각 직업군별 필수노동자 수의 5%이상 차지하고 있다. 이들 도봉구, 강북구, 관악구는 서울 외곽지역으로 다른 자치구들에 비해 주거비가 낮은 지역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정규직으로 산업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2-10> 서울지역 필수노동자의 종사상 지위와 정규직/비정규직 여부

직업군	종사상 지위				정규직 여부	
	상용직	임시/일용직	고용주/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정규직	비정규직
보건·의료·돌봄	121,306명 (60%)	74,046명 (37%)	4,269명 (2%)	2,475명 (1%)	111,426명 (57%)	83,927명 (43%)
교통·운수	44,931명 (55%)	12,491명 (15%)	24,732명 (30%)	0명 (0%)	39,113명 (68%)	18,306명 (32%)
택배	20,777명 (29%)	31,973명 (45%)	18,334명 (26%)	0명 (0%)	19,810명 (38%)	32,940명 (62%)
환경미화	46,684명 (29%)	105,376명 (65%)	8,936명 (6%)	0명 (0%)	36,486명 (24%)	115,573명 (76%)

각주: 정규직/비정규직 여부 무응답으로 필수노동자 전체 숫자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22차년도(2019년)

서울지역 필수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192만원, 교통·운수 종사자 222만원, 택배 종사자 215만원, 환경미화 종사자 124만원으로 서울지역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278만원)의 45%~80% 수준이다. 환경미화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은 2018년 최저임금 157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³⁴⁾

그리고 필수노동자의 종사상 지위별 월평균 임금을 살펴보면, 4개 직업군 모두에서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임금격차가 컸다. 교통·운수 종사자는 상용직과 자영업자에 비해 임시/일용직의 임금이 116만원 정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돌봄 종사자도 상용직 233만원, 임시/일용직 124만원으로 109만원 차이가 있다. 택배 종사자는 자영업자가 261만원으로 월평균 임금이 가장 높고, 환경미화 종사자의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수준 이하로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노동자는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도 매우 크게 나타났다. 보건·의료·돌봄 종사자는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약 2배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통·운수 종사자는 월평균 95만원, 환경미화 종사자는 월평균 83만원, 택배 종사자는 월평균 54만원을 비정규직이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4) 한국노동패널 22차년도(2019년) 자료의 월평균 임금은 전년도(2018년) 기준이며, 여기서 환경미화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원 뿐만 아니라, 거리청소원, 건물 청소원 등 서울지역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청소원이 포함되어 있음

<표 2-11> 서울지역 필수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직업군	종사상 지위			정규직 여부	
	상용직	임시/일용직	고용주/자영업자	정규직	비정규직
보건·의료·돌봄	233만원	124만원	200만원	236만원	132만원
교통·운수	248만원	132만원	219만원	253만원	158만원
택배	234만원	176만원	261만원	233만원	179만원
환경미화	176만원	101만원	118만원	187만원	104만원

각주: 1) 임금은 세금공제 후 월평균 임금으로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공적 보험요금을 제외한 금액이며, 노조회비와 사내동호회비 등 기타 공제 금액은 포함됨. 2)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는 세금공제 후 월평균 소득으로 계산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22차년도(2019년)

이와 같이 필수노동자의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간 임금격차가 큰 것은 근로시간 때문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주당 평균 근로시간에 4.3을 곱한 값에 월평균임금을 나누어 시간당임금으로 살펴보았다. 필수노동자 4개 직업군별 시간당임금은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12,209원, 교통·운수 종사자 11,772원, 택배 종사자 10,775원, 환경미화 종사자 8,766원이다(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³⁵⁾ 이들 필수노동자의 시간당임금은 서울지역 전체 노동자의 시간당임금 16,108원 보다 낮고, 환경미화 종사자의 시간당임금은 서울지역 전체 노동자의 시간당임금에 절반 수준이다.

필수노동자의 종사상 지위별 시간당임금을 살펴보면, 각 직업군별 임시/일용직은 상용직 시간당임금의 71~88%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운수 종사자의 임시/일용직은 상용직과 자영업자 시간당임금의 약 71%를 받았다. 택배 종사자는 상용직,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순으로 시간당임금이 낮았으며, 보건·의료·돌봄 종사자의 임시/일용직은 상용직 시간당임금의 약 81%를 받았다. 환경미화 종사자는 상용직의 시간당임금도 1만원 이하였으며,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수준 이하로 시간당임금을 받고 있었다.

필수노동자의 정규직/비정규직 간 시간당 임금격차도 나타났다.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교통·운수 종사자, 환경미화 종사자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약 82%의 시간당임금을 받았고, 비정규직 택배 종사자는 정규직에 비해 약 74%의 시간당임금을 받았다. 이와 결과는 고용형태에 따른 구조적인 차이가 필수노동자의 임금에 반영된다는 것을 확인

35) 한국노동패널 22차년도(2019년) 자료의 월평균 임금은 전년도(2018년) 기준이며, 여기서 환경미화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원 뿐만 아니라, 거리청소원, 건물 청소원 등 서울지역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청소원이 포함되어 있음

할 수 있다.

<표 2-12> 서울지역 필수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직업군	종사상 지위			정규직 여부	
	상용직	임시/일용직	고용주/자영업자	정규직	비정규직
보건·의료·돌봄	13,125원	10,695원	11,628원	13,250원	10,818원
교통·운수	12,284원	8,691원	12,398원	12,184원	10,045원
택배	12,775원	9,517원	10,702원	12,925원	9,522원
환경미화	9,690원	8,518원	6,873원	10,238원	8,448원

각주: 시간당임금은 주당근로시간에 4.3을 곱한 값에 <표 11>의 월평균임금을 나누어 계산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22차년도(2019년)

다음으로 필수노동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37시간, 교통·운수 종사자 47시간, 택배 종사자 46시간, 환경미화 종사자 34시간으로 나타났다. 필수노동자의 종사상 지위별, 정규직 여부에 따른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³⁶⁾ 보건·의료·돌봄 종사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임시/일용직이 30시간으로 단시간근로자이며, 교통·운수 종사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상용직이 5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많았다. 택배 종사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자영업자의 경우 57시간으로 장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 환경미화 종사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임시/일용직이 29시간으로 단시간근로자다.³⁷⁾

<표 2-13> 서울지역 필수노동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직업군	종사상 지위			정규직 여부	
	상용직	임시/일용직	고용주/자영업자	정규직	비정규직
보건·의료·돌봄	42시간	30시간	40시간	42시간	31시간
교통·운수	50시간	39시간	46시간	51시간	39시간
택배	44시간	42시간	57시간	42시간	42시간
환경미화	43시간	29시간	38시간	43시간	30시간

36) 서울지역 전체 노동자의 주당 근로시간 평균은 상용직 42시간, 임시/일용직 35시간 고용주/자영업자 47시간이며, 정규직 42시간, 비정규직 37시간으로 계산됨

37) 주당 평균근로시간 36시간 이하는 단시간근로자, 54시간 이상은 장시간근로자로 정함

각주: 임금근로자는 주당 정규근로시간, 비임금근로자는 주당 평균근로시간으로 계산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22차년도(2019년)

필수노동자의 정규직/비정규직 여부에 따른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택배 종사자를 제외하면, 비정규직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정규직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에 비해 10시간 이상 적었다. 특히,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환경미화 종사자는 비정규직 근로시간이 각각 31시간, 30시간으로 단시간근로자이다. 그리고 교통·운수 종사자는 정규직의 경우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1시간으로 매우 많다. 택배 종사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서울지역 필수노동자의 직무만족도를 6가지 항목(임금 또는 보수, 취업의 안정성, 하고 있는 일의 내용, 근무환경, 근로시간, 복지후생제도)으로 살펴보았다. 필수노동자들의 직무만족도는 대부분 보통 수준이며, 6가지 항목 중 '임금 또는 보수', '복지후생제도'에 대한 직무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보건·의료·돌봄 종사자는 '하고 있는 일의 내용', '취업의 안정성', '근로시간' 순으로 직무만족도가 높았고, 교통·운수 종사자는 '하고 있는 일의 내용', '근로시간', '근무환경' 순으로 직무만족도가 높았다. 택배 종사자는 필수노동자 중 가장 직무만족도가 낮았다. 특히, 복지후생제도에 대한 직무만족도가 낮았다. 환경미화 종사자는 '복지후생제도', '임금 또는 보수', '취업의 안정성' 순으로 직무만족도가 낮았다.

<표 2-14> 서울지역 필수노동자의 직무만족도

직업군	임금 또는 보수	취업의 안정성	하고 있는 일의 내용	근무 환경	근로 시간	복지후생 제도	전체 평균
보건·의료·돌봄	62점	70점	71점	66점	69점	61점	67점
교통·운수	55점	65점	67점	66점	67점	58점	63점
택배	54점	62점	66점	66점	62점	50점	60점
환경미화	59점	61점	64점	63점	66점	57점	62점
전체 평균	58점	65점	67점	65점	66점	57점	63점

각주: 매우만족=100, 만족=80, 보통=60, 불만족=40, 매우 불만족=20 5점 척도 100점 환산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22차년도(2019년)

다음으로 필수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이 가능한가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건·의료·돌봄 종사자는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이 가능하지

않다가 58%, 대체로 가능하다가 40%로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다. 교통·운수 종사자는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이 대체로 가능하다는 의견이 16%, 택배 종사자는 8%에 불과하여, 매우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환경미화 종사자는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이 전혀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 20%를 차지했다. 필수노동자들은 스스로가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2-15> 서울지역 필수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성

직업군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보건·의료·돌봄	40%	47%	11%	1%
교통·운수	16%	64%	18%	1%
택배	8%	76%	11%	5%
환경미화	24%	51%	20%	5%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22차년도(2019년)

<표 2-16> 서울지역 필수노동자의 주관적 경제 수준

직군	상		중		하	
	상	하	상	하	상	하
보건·의료·돌봄	0%	0%	14%	57%	21%	7%
교통·운수	0%	1%	9%	49%	37%	4%
택배	0%	0%	1%	35%	47%	16%
환경미화	0%	0%	7%	40%	28%	24%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22차년도(2019년)

<표 2-16>의 결과는 필수노동자 본인의 경제적 수준이 어떤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보건·의료·돌봄 종사자는 ‘중-하’ 계층이 5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하-상’ 계층 21%, ‘중-상’ 계층 14% 순이다. 교통·운수 종사자는 ‘중-하’ 계층 49%, ‘하-상’ 계층 37%로 나타났다. 택배 종사자는 ‘하-상’ 계층이 47%로 가장 많았다. 환경미화 종사자는 ‘하-상’ 계층 28%, ‘하-하’ 계층 24%로 50%이상 스스로가 하층에 속한다고 의견을 낸 것이다. 이는 필수노동자들 스스로도 경제적 지위 계층 수준이 낮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특히, 택배 종사자, 환경미화 종사자는 경제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이라고 생각하는 노동자들이 16%~20%를 차지한다.

4) 필수노동자 지원은 지역단위에서 출발해야..

코로나19로 인해 필수노동 영역에서 제도적 지원이 미흡했던 노동자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택배, 배달종사자는 특수고용이나 프리랜서인 경우가 많아 고용이나 산업재해보험 적용대상도 아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분야의 간호사, 돌봄,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은 대면업무로 감염병에 취약한 노동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환경미화 청소업무를 하는 노동자들도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거리청소의 교통사고 위험과 폐기물 수거, 오염물질 취급에 따른 건강위험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제도적 지원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노동자 지원 대책으로 방문돌봄 종사자 등 9만명에 한시적 생계지원을 위해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고,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대상 맞춤형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나, 임시방편적인 지원, 부분적 지원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필수노동자'를 지원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열악한 노동환경과 고용 불안에 노출된 이들을 보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노동 형태인 플랫폼 등 비정형 노동자와 돌봄·택배 등 필수노동자의 노동 권익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실현에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각 지역 내 필수노동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방안에 대한 노력을 시도 단위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즉, 각 지역에서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영역의 노동자를 선별하고, 지역별로 필수노동자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그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날 것이다.

Ⅲ. 필수노동자로서 환경미화원의 노동현황

청소행정서비스의 최전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은 사회 기능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인력이다. 이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을 수행하는 환경미화원은 국민의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노동을 하고 있는 근로자이다.

코로나19로 필수노동자로 주목받고 있는 환경미화원은 코로나19 이전에도 노동계와 산업안전 분야에서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노동계에서는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처우, 직영과 민간위탁 간의 차별, 공공서비스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무관심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안전문제, 안전사고 및 스트레스, 건강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1.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의 쓰레기 수집·운반 작업의 이해

환경미화원은 대부분 집 앞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문전수거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한다. 일부 빌라, 주택 등의 밀집 지역 생활쓰레기는 수레를 이용하여 이동 후 청소차량에 수거하며, 상가 밀집지역이나 아파트의 생활쓰레기는 거점수거방식으로 수집·운반 작업을 수행한다. 생활폐기물은 1-100L 규격의 '생활 폐기물 봉투(종량제 봉투)'를 1-4 개씩 들어 수거 차량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작업하고 있으며, 음식물 폐기물은 지역구마다 비치한 120L 음식물 쓰레기통을 이용하여 작업 차량으로 수거한다, 재활용 폐기물은 종이류, 플라스틱, 캔류, 병류 등을 수거한 후 선별분류 작업을 시행한다. 신고필증이 부착된 대형폐기물은 지정된 장소에서 차량으로 수거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한다.

1) 종량제(일반쓰레기) 수집·운반

재활용이 어려운 생활폐기물은 지자체에서 지정한 종량제봉투³⁸⁾에 담아 배출하면 환경미화원들이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회수한다.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는 지역별·계절별 발생량 및 특성을 고려하여 수거·적환·운반의 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

38) 종량제봉투 규격은 1ℓ ~ 100ℓ 부피단위로 10가지가 있으며, 지자체마다 색상이나 모양이 다름

공동주택은 대형차량이 출입할 수 있기 때문에 5톤 이상 차량으로 회수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단독주택은 좁은 골목들이 많아 환경미화원들이 손수레를 이용하거나 1톤 차량으로 회수하여 중간 거점까지 가져다 놓으면 5톤 이상 대형차량이 종량제봉투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진다. 서울특별시는 중간에 적환장을 두어 소규모 단위로 수거해온 소각봉투와 매립봉투를 대형차량으로 재분류한 뒤 자원회수시설로 운반한다.

일반적인 작업공정은 사무실(임시사무실)의 출근 확인 후 → 각자 업무 차량을 이용하여 작업 장소 이동(1조, 2~4인, 차량 운전자 포함) →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작업 실시 → 적환장 수집 → 소각장, 매립지 이동 → 사무실(임시사무실) 복귀 확인 → 퇴근한다(최서연, 2019). 작업공정은 다른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처럼 일련의 공정은 없지만 작업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림 3-1] 환경미화원의 종량제(생활쓰레기) 작업 방식



자료: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회, 안전보건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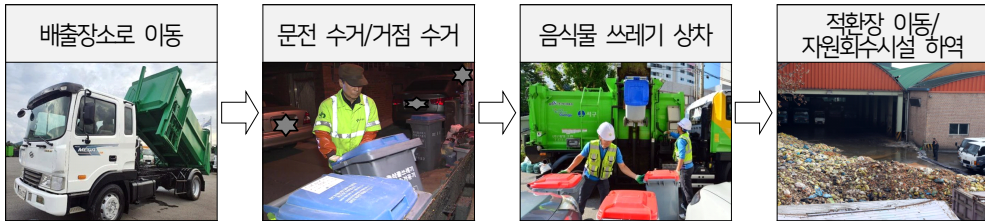
2)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전용 수거용기와 음식물 리프트차량을 이용해 이루어진다.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면 환경미화원들은 수거하여 리프트가 부착된 전용 수거차량으로 올려 수거 통을 비운 뒤 다시 배출장도에 원 위치시키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진다. 공동주택은 전용 수거용기를 모아둔 지점에 차량이 진입하기 어렵지 않아 배출 지점에서 바로 수거가 이루어진다. 반면 단독주택은 작은 골목까지 음식물 쓰레기차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골목에 나와 있는 음식물 쓰레기들을 지정된 장소에 모아서 음식물 쓰레기 차량에 옮겨 싣고, 적환장에 버리는 작업을 수행한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에서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전용 수거용기와 전용 리프트의 호환성이라 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는 전용 수거용기와 리프트 높이의 호환성이 부족해 근로자들이 전용 수거용기를 직접 들어 올려 리프트에 걸어서 올려야 하는 경우도 있

다. 이 경우 환경미화원들은 어깨와 허리 부담이 가해져 근골격계질환에 노출될 우려가 높다(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2018).

[그림 3-2] 환경미화원의 음식물쓰레기 작업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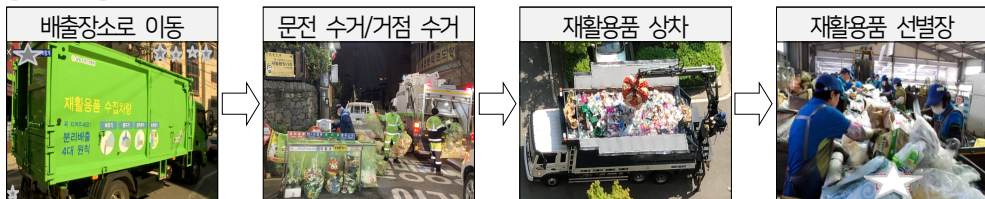
각주: 중간 거점 및 전환장은 지자체 특성에 따라 활용 여부가 다름

3) 재활용쓰레기 수집·운반

재활용 가능한 캔, 고철, 플라스틱, PET병, 스티로폼 등을 각 가정에서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환경미화원들이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회수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공동주택은 마대나 땅에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배출하고, 단독주택이나 사업장은 비닐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플라스틱, PET병, 스티로폼 등은 부피는 크지만 무겁지 않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은 한 번에 최대한 많은 양을 수집·운반하려는 경우가 발생한다. 때로는 수거차량에 많이 실기 위해 적재함 위에서 재활용품을 밟고 높은 곳까지 올라가기도 한다. 적재된 재활용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재함 최상부에 그물망을 설치하다가 미끄러지거나 발을 헛디뎠을 때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골목은 손수레 또는 1톤 차량으로 중간 거점까지 가져다 놓으면 5톤 이상 대형차량이 재활용품을 회수하는 경우도 있다. 수거한 재활용품은 선별장으로 운반하여 종류별로 선별한 뒤 압축 또는 분쇄하여 자원회수시설로 운반하게 된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선별장이 별도로 없어 중간거점에서 회수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곳도 있다(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2018).

[그림 3-3] 환경미화원의 재활용쓰레기 작업 방식



각주: 중간 거점 및 재활용품 선별장은 지자체 특성에 따라 활용 여부가 다름

4)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형 가전제품이나 가구, 욕조, 침대 매트리스, 안마용 의자 등 종량제봉투에 담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들을 지정 배출된 장소에서 회수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한 배출스티커를 받거나, 지자체에서 구축한 배출신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암물박스(초록색 박스) 차량이나 대형화물차량이 수거에 주로 사용된다. 대형폐기물은 수거지역과 자원회수시설 간의 거리가 멀어 운반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은 편이다. 따라서 환경미화원들은 왕래횟수를 줄이기 위해 목재류 같은 경우는 배출장소에서 상차 전 폐기물을 분해 또는 파쇄하는 방법으로 부피를 줄인다(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2018).

인력에 의한 수집운반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집계차(하이카, 너클크레인이라 부르기도 함)를 이용하기도 한다. 집계차량을 이용한 작업은 인력 부담은 줄어들지만 보조자가 폐기물을 잡고 있다가 집계에 팔이 끼이거나 들어 올린 폐기물에 부딪히는 등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집계차 운전원이 집계 조종석에 오르내리다가 떨어지는 재해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2018).

[그림 3-4] 환경미화원의 대형폐기물 작업 방식



2.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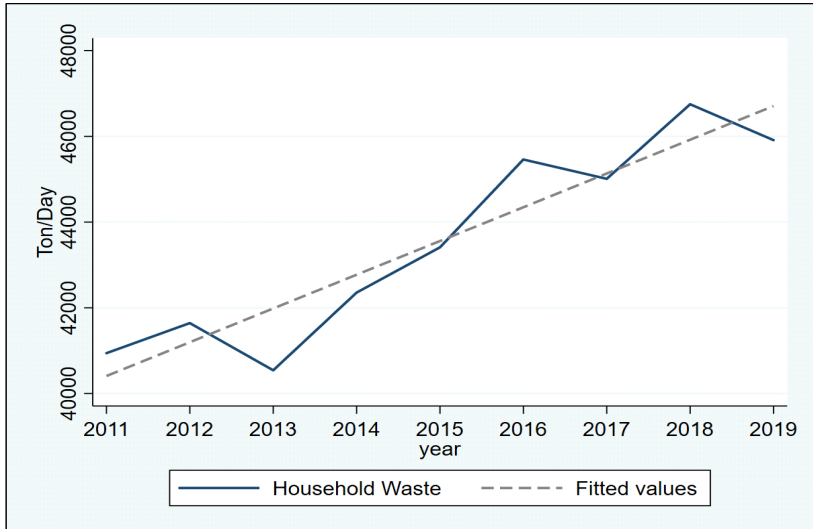
1) 전국 생활폐기물 발생, 처리, 관리현황

환경미화원이 수집·운반하는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 폐기물로 가정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과 일련의 개보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이다(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1년 40,942톤, 2015년 43,411톤, 2017년 45,009톤,

2019년에 45,912톤으로 평균 약 1.48%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폐기물 처리방법(매립, 소각 등)별 처리시설로 반입되는 양의 합으로 산정한다.³⁹⁾

[그림 3-5] 연도별 생활(가정)폐기물 발생 추이



자료: 자원순환정보시스템 2019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https://www.recycling-info.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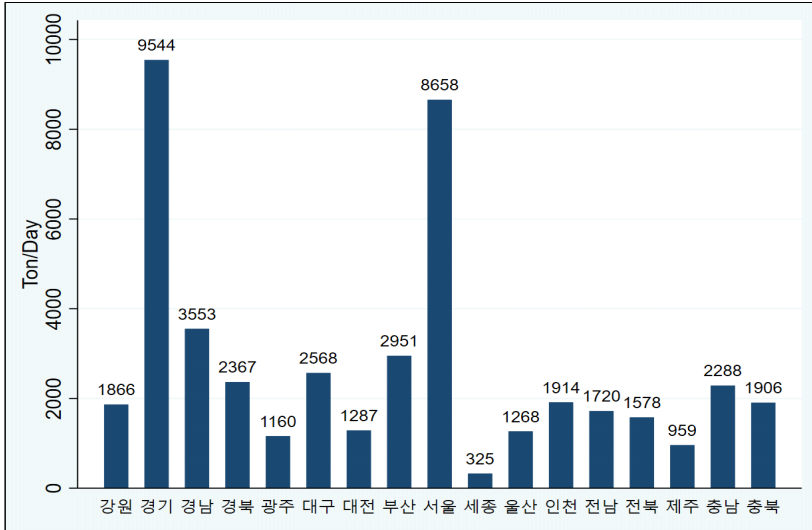
2019년도 지역별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경기 9,544톤, 서울 8,658톤, 경남 3,553톤 순으로 많았으며, 서울/경기가 전체의 39.7%를 차지했다.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지역은 세종(352톤), 제주(959톤), 광주(1,160톤), 울산(1,268톤), 대전(1,287톤) 순이다.

생활폐기물은 쓰레기 발생 상태에 따라 종량제방식 등 혼합배출(쓰레기종량제봉투 등 혼합되어 배출되는 폐기물을 의미하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제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남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또는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된 폐기물),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폐지류, 폐유리병류 등 재활용을 목적으로 별도 구분하여 배출된 폐기물)로 구분된다.

39) 종량제방식 등 혼합배출 된 생활폐기물 처리방법별 처리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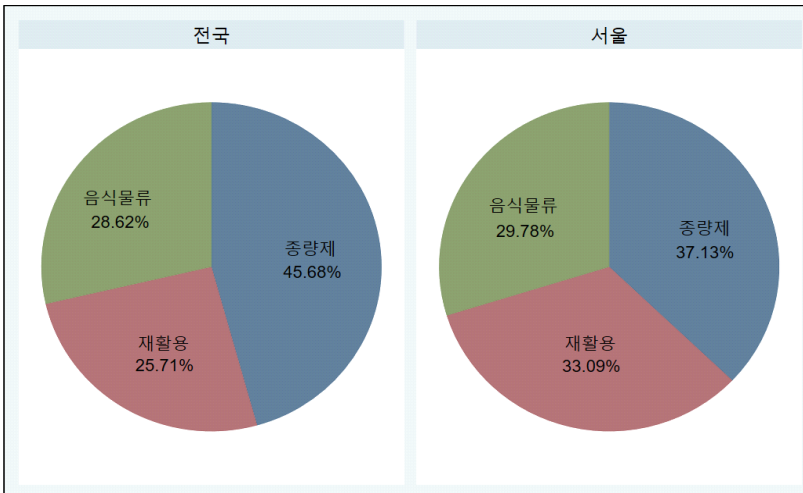
- ① 매립: 매립장으로 반입 처리된 관할구역내의 연간 매립량을 반입 폐기물 성상별 비율로 곱한 양
- ② 소각: 소각장으로 반입 처리된 관할구역내의 연간 소각량을 반입 폐기물 성상별 비율로 곱한 양
- ③ 재활용: 재활용시설로 반입 처리된 관할구역내의 연간 재활용량을 반입 폐기물 성상별 비율로 곱한 양
- ④ 기타: 소각을 제외한 중간처분(기계적(압축, 파쇄 등), 화학적(고형화, 중화, 응집 등), 생물학적(호기성, 혐기성 등)처분 등)시설에서 처리한 연간 폐기물 양

[그림 3-6] 지역별 생활(가정)폐기물 발생량



자료: 자원순환정보시스템 2019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https://www.recycling-info.or.kr/>

[그림 3-7] 생활폐기물 성상별 발생 현황



자료: 자원순환정보시스템 2019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https://www.recycling-info.or.kr/>

2019년도 전국 생활(가정)폐기물 중 종량제 배출비율은 45.68%(20,971톤/일)이며, 음식물류 폐기물은 28.62%(13,139톤/일),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은 25.71%(11,802톤/일)이다. 서울지역에서 생활(가정)폐기물 중 종량제 배출비율은 37.13%(3,215톤/일)이며, 음식물류 폐기물 29.78%(2,578톤/일),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은 33.09%

(2,865톤/일)이다. 서울지역은 전국에 비해 음식물류 폐기물과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비중이 높다.

생활폐기물 처리주체는 공공처리, 자가처리, 위탁처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 처리는 지방자치단체 처리시설 또는 국가처리시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에 의한 처리방식이다. 자가처리는 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을 배출자의 자가 처리시설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며, 위탁처리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받은 민간업체에 의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생활계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처리 63.2%, 자가처리 0.2%, 위탁처리 37.2%로 공공처리 비율이 가장 높다.

또한, 생활폐기물은 처리방식별로 재활용, 소각, 매립 등으로 처리되는데, '19년도 1일 생활계폐기물 처리량은 재활용 25,887톤, 소각 13,101톤, 매립 6,753톤, 기타⁴⁰⁾ 170톤이다. 서울지역 1일 생활폐기물 처리량은 재활용 5,513톤, 소각 2,165톤, 매립 970톤, 기타 10톤으로 전국의 1/5 수준이다.

<표 3-1> 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 현황 (단위: 톤/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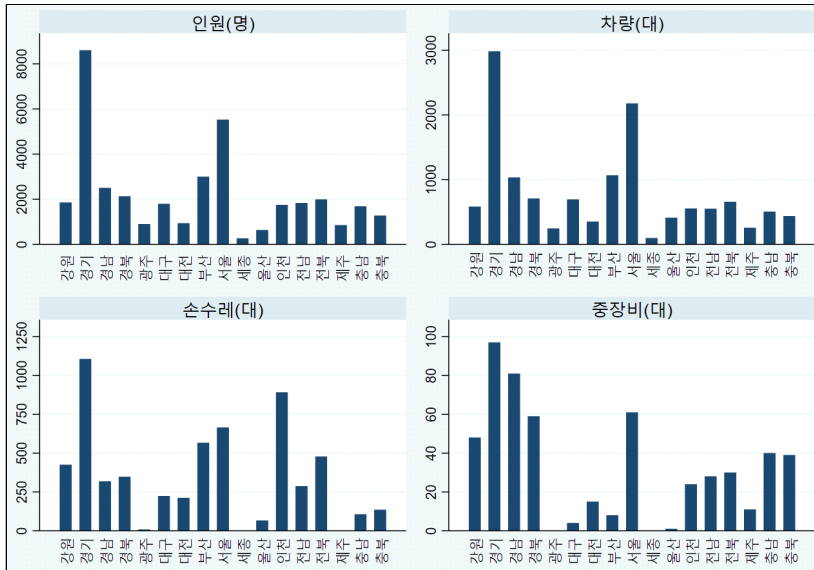
구 분	계	비율(%)	매립	소각	재활용	기타
계	45,912	100.0	6,753	13,101	25,887	170
공공처리	29,031	63.2	6,681	11,689	10,598	63
자가처리	95	0.2	3	1	90	1
위탁처리	17,087	37.2	370	1,412	15,199	106

자료: 자원순환정보시스템 2019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https://www.recycling-info.or.kr/>

전국 17개 지역에서 생활계폐기물 관리인원은 경기도가 8,604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서울 5,527명, 부산 2,995명, 경남 2,498명, 경북 2,132명 순으로 많다. 생활폐기물 차량, 손수레, 중장비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차량 2,982대, 손수레 1,106대, 중장비 97대, 서울은 차량 2,178대, 손수레 665대, 중장비 61대, 부산은 차량 1,066대, 손수레 567대, 중장비 8대를 보유하고 있다. 17개 지역중 생활폐기물 장비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으로 차량 97대를 보유하고 있다.

40) 18년도까지는 '재활용'에 포함되었던 소각을 제외한 중간처분량(기계적(압축, 파쇄 등), 화학적(고형화, 중화, 응집 등), 생물학적(호기성, 혐기성 등) 처분 등)이 '19년도부터 '기타'항목으로 분리됨

[그림 3-8] 생활폐기물 관리인원 및 장비현황



자료: 자원순환정보시스템 2019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https://www.recycling-info.or.kr/>

<표 3-2> 생활폐기물 관리예산 (단위: 천원)

시도	총계	국비	지방비	지방채	2019년 세입 수수료	기타
전국	6,942,985,584	96,459,259	5,474,561,747	4,500,000	1,367,424,578	40,000
서울	1,275,000,559	4,771,900	995,989,659	0	274,239,000	0
부산	375,644,748	5,375,000	283,859,135	4,500,000	81,910,613	0
대구	367,917,245	6,156,300	260,631,341	0	101,129,604	0
인천	375,964,734	1,992,110	277,471,168	0	96,501,456	0
광주	156,437,463	480,300	117,844,538	0	38,112,625	0
대전	205,589,986	0	150,666,758	0	54,923,228	0
울산	134,212,050	7,200	100,345,739	0	33,859,111	0
세종	47,435,016	112,500	41,130,481	0	6,192,035	0
경기	1,691,369,540	3,537,843	1,379,198,697	0	308,633,000	0
강원	317,185,207	12,122,744	258,891,463	0	46,171,000	0
충북	162,588,832	839,500	129,759,332	0	31,990,000	0
충남	278,769,214	5,891,300	221,904,914	0	50,973,000	0
전북	276,373,661	5,901,541	229,440,120	0	41,032,000	0
전남	262,603,497	3,615,019	224,598,478	0	34,390,000	0
경북	381,533,211	6,419,915	324,480,296	0	50,593,000	40,000
경남	429,215,426	8,056,087	333,422,339	0	87,737,000	0
제주	205,145,195	31,180,000	144,927,289	0	29,037,906	0

자료: 자원순환정보시스템 2019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https://www.recycling-info.or.kr/>

환경부 자원순환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관리예산을 살펴보면, 2020년도 생활폐기물 관리예산은 약 7조이며, 이 중 지방비가 약 5조 5천억, 2019년 세입 수수료 1조 4천억, 국비는 약 1조를 차지했다. 이처럼 생활폐기물 관리예산은 대부분 지방비(약 79%)로 충당되고 있다.

생활폐기물 관리예산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1조 3천억)과 경기(1조 7천억)는 각각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체예산의 약 43%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경남 4천3백억, 경북·인천·부산 3천8백억, 대구 3천7백억 순으로 예산이 많다. 또한, 생활폐기물 전체 예산에서 1/7을 차지하는 국비지원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제주가 310억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강원 120억, 경남 80억, 경북·대구 60억 순이다. 서울은 약 48억으로 17개 시도 중 9번째로 많은 예산을 받고 있다. 대전은 생활폐기물 관리예산에 국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서울시 생활폐기물 발생, 처리, 관리현황

서울시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는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에서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서울시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쓰레기) 배출량 통계, 서울시 쓰레기수거 장비, 서울시 청소예산 주민 부담률 통계, 서울시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통계 등 생활폐기물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서울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9천847톤이며, 이 중 66%(6천535톤)는 재활용처리 되고, 23%(2천246톤)는 소각, 10%(979톤)는 매립한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808톤), 강서구(599톤), 강남구(591톤), 서초구(498톤), 마포구(478톤) 순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많다<표 3-3>. 그리고 2019년 기준 서울시 주민 1인당 하루 생활폐기물(쓰레기) 배출량은 평균 1kg이다. 자치구별로는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중구(3.03kg), 종로구(2.1kg)가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많고, 노원구(0.59kg)는 25개 자치구 중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가장 작다<표 3-4>.

<표 3-3> 서울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단위: 톤/일, %)

	발생량	재활용			소각	매립	기타
		소계	재활용	음식물			
계	9,847.4	6,535.4	3,729.3	2,806.1	2,245.8	978.5	87.7
처리비율	100.0	66.4	37.9	28.5	22.8	9.9	0.9
종로구	339.9	219.6	124.5	95.1	79.9	40.3	0.1
중구	413.7	224.3	136.5	87.8	133.9	55.5	-
용산구	305.2	198.6	127.8	70.8	69.3	31.3	6.0
성동구	303.1	211.4	136.8	74.6	62.6	27.1	2.0
광진구	333.9	253.2	158.7	94.5	59.1	21.2	0.4
동대문구	411.2	298.4	205.6	92.8	93.1	19.5	0.2
중랑구	330.5	223.1	186.0	37.1	89.3	17.7	0.4
성북구	371.3	275.6	180.5	95.1	86.1	8.8	0.8
강북구	251.2	175.3	101.7	73.6	69.0	6.9	-
도봉구	345.1	220.7	140.0	80.7	76.0	5.7	42.7
노원구	317.3	207.4	82.4	125.0	104.6	3.9	1.4
은평구	369.0	224.9	150.8	74.1	49.2	94.5	0.4
서대문구	240.1	146.5	76.5	70.0	63.9	29.2	0.5
마포구	477.5	285.9	162.5	123.4	147.3	44.1	0.2
양천구	340.8	221.5	104.0	117.5	101.3	18.0	-
강서구	599.4	446.2	286.0	160.2	115.5	35.7	2.0
구로구	326.5	171.0	74.1	96.9	124.5	30.9	0.1
금천구	286.7	198.0	135.5	62.5	0.1	88.6	-
영등포구	417.3	266.4	111.0	155.4	99.6	47.6	3.7
동작구	315.4	224.9	131.9	93.0	67.2	23.3	-
관악구	434.7	313.2	221.9	91.3	37.7	83.7	0.1
서초구	498.3	293.2	114.0	179.2	129.4	75.4	0.3
강남구	591.2	348.2	225.0	123.2	197.4	44.0	1.6
송파구	808.2	604.8	190.1	414.7	114.9	84.7	3.8
강동구	419.9	283.1	165.5	117.6	74.9	40.9	21.0

각주: 1) 생활폐기물 = 가정생활폐기물(음식물포함)+사업장생활폐기물

2) '18년도까지는 '재활용에 포함되어 있던 소각을 제외한 중간처분량(기계적(압축, 파쇄 등), 화학적(고형화, 중화, 응집 등), 생물학적(호기성, 혐기성 등) 처분 등)이 '19년도부터 '기타'항목으로 분리됨

자료: 서울 열린데이터광장_2019년 서울시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을 제공하는 지정·조사통계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

2019년 기준 서울시 쓰레기수거 장비 현황은 환경미화원 5,527명, 차량 2,178대,

손수레 665개, 중장비 61개이다<표 3-5>.41) 쓰레기수거 환경미화원은 강남구(586명), 관악구(331명), 강북구(330명), 마포구(318명), 영등포구(271명) 순으로 많으며, 이 중 직영(공무직)이 40%(2천여명), 민간위탁 대행업체 소속이 60%(3천여명)이다(김철 외, 2019). 서울시 직영(공무직)은 거리청소, 민간위탁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에 대부분 투입되어 있다.

<표 3-4> 서울시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쓰레기) 배출량 통계 (단위: kg/인/일, 톤/일, 명)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쓰레기) 배출량(kg/인/일)	생활폐기물 배출량(톤/일)	주민 수(명)
계	0.98	9,847.4	10,010,983
종로구	2.10	339.9	161,869
중구	3.03	413.7	136,488
용산구	1.24	305.2	245,185
성동구	0.98	303.1	308,979
광진구	0.91	333.9	366,972
동대문구	1.13	411.2	363,023
중랑구	0.82	330.5	402,024
성북구	0.82	371.3	454,744
강북구	0.79	251.2	317,695
도봉구	1.03	345.1	335,631
노원구	0.59	317.3	537,303
은평구	0.76	369.0	484,546
서대문구	0.74	240.1	323,171
마포구	1.24	477.5	385,925
양천구	0.74	340.8	462,285
강서구	1.00	599.4	598,273
구로구	0.74	326.5	439,371
금천구	1.14	286.7	251,820
영등포구	1.04	417.3	400,986
동작구	0.77	315.4	408,912
관악구	0.84	434.7	517,334
서초구	1.15	498.3	435,107
강남구	1.07	591.2	550,209
송파구	1.18	808.2	682,741
강동구	0.95	419.9	440,390

각주: 1) 생활폐기물 = 가정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폐기물 2) 주민수는 주민등록인구(외국인 포함)임
 자료: 서울 열린데이터광장_2019년 폐기물의 발생량을 제공하는 조사통계, 지정통계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41) <표 3-5> 환경부 자원순환정보시스템 2019 데이터와 일치

〈표 3-6〉의 서울시 청소예산 주민부담률은 종량제 판매수입으로 계산되며 평균 61.5%다. 청소예산 주민부담률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동대문구(82.8%), 청소예산 주민부담률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금천구(44.7%)이다. 그리고 서울시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58.3%로 처리비용이 더 크다. 자치구 중 마포구(125.8%)와 은평구(108.4%)만 재정자립도가 100% 이상이다. 청소예산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자치구는 영등포구(27.4%)이며, 중랑구(38.5%), 구로구(43.5%), 관악구(44.7%), 강동구(47.1%), 중구(47.5%), 서대문구(48.8%)의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50% 미만이다〈표 3-7〉.

〈표 3-5〉 서울시 쓰레기수거 장비 (단위: 명, 대)

	환경미화 인원	지방자치단체			처리업체		
		차량	손수레	중장비	차량	손수레	중장비
계	5,527	1,167	394	37	1,011	271	24
종로구	258	62	45	-	85	10	-
중구	125	72	4	1	-	-	-
용산구	240	42	-	-	83	43	11
성동구	197	99	-	1	-	-	-
광진구	96	-	-	-	51	37	4
동대문구	244	14	50	-	91	-	-
중랑구	237	22	-	-	79	-	-
성북구	229	50	83	2	77	-	-
강북구	330	89	-	7	-	-	-
도봉구	118	25	-	3	46	-	-
노원구	99	-	-	-	60	-	-
은평구	222	96	42	3	-	-	-
서대문구	200	56	-	1	-	-	-
마포구	318	45	-	-	57	-	-
양천구	186	79	29	-	-	-	-
강서구	204	20	-	5	63	-	-
구로구	154	7	-	-	42	21	2
금천구	126	40	-	2	39	-	2
영등포구	271	48	-	3	80	27	5
동작구	181	62	33	-	-	-	-
관악구	331	46	-	1	48	60	-
서초구	229	110	14	7	-	-	-
강남구	586	-	-	-	52	-	-
송파구	114	67	94	-	-	-	-
강동구	232	16	-	1	58	73	-

자료: 서울 열린데이터광장_2019년 서울시 쓰레기수거 관련 인원 및 장비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

<표 3-6> 서울시 청소예산 주민부담률 통계 (단위: 백만원, %)

	수집운반비용		처리비용			종량제 제작 비용	수집운반 처리비 총계	종량제 판매수입	주민부 담률
	수집운반 비용합계	위탁 대행시	처리비용 합계	위탁 처리시	자체 처리 시설				
계	202,033	202,033	170,355	162,407	7,948	25,203	397,591	244,334	61.5
종로구	7,437	7,437	6,633	6,633	-	682	14,752	9,963	67.5
중구	9,712	9,712	8,315	8,315	-	986	19,013	12,576	66.1
용산구	10,506	10,506	4,313	4,313	-	1,127	15,946	10,760	67.5
성동구	6,342	6,342	5,935	5,935	-	897	13,174	8,711	66.1
광진구	6,297	6,297	5,559	5,559	-	1,005	12,861	7,649	59.5
동대문구	5,743	5,743	4,516	3,013	1,503	1,047	11,306	9,360	82.8
중랑구	6,837	6,837	6,523	6,523	-	985	14,345	8,527	59.4
성북구	7,948	7,948	5,849	5,849	-	1,011	14,808	9,742	65.8
강북구	5,760	5,760	5,480	5,480	-	769	12,009	6,152	51.2
도봉구	4,966	4,966	5,367	1,907	3,460	521	10,854	6,326	58.3
노원구	8,905	8,905	7,278	7,278	-	759	16,942	10,131	59.8
은평구	7,317	7,317	6,110	6,110	-	515	13,942	9,643	69.2
서대문구	5,204	5,204	5,825	5,825	-	683	11,712	6,051	51.7
마포구	7,234	7,234	5,882	5,882	-	1,335	14,451	9,934	68.7
양천구	8,627	8,627	5,802	5,802	-	1,013	15,442	9,444	61.2
강서구	9,481	9,481	10,497	10,497	-	1,606	21,584	10,324	47.8
구로구	6,825	6,825	9,557	9,557	-	1,202	17,584	8,662	49.3
금천구	5,306	5,306	4,623	4,623	-	443	10,372	4,637	44.7
영등포구	8,463	8,463	8,634	8,634	-	1,038	18,135	9,850	54.3
동작구	7,149	7,149	6,364	6,364	-	767	14,280	7,774	54.4
관악구	9,341	9,341	6,558	6,558	-	1,460	17,359	10,051	57.9
서초구	12,334	12,334	9,747	9,747	-	1,282	23,363	14,785	63.3
강남구	14,561	14,561	5,744	5,744	-	1,748	22,053	16,830	76.3
송파구	14,697	14,697	13,143	13,143	-	1,430	29,270	17,709	60.5
강동구	5,041	5,041	6,101	3,116	2,985	892	12,034	8,743	72.7

각주: 1) 수집운반처리비 총계 = 수집운반비용 합계 + 처리비용 합계 + 종량제제작비용

2) 청소예산 주민부담률 =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수집운반처리비*100

자료: 서울 열린데이터광장_2019년 서울시 청소예산 주민부담률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

<표 3-7> 서울시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통계 (단위: 백만원, %)

	수입항목				지출항목				청소예산 재정 자립도 (A/B)
	계(A)	일반 쓰레기 수수료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대형 폐기물 외 수수료	계(B)	가정 쓰레기 처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	대형 폐기물 처리 외	
합계	274,582	148,403	85,803	40,376	471,279	168,401	128,913	173,965	58.3
종로구	11,320	4,970	2,718	3,632	20,124	5,932	5,803	8,389	56.3
중구	15,678	6,445	3,431	5,802	32,995	13,041	4,636	15,318	47.5
용산구	7,862	4,327	3,133	402	14,970	8,160	4,570	2,240	52.5
성동구	10,396	4,985	2,670	2,741	14,087	6,770	3,017	4,300	73.8
광진구	8,780	4,764	2,769	1,247	16,920	6,901	5,611	4,408	51.9
동대문구	10,008	5,418	3,477	1,113	14,134	6,390	3,869	3,875	70.8
중랑구	9,491	4,747	3,342	1,402	24,625	6,753	7,359	10,513	38.5
성북구	10,734	5,121	4,148	1,465	15,661	5,210	6,433	4,018	68.5
강북구	7,639	3,341	2,713	1,585	15,103	5,799	5,441	3,863	50.6
도봉구	6,647	3,312	3,247	88	12,480	5,940	3,460	3,080	53.3
노원구	11,599	5,651	4,651	1,297	13,075	2,414	8,366	2,295	88.7
은평구	12,723	5,847	4,359	2,517	11,734	2,812	6,051	2,871	108.4
서대문구	6,035	3,255	2,601	179	12,357	3,121	4,788	4,448	48.8
마포구	9,664	5,349	3,750	565	7,683	3,457	3,591	635	125.8
양천구	11,778	5,626	4,582	1,570	18,535	6,004	7,297	5,234	63.5
강서구	11,674	7,718	2,668	1,288	17,754	6,558	2,223	8,973	65.8
구로구	10,258	5,800	2,493	1,965	23,586	6,240	3,365	13,981	43.5
금천구	8,630	3,906	4,200	524	11,976	4,280	4,449	3,247	72.1
영등포구	11,009	6,342	4,051	616	40,203	9,821	8,757	21,625	27.4
동작구	6,563	4,317	1,311	935	10,732	3,050	3,640	4,042	61.2
관악구	11,560	6,403	3,507	1,650	25,864	2,958	3,527	19,379	44.7
서초구	16,601	10,261	4,710	1,630	32,788	13,032	9,583	10,173	50.6
강남구	27,450	18,786	4,309	4,355	31,443	15,232	6,843	9,368	87.3
송파구	18,943	11,712	6,963	268	29,181	18,526	6,234	4,421	64.9
강동구	1,540	-	-	1,540	3,269	-	-	3,269	47.1

각주: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청소업무를 통한 여러 수입이 연간 쓰레기 총 처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

연간 쓰레기 총수입(봉투판매금액+재활용품 판매수입+대형 폐기물 수수료 수입+기타수입(과태료 등)/연간 쓰레기 총 처리비용(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비용 및 가로 청소비용 등

자료: 서울 열린데이터광장·2019년 서울시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를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쓰레기 종량제 현황」

3.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

1) 사고 및 건강문제 요인

2015~2020년 8월까지 서울지역에서 작업 중 사고나 질병으로 산재를 인정한 환경미화원이 5천 700명이다. 이 중 35명은 사망했고, 5천 421명은 부상을 입었다.⁴²⁾ 이처럼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은 사고 위험이 높다. 청소차량 및 일반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압축기 등 유압장치에 의한 협착,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자상, 중량물 취급과 무리한 동작에 따른 사고성 요통, 호흡기질환이나 각종 감염성 질환 등이 대표적이다(김규연, 2017).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작업형태에 따라 거리 청소업무(직영)는 위험 폐기물(깨진 유리 등), 인력부족,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순으로 사고발생 위험이 높고, 쓰레기 수거 및 운반(민간위탁 회사 소속)은 위험 폐기물(깨진 유리 등), 시민 협조 부족,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작업(담당)구역이 넓음, 노후화된 수거차량 순으로 사고발생 위험이 높다(최서연, 2019).

▷ 재해 사례

(끼임) 재활용품 상차 중 압축 기계에 손 또는 발이 끼이면서 골절됨
(넘어짐) 적재함에서 재활용품 정리 중 차량이 움직여 넘어지면서 갈비뼈, 무릎을 다침
(떨어짐) 차량후미 발판에서 떨어지는 스티로폼을 잡으려다 떨어짐
(떨어짐) 차량에 그물망 설치를 위해 올라가다 빗물에 미끄러져 2m 높이에서 떨어짐
(떨어짐) 적재함에서 재활용품 정리 중 물기 또는 비닐봉지를 밟고 미끄러져 떨어짐
(근골격계질환) 배출된 병 자루(30kg)를 차량에 실어 올리려다 갑자기 허리에 통증 발생
(베임·찢림) 재활용 마대에 담김 유리조각에 손바닥을 찢리며 인대가 파열됨

자료: 고용노동부(2019), “2019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산재예방보상정책국 보도자료

환경미화원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은 근로환경적 요인과 안전관리 주체의 부재, 인력 부족 문제, 환경미화원의 고령화, 현대화되지 못한 청소 장비를 들 수 있다. 환경미화원의 근로환경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이며, 야간, 실외로 예상하지 못한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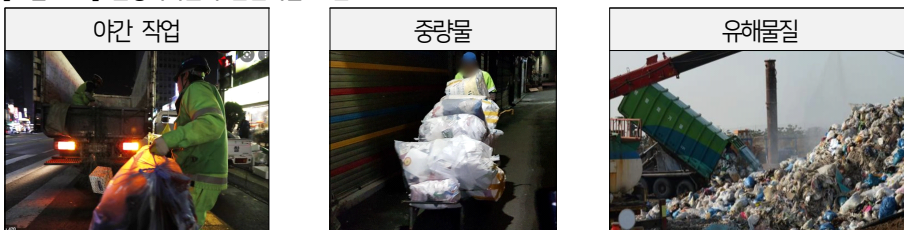
42) <https://lej515.tistory.com/394>

변화로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그리고 일반 사업장과 달리 환경미화원의 경우 안전한 작업 환경 주체가 부재하여, 작업자 스스로 안전을 챙기는 수준이며, 환경미화원의 안전 사고 인식도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인력 부족으로 작업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여 시간은 감소하게 된다(김규연, 2017).

환경미화원 작업환경은 유해인자 노출에 대한 위험도도 높다. PM2.5(미세먼지) 노출 수준은 기하평균으로 $99.2\mu\text{m}/\text{m}^2$ 로써 대기기준이나 실내 기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일부 환경미화 작업장에서의 이산화질소는 기하평균 53.3ppb 수준으로써 대기 기준보다 높고, 박테리아와 곰팡이의 농도도 실내 권고기준에 비해 높다(김원 외 2018). 김원 외(2018)는 PM2.5와 같은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가 디젤배출물질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디젤배출물질의 노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미화원의 작업현장은 일반 환경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생물학적 인자에 노출 가능한 상황이므로 미생물에 대한 오염 관리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작업환경에서 생물학적 유해요인으로 접촉가능한 유해물질은 기저귀에 있는 대변, 실금 패드와 장루주머니, 애완동물들의 쓰레기, 가축 우리 등에서 나온 동물 폐기물, 설 치류 침입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유해물질들은 파상풍, B형 간염 바이러스, A형 감염 바이러스, 세균성 독소, 로타 바이러스, 기생충, 장티푸스를 유발할 수 있다.

[그림 3-9] 환경미화원의 안전위험 요인



2) 안전지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 안전기준 관련 법령은 폐기물관리법과 시행규칙에 나와 있으며, 환경미화원의 보건조치와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 5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 3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14조의 5(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 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안전기준,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 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 ① 법 제14조의5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2.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 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운영할 것
 -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 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 다.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서는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의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대해 사업주가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업무로 하루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은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명시하고 있다.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제3조(근골격계부담작업)

법 제39조제1항제5호 및 안전보건규칙 제656조제1호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한다.

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3) 정부 및 지자체의 대응

정부는 환경미화원의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선진 청소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작업 안전기준 설정 및 근무시간 개선,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 작업안전수칙 개선 및 안전교육 강화, ‘한국형 청소차 모델’ 개발, 노후 청소차 신속 교체, 고용형태별 차별 없는 근무여건 조성 등을 추진했다. 구체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안전기준 설정 및 매년 실태조사 실시 등을 법제화하고, 환경미화원 작업시간을 주간 원칙으로 운영했다.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절단방지장갑 등 환경미화원 필수착용 안전장비품목을 설정하고,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종량제봉투 폐기물무게 상한 규정도 만들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수칙 수준 의무화 및 안전교육을 강화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8).

최근에는 정부가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에게 컨테이너하우스, 냉·난방기, 샤워시설 등 필요품목을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지원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 및 미세먼지를 대비하여 환경미화원에게 마스크 지급 및 맞춤형 건강진단 개선방안을 마련에 힘쓰고 있다.⁴³⁾

환경부와 지방정부는 노후 청소차의 신차 교체 및 친환경청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위탁계약 시 입찰, 계약 및 대행료 적정지출 여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폐기물 배출자 비용부담 현실화로 안전대책 재원을 마련하고, 이해관계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환경미화원 작업환경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8).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 제정 및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환경미화원의 안전에 노력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2021년에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환경미화원들의 안전기준을 강화하였다. 100리터 규격을 전면 폐지하고, 주간작업과 3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주간작업으로 인해 주민 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소각·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는 주간작업의 예외를 두고, 1.5톤 미만 차량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자동 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등 특수 장비를 사용한 작업의 경우에는 3인 1조 작업의 예외를 두고 있다(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안, 2021). 서울특별시 강동구는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던 야간작업 대신 ‘매일·주간’ 수거를 선도적으로 실시했다. 또한, 청소 대행권역을 기존 3개에서 5개로 확대하고, 이 중 1개 권역의 수거·소송 업무는 직영화해 업무처리 안정성과 공공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다.⁴⁴⁾

<표 3-8>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별 작업인력(3인 1조 원칙)

폐기물 종류	차량	운전원	상차원	계
일반 종량제봉투	1.5톤 이상	1	2	3
	1.5톤 미만	1	1	2
음식물류 폐기물	리프트부착 차량	1	1	2
	일반 차량	1	2	3
재활용품	1.5톤 이상	1	2	2
	1.5톤 미만	1	1	2
대형폐기물		1	2	3

자료: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2018), 서울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안(2021) 재작성

그리고 자치구별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에도 안전수칙의 수준사항이 있다. 청소작업 시 반드시 지정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압축차량에 의한 수거작업 시 압축회

43)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장관, 환경미화원 현장 방문, 2020.10.27

44) 강동구 보도자료, 2020.06.10. “강동구, 주택가에 스마트한 쓰레기 수거함 도입”

전판에 신체의 일부분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며, 위험요인이 있는 장소는 청소작업 전에 안전대 설치 등으로 안전 확보 후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고가도로 등 차량전용도로 및 일반가로(차도)의 청소작업 시에는 경광등이 부착된 차량 등으로 안전조치 후 청소를 실시해야 하며, 음주 등 사고의 제반 요인을 제거한 후 청소를 실시하도록 안전수칙이 명시되어 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민간위탁

지방정부는 다양하고 복잡한 지방공공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외부기관을 통해서 '민간위탁'이란 정책수단을 사용하고 있다(류춘호, 2017). 우리나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민간위탁(또는 대행)은 1980년대를 전후로 도입되었으며, 초기에는 시장과 아파트단지가 사업대상이었다(유기영, 2011).

생활폐기물 서비스는 비배제성, 비경합성, 비사적재라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공서비스 유형에 속하지만, 생활폐기물 서비스 자체가 성과와 서비스 질 측정이 쉽고, 노동집약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직접하기보다는 민간위탁에서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공공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현승현·정지훈, 2017).

그러나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이 업체의 과도한 수익을 보장해주고, 청소비용증가, 청소업체의 부정과 자치단체와의 유착의혹, 종사자의 희생과 노사관계의 악화 등 부정적 결과에 대한 의견과 언론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공서비스를 공공성이 아닌 비용성만으로만 바라볼 때, 노동자들의 희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운영 현황

우리나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직영·공공위탁·민간위탁으로 나뉘어져 운영되고 있으며,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직영과 민간위탁이 혼재된 경우가 다수 있다. 행정안전부의 2019년 현황 조사(19.3.1. 기준)에 따르면, 직·공영 16,452명(45.3%), 민간위탁 19,878명(54.7%)로, 종사자 수는 총 36,330명이다. 업무분야별로는 가로 청소는 직·공영이 80%,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대형 폐기물은 각각 민간위탁이 68%, 82%, 73%를 많이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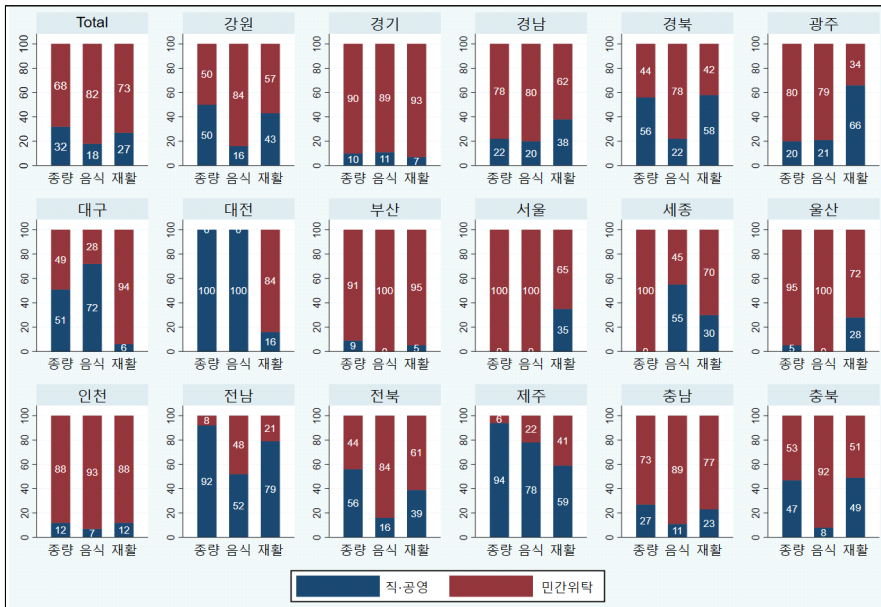
서울은 직·공영 2,357명(41%), 민간위탁 3,388명(59%)로, 종사자 수는 총 5,745명이다. 2019년도에는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전체 민간위탁으로 운영했다.

<표 3-9> 업무분야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환경미화원 현황

	전국			서울		
	합계	직공영	민간위탁	합계	직공영	민간위탁
합계	36,330	16,452 (45%)	19,878 (55%)	5,745	2,357 (41%)	3,388 (59%)
가로청소	12,455	9,968 (80%)	2,487 (20%)	2,157	1,806 (84%)	351 (16%)
일반쓰레기	10,694	3,393 (32%)	7,301 (68%)	1,217	- (0%)	1,217 (100%)
음식물쓰레기	5,301	980 (18%)	4,321 (82%)	787	- (0%)	787 (100%)
재활용품·대형폐기물	7,880	2,111 (27%)	5,769 (73%)	1,584	551 (35%)	1,033 (65%)

각주: 2021년 현재 서울지역 일부 자치구에서는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직영으로 전환하였음.
 자료: 김철 외(2019), 공공부문 민간위탁 제도개선방안 (05월 행정안전부 전수조사)

[그림 3-10]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환경미화원 비율(%)



자료: 김철 외(2019), 공공부문 민간위탁 제도개선방안 (05월 행정안전부 전수조사)

전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업체는 총 665개이며, 서울시, 부산시, 울산시, 세종시, 경기도, 충북, 충남, 전북, 경남 등 9개 시·도에서 직영 종사자 수보다 민간

위탁 종사자 수가 더 많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환경미화원은 경기도가 가장 많고(8,509명), 서울시(5,745명), 부산시(2,868명) 순이다. 민간위탁 업체 소속만 보면, 경기도, 서울시, 부산시가 가장 많고, 그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민간위탁 환경미화원의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김철 외(2019)는 2019년 5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환경미화원 전수조사에서 직·공영,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규모를 시도별·성상별로 파악했다. 경기도는 종량제쓰레기 90%, 음식쓰레기 89%, 재활용쓰레기 93%를 민간위탁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은 종량제쓰레기 91%, 음식쓰레기 100%, 재활용쓰레기 95%를 민간위탁에서 운영하고 있다. 대전은 종량제쓰레기 100%, 음식쓰레기 100%, 재활용쓰레기 16%를 직·공영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는 종량제쓰레기 94%, 음식쓰레기 78%, 재활용쓰레기 59%를 직·공영에서 운영하고 있다.

2) 서울시 생활폐기물 관리체계와 민간위탁 현황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책임은 1차적으로 25개 자치구에, 2차적으로 서울시시장에게 있다. 자치구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시설을 갖고 수집하며, 서울시는 자치구의 수집처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유기영, 2015).

<표 3-10> 생활폐기물 관리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역할	행정조직	관련조직
서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처리계획 수립시행 ▷ 광역처리시설 설치운영 ▷ 폐기물처리사업 능률화 ▷ 자치구사업 기술재정지원 ▷ 자치구처리사업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순환과 ▷ 생활환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SR센터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 자원회수시설 (강남, 노원, 마포, 양천)
25개 자치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처리계획 수립시행 ▷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 폐기물처리사업 능률화 ▷ 폐기물 수집운반조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행정과, 자원순환과 등 자치구에 따라 명칭 다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운반조직(대행업체 포함) ▷ 음식물처리시설 ▷ 재활용품선별장 ▷ 적환장

자료: 유기영(2015), 서울시 폐기물관리체계 A에서 Z까지, 서울연구원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경쟁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며, 계약기간은 자치구별로 상이하나, 보통 2년~3년으로 한다. 구역을 지정하여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선정 공고를 통해 경쟁 입찰하며, 수집·운반 대상 생활폐기물은 일반(종량제)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혼합재활용품 및 페스티로폼, 대형생활폐기물 등이다. 생활폐기물 대행업체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수행에 필요한 최소의 인력 및 장비,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 수집운반차량, 수송차량, 적환장, 휴게실, 적환장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수거원 및 운전원의 적정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구로구, 2019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공고 및 과업지시서)

각 자치구별 2020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수는 종로구 3개, 중구 6개, 용산구 5개, 성동구 4개, 광진구 3개, 동대문구 3개, 중랑구 3개, 성북구 3개, 강북구 2개, 도봉구 3개, 노원구 4개, 은평구 4개, 서대문구 3개, 마포구 4개, 양천구 6개, 강서구 5개, 구로구 4개, 금천구 4개, 영등포구 6개, 동작구 5개, 관악구 7개, 서초구 5개, 강남구 7개, 송파구 9개, 강동구 4개로 총 113개사이다.

[그림 3-11] 서울지역 자치구별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및 종사자 수



단위: 대행업체 수는 개,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종사자 인원은 명
 자료: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2020년 12월 기준)

서울지역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수는 총 3,348명이다. 강남구가 470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송파구 211명, 서초구 203명, 강동구 133명으로 동남권 지역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 수는 1,017명으로 가장 많다. 그리고 중랑구 132명, 동대문구 126명, 강북구 106명, 성북구 109명, 도봉구 102명, 노원구 100명, 광진구 99명, 성동구 80명으로 동북권 지역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은 854명, 영등포구 105명, 구로구 129명, 양천구 117명, 관악구 105명, 동작구 98명, 강서구 69명으로 서남권 지역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은 752명이다. 그리고 마포구 158명, 은평구 142명, 서대문구 76명으로 서북권 지역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은 376명, 중구 137명, 종로구 109명, 용산구 103명으로 도심권 지역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은 349명이다(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2020년 12월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을 선정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으로 선정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는 해당 자치구에서 매년 평가를 받는다. 마포구는 2020년도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를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로 실시하였다. 주민만족도 평가에는 바른 수거, 생활환경보전, 대구민자세, 구민만족도 제고(종합만족도)의 4개 분야, 평가단 현장평가에는 바른 수거, 구민만족도 제고(종합만족도), 인력관리, 장비관리, 시설관리의 5개 분야, 실적서류 평가에는 민원처리, 인력·장비·안전 관리, 거버넌스 참여의 5개 분야로 평가했으며, 4개사 모두 '우수' 등급을 받았다(마포구 청소행정과, 2020)

IV. 서울지역 필수노동자(환경미화원) 노동실태 조사 결과

1. 조사목적과 의의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의 기능유지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필수노동자들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지역 보건·의료·돌봄, 교통·운수, 택배 분야 필수노동자 실태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조사는 서울시에서 진행한 필수노동자(보건·의료·돌봄 종사자, 교통·운수 종사자, 택배 종사자) 노동실태 조사와 같은 맥락에서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노동실태 조사를 시행한다. 본 조사를 통해 서울시 환경미화 분야 필수노동자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서울지역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및 작업환경 개선, 사회안전망제도 개편 등의 서울시 청소행정에 대한 노동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조사방법과 내용

1) 설문조사

본 조사는 서울시 민간위탁 소속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500명을 대상으로 노동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을 수행하는 환경미화원은 대부분 25개 자치구의 민간위탁기관 소속이다. 자치구별 공무원(직영) 환경미화원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 직무별 조사인원은 수집원(상차원) 250명, 운전원 250명이다. 또한, 성상별로는 거리청소를 제외한 생활쓰레기(종량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대형폐기물 작업 환경미화원이다.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대면 설문조사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서면 또는 전화조사를 병행하였다. 조사기간은 2021년 6월~8월에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환경미화원 업무범위 및 수행방식, 노동환경(작업환경, 휴게시설), 고용안정(고용형태·계약형식), 노동조건(임금·근로시간, 휴게시간), 코로나 상황, 애로사

항,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 대책 등 필수노동자로서 환경미화원의 노동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과 코로나19로 인한 업무강도 변화, 환경미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 서울시, 사업체에 대한 지원 요구에 관한 사항이다.

2) 대면면접조사

환경미화원 당사자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여, 환경미화원의 노동실태에 대한 정성분석을 실시하였다. 서울지역 4개(강남구, 구로구, 도봉구, 금천구) 자치구의 민간위탁 대행업체 7개사 소속 환경미화원과 구로자원순환센터 직원 총 1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사업주 의견(중구)을 대면·전화로 인터뷰하였으며, 강동구의 노사갈등이 있는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와 노동자(환경미화원)에 대한 인터뷰, 환경미화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서울일반노동조합 환경분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지역시설환경관리지부) 인터뷰도 진행하여 서울지역 환경미화원들의 노동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였다.

<표 4-1> 대면면접 조사지역과 직무별 인원

연번	조사(인터뷰)지역	민간위탁 업체 수	직무별 인원	면접조사/인터뷰
1	도봉구	1개사	운전원 2인, 수집원 2인	면접조사
2	금천구	3개사	운전원 2인, 수집원 2인	면접조사
3	강남구	1개사	운전원 3인, 수집원 2인	면접조사
4	구로구	3개사	운전원 2인, 수집원 2인 구로자원순환센터 1인	면접조사
5	강동구	1개사	운전원 1인, 수집원 1인	인터뷰

면접조사는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1대1, 1인당 30분 내외로 진행하였고, 조사기간은 2021년 7월~8월에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고용안정(고용형태·계약양식), 노동조건(근로시간, 임금), 업무수행방식 및 업무범위, 산재 위험, 코로나 상황에 대한 질문, 직장에서의 복리후생, 현장에 필요한 대책에 관한 사항이다.

3. 설문조사 결과

1) 응답현황

서울지역 민간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500명 조사의 응답지역은 서남권(40.6%), 동북권(27.0%), 동남권(22.4%)에 집중되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업체의 종사자 규모별 응답현황은 30인 미만이 30.8%, 30~99인이 69.2%이다. 성상별 응답현황은 생활쓰레기 종량제 45.2%, 음식물쓰레기 23.2%, 재활용쓰레기 28.0%, 대형폐기물 3.6%이고, 직무별로는 수집원(상차원) 50%, 운전원 50%이다.⁴⁵⁾

연령별 응답현황은 30대 이하 8.4%, 40대 22.6%, 50대 51.2%, 60대 이상 16.8%, 학력별 응답현황은 중학교 졸업 이하 10.8%, 고등학교 졸업 74.2%, 대학이상 15.0%로 중·고령자, 고졸 응답비율이 높았다.

<표 4-2>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 조사 응답률

		인원	%			인원	%
전체		500	100.0	직무	수집원(상차원)	250	50.0
권역	도심권	50	10.0		운전원	250	50.0
	동북권	135	27.0	연령	20대	8	1.6
	서남권	203	40.6		30대	34	6.8
	동남권	112	22.4		40대	113	22.6
	종사자 수	5~9명	7		1.4	50대	256
10~29명		147	29.4		60대 이상	84	16.8
30~99명		345	69.0	무응답	5	1.0	
300명 이상		1	0.2	최종 학력	무학	1	0.2
성상	종량제(생활)쓰레기	226	45.2		초등학교 졸업	10	2.0
	음식물쓰레기	116	23.2		중학교 졸업	43	8.6
	재활용쓰레기	140	28.0		고등학교 졸업	371	74.2
	대형폐기물	18	3.6		전문대 졸업	38	7.6
					대학교 졸업	35	7.0
			대학원 이상	2	0.4		

45) 직무는 조사설계에서 수집원(상차원) 50%, 운전원 50%로 조사를 진행했음. 실제 현장에서는 수집원이 운전원보다 많으나, 직무별 인원 통계부족 및 설문조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표본조사설계에서 직무별 비율적용은 하지 않았음

2) 일반사항

(1) 현재 직장 지역

본 조사에 응답한 서울지역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500명의 직장지역은 서남권 203명(40.6%), 동북권 135명(27.0%), 동남권 112명(22.4%), 도심권 50명(10.0%)이다. 서북권은 조사되지 않았다.⁴⁶⁾

<표 4-3> 현재 직장 지역(권역별) (단위: 명/%)

구분	시례수	도심권	동북권	서남권	동남권	
전체	(500)	10.0	27.0	40.6	22.4	
직무	수집원	(250)	9.2	25.6	42.8	22.4
	운전원	(250)	10.8	28.4	38.4	22.4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15.0	30.5	35.8	18.6
	음식물쓰레기	(116)	6.0	30.2	43.1	20.7
	재활용쓰레기	(140)	5.0	19.3	43.6	32.1
	대형폐기물	(18)	11.1	22.2	61.1	5.6

자치구별로 직장지역 비율을 살펴보면, 종로구 3.2%, 중구 4.4%, 용산구 2.4%, 성동구 4.2%, 광진구 3.6%, 성북구 7.4%, 도봉구 11.8%, 양천구 6.6%, 구로구 13.8%, 금천구 16.2%, 영등포구 4.0%, 송파구 14.2%, 강동구 8.2%로 도봉구, 구로구, 금천구, 송파구 지역이 많았다.⁴⁷⁾

(2) 직장(사업체) 규모

직장(사업체) 종사자 수는 5-9명(1.4%), 10-29명(29.4%), 30-99명(69.0%), 300명 이상(0.2%)로 나타났다. 대부분 30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며, 30인 미만도 약 30% 가까이 차지했다.

46) 서북권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지역은 조사협조 공문을 보내고, 조사업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조사를 시행하지 못했음.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 대상 조사는 코로나19로 대면조사가 어려운 상황뿐만 아니라 야간작업과 이동작업 등으로 현장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47)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중 12개 지역은 조사를 시행하지 못했음.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는 자치구에서 용역 계약을 하고, 사업장별로도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여건이 다름. 대표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표 사업장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에서 비례배분 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본 조사에서는 시행하지 못했음

<표 4-4> 직장(사업체)의 종사자 비율 (단위: 명/%)

구분	사례수	5-9명	10-29명	30-99명	300명 이상	
전체	(500)	1.4	29.4	69.0	0.2	
직무	수집원	(250)	1.2	29.2	69.6	0.0
	운전원	(250)	1.6	29.6	68.4	0.4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2.2	31.0	66.8	0.0
	음식물쓰레기	(116)	1.7	36.2	62.1	0.0
	재활용쓰레기	(140)	0.0	20.0	79.3	0.7
	대형폐기물	(18)	0.0	38.9	61.1	0.0

(3) 업무 경력

환경미화원의 업무 경력은 평균 6년 6개월(79.4개월)이며, 운전원은 평균 7년 5개월(90.2개월), 수집원은 평균 5년 7개월(68.8개월)의 환경미화 업무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의 현재 직장 경력은 평균 5년 3개월이며, 운전원이 수집원보다 현재 직장 경력이 약 1년 정도 더 많았다.

<표 4-5> 업무 경력 (단위: 명/개월)

구분	사례수	환경미화 총 업무 경력	현재 직장 경력
전체	(493)	79.4	64.1
직무	수집원	(247)	68.8
	운전원	(246)	90.2
성상	종량제쓰레기	(223)	85.9
	음식물쓰레기	(115)	89.8
	재활용쓰레기	(137)	62.2
	대형폐기물	(18)	64.7

3) 업무범위 및 수행방식

(1) 직무 및 작업 쓰레기 종류

환경미화원 직무별로 작업하는 주된 쓰레기 업무를 살펴보면, 수집원(상차원)의 경우 23%가 종량제쓰레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재활용쓰레기는 14%, 음식물쓰레기는

12%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운전원의 경우에도 종량제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순으로 업무를 많이 수행하고 있었고, 대형폐기물은 3% 이내이다.

<표 4-6> 직무별·쓰레기 종류별 인원 (단위: 명/%)

구분		성상별				계
		종량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대형폐기물	
직 무	수집원	115 (23.0%)	60 (12.0%)	70 (14.0%)	5 (1.0%)	250 (50.0%)
	운전원	111 (22.2%)	56 (11.2%)	70 (14.0%)	13 (2.6%)	250 (50.0%)
계		226 (45.2%)	116 (23.2%)	140 (28.0%)	18 (3.6%)	500 (100.0%)

(2) 수집원(상차원) 작업수행 거리

환경미화원 수집원(상차원)의 업무 수행 시 도보량은 2만보~3만보가 42.8%로 가장 많았고, 3만보 이상도 19.6%를 차지했다. 1만보 이하는 4.8%로 나타났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원은 3만보 이상이 21.7%로 종량제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업무 환경미화원보다 도보 수가 많았다.

<표 4-7> 상차원 업무수행 시, 하루 평균 걸음 수 (단위: 보/%)

구분	사례수	10,000보 이하	10,000 ~ 15,000보	15,000 ~ 20,000보	20,000 ~ 30,000보	30,000보 이상	
전체	(250)	4.8	13.2	19.6	42.8	19.6	
성 상	종량제쓰레기	(115)	5.2	11.3	20.9	41.7	20.9
	음식물쓰레기	(60)	1.7	15.0	15.0	46.7	21.7
	재활용쓰레기	(70)	4.3	14.3	20.0	44.3	17.1
	대형폐기물	(5)	40.0	20.0	40.0	0.0	0.0

(3) 3인 1조(상차원_수집원 2명, 운전원 1명) 작업수행 여부

환경미화원 3인 1조 작업(청소차량 1대 기준 3명 근무)은 40.8%만 지켜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수칙을 위반하고 있는 업체가 절반 이상이라는 것이다. 3인 1조가 지켜지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은 대부분 2인 1조(70.1%)로 작업을 수

행하고 있고, 1인1조도 28.9%를 차지했다. 종량제쓰레기 작업 환경미화원은 60.6%가 3인 1조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3인 1조 작업수행 여부 (단위: 명/%)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100.0%)				
			1인1조	2인 1조	4인 1조		
전체	(497)	40.8	59.2	(28.9%)	(70.1%)	(1.0%)	
직무	수집원	(247)	42.5	57.5	(22.5%)	(75.4%)	(2.1%)
	운전원	(250)	39.2	60.8	(34.9%)	(65.1%)	(0.0%)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39.4	60.6	(29.2%)	(70.8%)	(0.0%)
	음식물쓰레기	(116)	45.7	54.3	(27.0%)	(68.3%)	(4.8%)
	재활용쓰레기	(137)	44.5	55.5	(31.6%)	(68.4%)	(0.0%)
	대형폐기물	(18)	0.0	100.0	(22.2%)	(77.8%)	(0.0%)

(4) 담당업무 구역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의 담당업무 구역은 아파트 단지 지역이 81.0%로 가장 많았고, 단독, 빌라 밀집지역 21.4%, 회사 사무실 등 오피스 지역은 13.4%를 차지했다. 특히, 재활용쓰레기는 아파트 단지 지역이 92.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표 4-9> 담당업무 구역(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사례수	아파트 단지 지역	단독, 빌라 밀집 지역	회사 사무실 등 오피스 지역	
전체	(500)	81.0	21.4	13.4	
직무	수집원	(250)	86.8	19.6	11.2
	운전원	(250)	75.2	23.2	15.6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76.5	23.0	15.5
	음식물쓰레기	(116)	77.6	31.0	8.6
	재활용쓰레기	(140)	92.9	7.9	11.4
	대형폐기물	(18)	66.7	44.4	33.3

(5) 작업현장 업무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의 작업현장 업무는 수집원의 경우 쓰레기 적하 작업 (97.6%), 골목길 쓰레기 수거(87.6%), 정해진 경로에서 가연, 불연 쓰레기 수거(48.0%),

쓰레기 내기가 어려운 주변 문전 수거(46.4%) 등 쓰레기 상차 및 적하 작업과 수거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운전원의 경우에는 청소차운전(100.0%)과 골목쓰레기 수거(51.6%) 및 쓰레기 적하작업(23.6%)으로 청소차운전 뿐만 아니라 수거 및 적하 업무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량제쓰레기 작업에서는 무단투기 폐기물 수거가 15.5%를 차지했고, 재활용쓰레기 작업에서는 재활용품 적재함 선별 분류 작업이 25.7%를 차지했다.

<표 4-10> 작업현장 업무(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사례 수	골목길 쓰레기 수거	쓰레기 적하 작업	청소차 운전	정해진 경로에서 가연, 불연 쓰레기 수거	쓰레기 내기가 어려운 주변 문전 수거	재활용품, 적재함 선별 분류 작업	무단투기 폐기물 수거	대형 폐기물 수거	
전체	(500)	69.6	60.6	55.4	34.4	29.0	11.0	10.4	7.0	
직무	수집원	(250)	87.6	97.6	10.8	48.0	14.0	12.4	4.8	
	운전원	(250)	51.6	23.6	100.0	20.8	11.6	8.4	9.2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74.8	62.8	55.8	48.2	34.5	6.6	15.5	4.9
	음식물쓰레기	(116)	71.6	60.3	52.6	24.1	25.0	3.4	6.0	0.9
	재활용쓰레기	(140)	67.9	61.4	55.0	25.0	25.7	25.7	7.1	4.3
	대형폐기물	(18)	5.6	27.8	72.2	0.0	11.1	0.0	0.0	94.4

(6) 적화장(또는 자원순환시설) 마감 시간

적화장 또는 자원순환시설 마감 시간 때문에 업무를 무리하게 서두른 적이 있다가 45.6%, 그렇지 않다가 52.4%로 나타났다. 항상 업무를 무리하게 서두른다는 25.6%, 전혀 그렇지 않다는 20.0%로 응답비율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4-11> 적화장(또는 자원순환센터) 마감 시간 (단위: 명/%)

구분	사례수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500)	25.6	22.0	32.4	20.0	
직무	수집원	(250)	28.4	21.2	34.0	16.4
	운전원	(250)	22.8	22.8	30.8	23.6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27.9	19.9	31.9	20.4
	음식물쓰레기	(116)	31.0	20.7	31.0	17.2
	재활용쓰레기	(140)	19.3	26.4	33.6	20.7
	대형폐기물	(18)	11.1	22.2	38.9	27.8

4) 노동환경(작업환경, 휴게시설)

(1) 안전 보호 장구

대부분의 환경미화원이 현재 지급 받고 있는 안전 보호 장구는 안전화(98.2%), 작업복(97.6%), 안전모(95.8%), 반코팅 장갑(95.6%), 마스크(미세먼지, 방진)(90.4%)이다. 이 외에 형광안전 조끼, 형광티(88.2%), (형광)작업우의(79.6%)는 대부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방한용품(의복, 장갑, 장화)(54.6%), 보호안경(30.8%), 미끄럼 방지 장화(30.4%), 의료 위생의약품(29.0%), 절단보호 장갑(27.0%), 무릎보호대, 허리 손목보호대(9.0%)는 많은 인원이 지급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a> 지급받고 있는 안전 보호 장구(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사례수	안전화	작업복	안전모	반코팅 장갑	마스크 (미세먼지, 방진)	형광안전 조끼, 형광티	(형광)작업 우의
전체	(500)	98.2	97.6	95.8	95.6	90.4	88.2	79.6
직무								
수집원	(250)	98.4	98.4	96.8	94.8	89.2	89.2	80.8
운전원	(250)	98.0	96.8	94.8	96.4	91.6	87.2	78.4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97.3	98.7	95.6	96.0	88.5	87.2	77.0
음식물쓰레기	(116)	99.1	98.3	96.6	96.6	93.1	90.5	80.2
재활용쓰레기	(140)	98.6	95.7	95.7	95.0	90.7	87.9	83.6
대형폐기물	(18)	100.0	94.4	94.4	88.9	94.4	88.9	77.8

<표 4-12-b> 지급받고 있는 안전 보호 장구(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방한용품 (의복, 장갑, 장화)	보호안경	미끄럼방지 장화	의료 위생의약품	절단보호 장갑	무릎보호대, 허리 손목보호대
전체	(500)	54.6	30.8	30.4	29.0	27.0	9.0
직무							
수집원	(250)	52.4	33.6	32.0	26.4	30.0	8.8
운전원	(250)	56.8	28.0	28.8	31.6	24.0	9.2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55.8	30.1	30.5	28.8	27.4	10.6
음식물쓰레기	(116)	58.6	33.6	35.3	30.2	30.2	6.9
재활용쓰레기	(140)	48.6	29.3	25.7	25.7	23.6	5.7
대형폐기물	(18)	61.1	33.3	33.3	50.0	27.8	27.8

환경미화원의 안전 보호 장구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 대행비(도급비)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품목’에 대한 서울시 25개 자치구 청소행정과 정보공개청구(21.10.28)로 재확인했다. 그 결과 18개 자치구 청소행정과에서는 대행업체에서 방한모, 방한화, 방한장갑, 절단보호 장갑, 수건, 보안경, 의료위생약품비를 지급하고 있고, 7개 자치구는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용역비에 경비(복리후생비_피복비)항목으로 책정되어 있어 상세한 내역을 알 수 없지만, 대행업체에서 작업자에게 작업복, 방한용품, 마스크, 안전조끼 등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였다.

<표 4-13> 서울시 자치구별 환경미화원 안전 보호장구 지급 물품 (직영 환경공무직/민간위탁 대행업체)

연번	자치구	방한용품		보호안경		미끄럼방지장화		의료위생약품		절단보호장갑		무릎,허리,손목 보호대		공개여부	
		직	민	직	민	직	민	직	민	직	민	직	민	직	민
1	강동구	●		●		●		●		●		●		공개	비공개
2	강북구	●	○			●	○			●	○	●		공개	공개
3	강서구	●				●								공개	비공개
4	관악구	●	○		○	●	○	●	○	●	○	●		공개	공개
5	광진구		○				○				○			비공개	공개
6	구로구	●	○			●	○			●	○			공개	공개
7	금천구	●	○		○	●	○		○	●	○	●		공개	공개
8	노원구	●				●	○	●		●	○			공개	공개
9	도봉구	●	○	●		●	○	●		●	○	●		공개	공개
10	동대문구	●				●		●		●				공개	비공개
11	동작구	●		●		●		●		●				공개	비공개
12	마포구	●				●		●		●		●		공개	비공개
13	서대문구	●	○	●	○	●	○	●	○		○	●		공개	공개
14	서초구	●	○	●	○	●		●	○	●	○			공개	공개
15	성동구	●	○			●	○	●		●	○			공개	공개
16	성북구	●				●		●		●				공개	비공개
17	송파구	●	○	●	○	●	○	●		●	○	●		공개	공개
18	양천구	●	○		○	●	○			●	○	●		공개	공개
19	영등포구	●	○			●	○		○	●		●		공개	공개
20	용산구	●	○			●	○	●	○			●		공개	공개
21	은평구	●	○			●				●		●		공개	공개
22	종로구		○				○				○		○	비공개	공개
23	중구	●				●				●		●		공개	비공개

각주: 직·직영 환경공무직, 민·민간위탁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강남구와 중랑구는 직영/민간 모두 비공개로 답변을 받았으며, 위 안전 보호 장구 지급 물품이 기타 사항 내역으로 분류되어 누락이 있을 수 있음

자료: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청소행정과 생활폐기물 민간 대행업체 개인 안전장비 지급 물품 항목 정보공개 자료(2021.10.28)

종로구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는 방한용품으로 의복, 장갑, 장화, 마스크, 목보호대, 귀마개와 자외선 차단제, 안전토시까지 지급하고 있고, 서초구도 절단방지장갑, 보호안경, 구급용품 등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안전 보호 장구는 생활폐기물 대행비(도급비)에 반영되어 있고, 각 자치구에서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환경미화원 당사자에게는 방한용품, 보호안경, 미끄럼방지장화, 의료위생의약품, 절단보호 장갑 등은 50% 이상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자치구는 생활폐기물 대행업체가 안전 보호 장구를 환경미화원들에게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고, 대행업체는 환경미화원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보호 장구를 한 명도 빠짐 없이 지급해야 할 것이다.

자치구 청소행정과에서는 민간위탁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안전 보호 장구 지급은 대행업체의 용역비에 산입되어,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역을 알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다. 도봉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는 직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안전 보호 장구들을 민간위탁 환경미화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2) 안전수칙

환경미화원의 95%는 안전근무복, 반사판이 부착된 안전조끼를 착용하고 있으며, 수집원의 경우에는 미끄럼방지 신발, 손 보호 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82.4%)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안전수칙(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사례수	안전근무복, 반사판이 부착된 안전조끼 착용	미끄럼방지 신발, 손 보호 장갑 등의 개인보호구 착용	작업환경 및 조건에 맞는 보호구 착용	차량에 매달려 이동하지 않음	아간작업 시 등 헤드램프, 간이용 조명기구 사용	중량물 취급시 이동대차 등을 활용	
전체	(500)	95.0	73.8	52.6	39.4	17.2	8.2	
직무	수집원	(250)	96.8	82.4	54.4	42.8	18.0	9.6
	운전원	(250)	93.2	65.2	50.8	36.0	16.4	6.8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94.7	76.5	49.1	35.0	19.5	10.2
	음식물쓰레기	(116)	95.7	72.4	55.2	44.0	15.5	6.0
	재활용쓰레기	(140)	96.4	72.1	54.3	41.4	17.1	7.1
	대형폐기물	(18)	83.3	61.1	66.7	50.0	0.0	5.6

하지만 환경미화원의 절반 가까이는 작업환경 및 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착용 (52.6%)하고 있지 않았다. 차량에 매달려 이동하는 경우도 60% 정도로 나타났고, 야간 작업시 헤드램프 등 간이용 조명기구 사용 수준도 17.2%로 매우 낮았다. 종량제쓰레기 작업의 경우 중량물 취급 시 이동대차 등을 활용하는 비율도 10.2%로 저조하다.

(3) 청소차량 안전장치

청소차량 안전장치 중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비상시 적재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결과에서 약 30% 정도는 비상시 적재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갖추어지지 않았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 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므로, 자치구의 감시·감독이 필요하고, 청소차량 안전기준 위반 시 처벌조항도 만들어져야 한다.⁴⁸⁾ 또한,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전방영상장치는 66.5%, 좌우측방영상장치는 49.4%만 설치되어 있다.

<표 4-15> 청소차량 안전장치(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사례수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비상시 적재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비상시 적재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양손 조작 방식의 안전스위치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전방영상장치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좌우측방 영상장치	없음	
전체	(496)	98.0	70.4	66.9	66.5	49.4	0.4	
직무	수집원	(246)	98.0	74.0	67.9	69.9	52.8	0.0
	운전원	(250)	98.0	66.8	66.0	63.2	46.0	0.8
성상	종량제쓰레기	(223)	96.9	74.0	70.4	65.0	44.8	0.4
	음식물쓰레기	(116)	99.1	68.1	71.6	56.9	42.2	0.0
	재활용쓰레기	(139)	98.6	69.1	60.4	75.5	61.2	0.7
	대형폐기물	(18)	100.0	50.0	44.4	77.8	61.1	0.0

(4) 작업 중지 명령

작업 중지 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45.5%가 작업 중지 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으며, 폭설, 폭우로 인한 작업 중지 명령을 받은 상황은 35.3%, 태풍, 강

48) 본문 55page 제16조의 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참고

풍으로 작업 중지 명령을 받은 상황은 11.4%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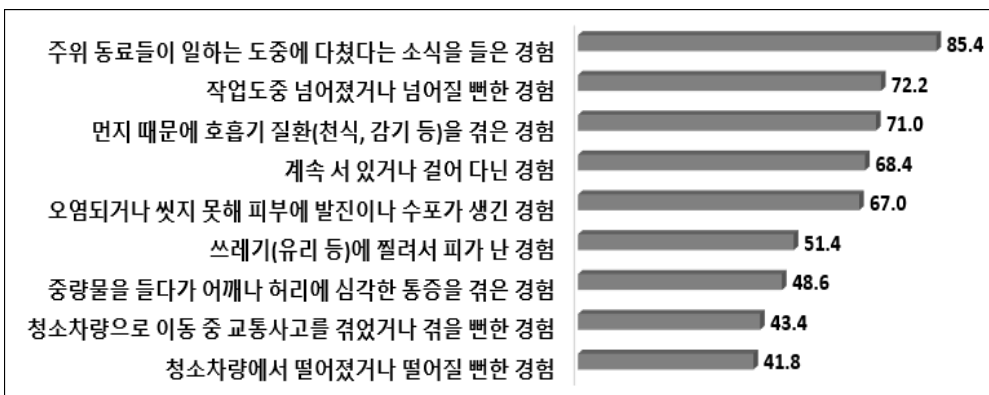
<표 4-16> 작업 중지 명령을 받은 경험(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사례수	작업 중지 받은 적 없음	폭설, 폭우	태풍, 강풍	폭염, 강추위	미세먼지 (매우 나쁨)	
전체	(500)	45.5	35.3	11.4	6.4	1.3	
직무	수집원	(250)	43.9	34.6	11.5	8.0	1.9
	운전원	(250)	47.3	36.1	11.2	4.8	0.7
성상	중량제쓰레기	(226)	40.1	38.4	12.3	8.1	1.1
	음식물쓰레기	(116)	42.7	36.4	9.8	8.4	2.8
	재활용쓰레기	(140)	56.7	30.6	10.2	1.9	0.6
	대형폐기물	(18)	54.5	22.7	18.2	4.5	0.0

(5) 업무 중 경험

환경미화원이 업무 중에 발생한 경험을 살펴보면, 주위 동료들이 일하는 도중에 다쳤다는 소식을 들은 경험이 85.4%, 작업도중 넘어졌거나 넘어질 뻔한 경험이 72.2%, 먼지 때문에 호흡기 질환(천식, 감기 등)을 겪은 경험이 71.0%, 계속 서 있거나 걸어 다닌 경험이 68.4%, 오염되거나 씻지 못해 피부에 발진이나 수포가 생긴 경험이 67.0%, 쓰레기(유리 등)에 찰려서 피가 난 경험이 51.4%, 중량물을 들다가 어깨나 허리가 삐끗해 심각한 통증을 겪은 경험이 48.6%, 청소차량으로 이동 중 교통사고를 겪었거나 겪을 뻔한 경험이 43.4%, 청소차량에서 떨어졌거나 떨어질 뻔한 경험이 41.8%로 나타났다.

[그림 4-1] 업무 중 경험 있음(%)



주위 동료들이 일하는 도중에 다쳤다는 소식을 들은 경험은 85.4%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약 70%는 작업도중 넘어졌거나 넘어질 뻔한 경험했으며, 6.2%는 주1회 정도 경험한다고 하였고, 먼지 때문에 호흡기 질환(천식, 감기 등)을 겪은 경험은 약 10%가 주1회 정도 경험했다. 계속 서 있거나 걸어 다닌 경험은 42.6%가 거의 매일 경험했으며, 오염되거나 씻지 못해 피부에 발진이나 수포가 생긴 경험도 거의 매일 또는 주1회 정도 6%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쓰레기(유리 등)에 찰려서 피가 난 경험은 23%가 월 1회 정도 경험했으며, 중량물을 들다가 어깨나 허리가 삐끗해 심각한 통증을 겪은 경험은 수집원(상차원)의 80% 이상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차량으로 이동 중 교통사고를 겪었거나 겪을 뻔한 경험은 약 50% 정도가 경험했으며, 이 중 20%는 연1회 정도 경험했다. 수집원(상차원)은 청소차량에서 떨어졌거나 떨어질 뻔한 경험을 18.4%가 연1회 정도 경험했으며, 5%는 거의 매일 경험했다고 조사됐다.

이에 대해서는 FGI 조사를 진행하여 사고시 산재처리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조사했다.49) 산업재해 발생 후의 처리방식은 업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산재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사업장, 산업재해가 발생한 환경미화원에게 산재처리 하지 않고, 위로금 형식으로 공상처리 하는 사례도 있었다.

<표 4-17> 주위 동료들이 일하는 도중에 다쳤다는 소식을 들은 경험 (단위: 명/%)

구분	사례수	거의 매일	주1회 정도	월1회 정도	6개월 1회 정도	연1회 정도	경험 없음	
전체	(500)	5.4	4.8	19.2	27.6	28.4	14.6	
직무	수집원	(250)	5.6	3.6	22.0	26.0	30.0	12.8
	운전원	(250)	5.2	6.0	16.4	29.2	26.8	16.4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5.3	3.5	19.9	27.9	29.2	14.2
	음식물쓰레기	(116)	5.2	2.6	13.8	31.0	33.6	13.8
	재활용쓰레기	(140)	5.0	8.6	22.9	26.4	22.9	14.3
	대형폐기물	(18)	11.1	5.6	16.7	11.1	27.8	27.8

49) 본문 55page 제16조의 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참고

<표 4-18> 작업도중 넘어졌거나 넘어질 뻔한 경험 (단위: 명/%)

구분	사례수	거의 매일	주1회 정도	월1회 정도	6개월 1회 정도	연1회 정도	경험 없음	
전체	(500)	5.6	6.2	17.6	20.0	19.0	31.6	
직무	수집원	(250)	7.6	8.0	21.2	22.0	20.0	21.2
	운전원	(250)	3.6	4.4	14.0	18.0	18.0	42.0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5.3	6.2	19.9	14.6	19.5	34.5
	음식물쓰레기	(116)	6.0	3.4	13.8	22.4	24.1	30.2
	재활용쓰레기	(140)	5.0	9.3	17.1	27.1	15.0	26.4
	대형폐기물	(18)	11.1	0.0	16.7	16.7	11.1	44.4

<표 4-19> 먼지 때문에 호흡기 질환(천식, 감기 등)을 겪은 경험 (단위: 명/%)

구분	사례수	거의 매일	주1회 정도	월1회 정도	6개월 1회 정도	연1회 정도	경험 없음	
전체	(500)	8.0	9.8	6.6	9.0	15.2	51.4	
직무	수집원	(250)	9.2	13.2	6.8	9.2	15.2	46.4
	운전원	(250)	6.8	6.4	6.4	8.8	15.2	56.4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10.2	9.7	5.3	8.8	14.6	51.3
	음식물쓰레기	(116)	6.0	9.5	6.0	9.5	12.9	56.0
	재활용쓰레기	(140)	6.4	11.4	8.6	9.3	18.6	45.7
	대형폐기물	(18)	5.6	0.0	11.1	5.6	11.1	66.7

<표 4-20> 계속 서 있거나 걸어 다닌 경험 (단위: 명/%)

구분	사례수	거의 매일	주1회 정도	월1회 정도	6개월 1회 정도	연1회 정도	경험 없음	
전체	(500)	42.6	5.6	4.2	5.8	8.8	33.0	
직무	수집원	(250)	66.4	5.6	4.0	4.8	5.2	14.0
	운전원	(250)	18.8	5.6	4.4	6.8	12.4	52.0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44.7	5.8	4.4	4.9	6.2	34.1
	음식물쓰레기	(116)	37.1	6.0	5.2	6.0	9.5	36.2
	재활용쓰레기	(140)	47.9	5.7	2.9	7.1	12.9	23.6
	대형폐기물	(18)	11.1	0.0	5.6	5.6	5.6	72.2

<표 4-21> 오염되거나 씻지 못해 피부에 발진이나 수포가 생긴 경험 (단위: 명/%)

구분	사례수	거의 매일	주1회 정도	월1회 정도	6개월 1회 정도	연1회 정도	경험 없음	
전체	(500)	5.8	6.6	6.8	9.2	15.0	56.6	
직무	수집원	(250)	6.8	7.6	10.0	12.0	15.2	48.4
	운전원	(250)	4.8	5.6	3.6	6.4	14.8	64.8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5.3	7.5	6.6	9.7	13.3	57.5
	음식물쓰레기	(116)	7.8	1.7	10.3	9.5	12.9	57.8
	재활용쓰레기	(140)	4.3	9.3	4.3	9.3	20.7	52.1
	대형폐기물	(18)	11.1	5.6	5.6	0.0	5.6	72.2

<표 4-22> 쓰레기(유리 등)에 찰려서 피가 난 경험 (단위: 명/%)

구분	사례수	거의 매일	주1회 정도	월1회 정도	6개월 1회 정도	연1회 정도	경험 없음	
전체	(500)	4.6	9.2	23.0	17.6	17.8	27.8	
직무	수집원	(250)	5.6	11.2	29.2	22.4	16.4	15.2
	운전원	(250)	3.6	7.2	16.8	12.8	19.2	40.4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5.3	10.6	26.5	19.0	16.4	22.1
	음식물쓰레기	(116)	3.4	4.3	14.7	17.2	17.2	43.1
	재활용쓰레기	(140)	3.6	10.0	23.6	17.1	22.1	23.6
	대형폐기물	(18)	11.1	16.7	27.8	5.6	5.6	33.3

<표 4-23> 종량물을 들다가 어깨나 허리가 삐끗해 심각한 통증을 겪은 경험 (단위: 명/%)

구분	사례수	거의 매일	주1회 정도	월1회 정도	6개월 1회 정도	연1회 정도	경험 없음	
전체	(500)	7.4	10.6	16.6	19.2	17.2	29.0	
직무	수집원	(250)	10.0	12.4	22.4	18.4	17.2	19.6
	운전원	(250)	4.8	8.8	10.8	20.0	17.2	38.4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6.2	14.2	15.9	18.1	16.8	28.8
	음식물쓰레기	(116)	9.5	8.6	13.8	22.4	13.8	31.9
	재활용쓰레기	(140)	5.7	7.1	20.0	18.6	22.1	26.4
	대형폐기물	(18)	22.2	5.6	16.7	16.7	5.6	33.3

<표 4-24> 청소차량으로 이동 중 교통사고를 겪었거나 겪을 뻔한 경험 (단위: 명/%)

구분	사례수	거의 매일	주1회 정도	월1회 정도	6개월 1회 정도	연1회 정도	경험 없음	
전체	(500)	5.0	2.8	8.6	14.6	20.4	48.6	
직무	수집원	(250)	6.8	4.4	6.0	16.8	18.4	47.6
	운전원	(250)	3.2	1.2	11.2	12.4	22.4	49.6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5.8	4.4	8.0	11.5	20.4	50.0
	음식물쓰레기	(116)	3.4	1.7	7.8	19.8	19.8	47.4
	재활용쓰레기	(140)	4.3	1.4	10.0	13.6	21.4	49.3
	대형폐기물	(18)	11.1	0.0	11.1	27.8	16.7	33.3

<표 4-25> 청소차량에서 떨어졌거나 떨어질 뻔한 경험 (단위: 명/%)

구분	사례수	거의 매일	주1회 정도	월1회 정도	6개월 1회 정도	연1회 정도	경험 없음	
전체	(500)	4.2	4.0	7.8	9.2	16.6	58.2	
직무	수집원	(250)	5.6	4.4	11.2	12.0	18.4	48.4
	운전원	(250)	2.8	3.6	4.4	6.4	14.8	68.0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4.4	4.0	11.1	6.6	12.8	61.1
	음식물쓰레기	(116)	3.4	3.4	0.9	10.3	23.3	58.6
	재활용쓰레기	(140)	4.3	5.0	8.6	12.9	17.9	51.4
	대형폐기물	(18)	5.6	0.0	5.6	5.6	11.1	72.2

(6) 휴게실 유무 및 시설 상태

적환장(또는 자원순환시설)의 휴식공간은 약 80%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적환장(또는 자원순환시설) 휴식공간은 50%정도가 부족하고, 42% 정도가 불청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작업구역 내 휴식공간은 약 42%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업구역 내 휴식공간이 있더라도 약 30%는 부족하고, 20%는 불청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구역 내 세면·샤워실은 약 40%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쓰레기 작업의 경우 약 49%가 세면·샤워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구역 내 세탁공간(세탁기)은 43%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탈의공간도 40%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구역 내 세탁공간(세탁기)과 탈의공간을 갖추고 있더라도 약 29%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매년 휴게실 개선사업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021년에는 증액(기존 2억원)하여 5억원의 예산으로 환경미화원들에게 충분하고 실질적인 휴식, 탈의 및 샤워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구 환경미화원 휴게실 473개소의 시설 개선이나, 노후 컨테이너 교체 등을 하기 위해서는 1백만원(5억/473개소) 정도의 예산으로는 부족하다⁵⁰⁾. 열악한 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하지만, 매년 수리비나 물품 구매비 정도만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표 4-26> 적환장 휴식공간 유무 및 시설 상태 (단위: 명/%)

구분	사례수	없음	있음(100.0%)	있음(100.0%)				
				충분한 정도		청결 상태		
				충분	부족	청결	불청결	
전체	(500)	20.6	79.4	(50.6)	(49.4)	(57.7)	(42.3)	
직무	수집원	(250)	21.2	78.8	(46.2)	(53.8)	(52.8)	(47.2)
	운전원	(250)	20.0	80.0	(55.0)	(45.0)	(62.5)	(37.5)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16.8	83.2	(51.1)	(48.9)	(60.6)	(39.4)
	음식물쓰레기	(116)	21.6	78.4	(49.5)	(50.5)	(57.1)	(42.9)
	재활용쓰레기	(140)	25.7	74.3	(47.1)	(52.9)	(50.0)	(50.0)
	대형폐기물	(18)	22.2	77.8	(78.6)	(21.4)	(78.6)	(21.4)

<표 4-27> 작업구역 내 휴식공간 유무 및 시설 상태 (단위: 명/%)

구분	사례수	없음	있음(100.0%)	있음(100.0%)				
				충분한 정도		청결 상태		
				충분	부족	청결	불청결	
전체	(500)	42.2	57.8	(69.9)	(30.1)	(77.9)	(22.1)	
직무	수집원	(250)	41.2	58.8	(68.7)	(31.3)	(77.6)	(22.4)
	운전원	(250)	43.2	56.8	(71.1)	(28.9)	(78.2)	(21.8)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41.2	58.8	(71.4)	(28.6)	(75.9)	(24.1)
	음식물쓰레기	(116)	35.3	64.7	(72.0)	(28.0)	(77.3)	(22.7)
	재활용쓰레기	(140)	52.1	47.9	(65.7)	(34.3)	(82.1)	(17.9)
	대형폐기물	(18)	22.2	77.8	(64.3)	(35.7)	(78.6)	(21.4)

50) https://yesan.seoul.go.kr/wk/wkSelect.do?itemId=102879&tr_code=sweb

<표 4-28> 작업구역 내 세면·샤워실 유무 및 시설 상태 (단위: 명/%)

구분	사려수	없음	있음(100.0%)					
			충분한 정도		청결 상태			
			충분	부족	청결	불청결		
전체	(500)	39.0	61.0	(66.6)	(33.4)	(78.4)	(21.6)	
직무	수집원	(250)	36.8	63.2	(62.0)	(38.0)	(76.6)	(23.4)
	운전원	(250)	41.2	58.8	(71.4)	(28.6)	(80.3)	(19.7)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38.1	61.9	(70.0)	(30.0)	(77.1)	(22.9)
	음식물쓰레기	(116)	31.0	69.0	(63.8)	(36.3)	(75.0)	(25.0)
	재활용쓰레기	(140)	48.6	51.4	(61.1)	(38.9)	(83.3)	(16.7)
	대형폐기물	(18)	27.8	72.2	(76.9)	(23.1)	(84.6)	(15.4)

<표 4-29> 작업구역 내 세탁공간(세탁기) 유무 및 시설 상태 (단위: 명/%)

구분	사려수	없음	있음(100.0%)					
			충분한 정도		청결 상태			
			충분	부족	청결	불청결		
전체	(500)	43.0	57.0	(71.2)	(28.8)	(80.4)	(19.6)	
직무	수집원	(250)	40.8	59.2	(68.2)	(31.8)	(79.7)	(20.3)
	운전원	(250)	45.2	54.8	(74.5)	(25.5)	(81.0)	(19.0)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43.4	56.6	(74.2)	(25.8)	(79.7)	(20.3)
	음식물쓰레기	(116)	34.5	65.5	(69.7)	(30.3)	(77.6)	(22.4)
	재활용쓰레기	(140)	51.4	48.6	(66.2)	(33.8)	(83.8)	(16.2)
	대형폐기물	(18)	27.8	72.2	(76.9)	(23.1)	(84.6)	(15.4)

<표 4-30> 작업구역 내 탈의 공간 유무 및 시설 상태 (단위: 명/%)

구분	사려수	없음	있음(100.0%)					
			충분한 정도		청결 상태			
			충분	부족	청결	불청결		
전체	(500)	40.0	60.0	(71.3)	(28.7)	(76.7)	(23.3)	
직무	수집원	(250)	40.0	60.0	(68.0)	(32.0)	(74.0)	(26.0)
	운전원	(250)	40.0	60.0	(74.7)	(25.3)	(79.3)	(20.7)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37.6	62.4	(73.8)	(26.2)	(76.6)	(23.4)
	음식물쓰레기	(116)	36.2	63.8	(71.6)	(28.4)	(74.3)	(25.7)
	재활용쓰레기	(140)	48.6	51.4	(66.7)	(33.3)	(77.8)	(22.2)
	대형폐기물	(18)	27.8	72.2	(69.2)	(30.8)	(84.6)	(15.4)

5) 고용안정(고용형태, 계약형식)

(1) 근로계약 체결 유무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은 99%가 회사(사업장)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 고용형태

환경미화원의 현재 일자리(직장)에서의 고용형태는 정규직 근로자 39.6%, 비정규직 근로자 60.4%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비정규직 형태는 계약직 91.4%, 촉탁직 7.0%, 일용직 1.3%, 임시직 0.3%로 대부분 계약직이다. 또한, 직무별로는 운전원보다 수집원(상차원)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약 5% 가까이 높다.

<표 4-31> 고용형태 (단위: 명/%)

구분	사려수	정규직	비정규직(100.0%)					
			계약직	촉탁직	일용직	임시직		
전체	(500)	39.6	60.4	(91.4)	(7.0)	(1.3)	(0.3)	
직무	수집원	(250)	37.2	62.8	(89.8)	(7.6)	(1.9)	(0.6)
	운전원	(250)	42.0	58.0	(93.1)	(6.2)	(0.7)	(0.0)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39.4	60.6	(93.4)	(4.4)	(1.5)	(0.7)
	음식물쓰레기	(116)	37.1	62.9	(90.4)	(8.2)	(1.4)	(0.0)
	재활용쓰레기	(140)	45.7	54.3	(86.8)	(11.8)	(1.3)	(0.0)
	대형폐기물	(18)	11.1	88.9	(100.0)	(0.0)	(0.0)	(0.0)

(3) 비정규직 근로계약기간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2년 미만인 63.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6개월-1년 미만 18.9%, 3년 이상 9.9%, 2년-3년 미만 6.6%, 6개월 미만 1.0% 순으로 나타났다. 1년 미만 단기계약도 약 20% 정도 있었는데, 운전원이 수집원(상차원)보다 1년 미만 단기계약 비율이 높았다.

<표 4-32> 비정규직 근로계약기간 (단위: 명/%)

구분	사례수	6개월 미만	6개월 -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3년 미만	3년 이상	
전체	(302)	1.0	18.9	63.6	6.6	9.9	
직무	수집원	(157)	1.3	16.6	70.1	4.5	7.6
	운전원	(145)	0.7	21.4	56.6	9.0	12.4
성상	종량제쓰레기	(137)	0.7	19.0	59.9	6.6	13.9
	음식물쓰레기	(73)	2.7	16.4	64.4	6.8	9.6
	재활용쓰레기	(76)	0.0	19.7	73.7	5.3	1.3
	대형폐기물	(16)	0.0	25.0	43.8	12.5	18.8

(4) 비정규직 근로계약 반복갱신

비정규직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횟수는 1회가 24.8%로 가장 많았고, 5회 이상도 17.2%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 없음도 18.2%이다. 성상별로 종량제, 음식물, 재활용, 대형폐기물 작업 순으로 비정규직 근로계약 갱신한 적 없음을 비율이 높았다.

<표 4-33> 비정규직 근로계약 갱신한 횟수 (단위: 명/%)

구분	사례수	갱신한 적 없음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전체	(302)	18.2	24.8	17.2	12.6	9.9	17.2	
직무	수집원	(157)	19.1	29.9	12.7	12.1	10.8	15.3
	운전원	(145)	17.2	19.3	22.1	13.1	9.0	19.3
성상	종량제쓰레기	(137)	13.1	23.4	16.1	16.1	10.9	20.4
	음식물쓰레기	(73)	16.4	23.3	16.4	15.1	15.1	13.7
	재활용쓰레기	(76)	23.7	26.3	19.7	6.6	5.3	18.4
	대형폐기물	(16)	43.8	37.5	18.8	0.0	0.0	0.0

(5) 정년퇴직

민간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정년퇴직은 평균 나이 61.5로 대부분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년이 지난 환경미화원들이 계약직, 촉탁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표 4-34> 정년퇴직 연령이 정해져 있는가 (단위: 명/%)

구분	사례수	정해져 있다		정해지지 않았다	모른다	
			평균 나이(세)			
전체	(500)	81.6	61.5	6.6	11.8	
직무	수집원	(250)	78.0	61.5	8.8	13.2
	운전원	(250)	85.2	61.5	4.4	10.4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78.3	61.4	8.8	12.8
	음식물쓰레기	(116)	81.9	61.5	7.8	10.3
	재활용쓰레기	(140)	85.7	61.5	2.1	12.1
	대형폐기물	(18)	88.9	62.9	5.6	5.6

6) 노동조건(임금·근로시간)

환경부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 제정(안) 보고’(19.1.19.)에 따르면, 지자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 종사자의 1인당 평균임금은 월 389만원(직영: 평균 424만원, 위탁: 평균 363만원)이며, 근무일수는 주 5일(40시간) 34%, 주 6일(46~48시간) 62%, 주 5.5일(격주) 4%이다. 근무시간은 주간(06시 시작) 38%, 야간(20시 시작) 31%, 새벽(04~05시 시작) 25%, 혼용 6%이다. 가로청소는 주간(62.0%), 일반쓰레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은 새벽·야간(67.2%)에 주로 운영한다.

(1) 근무 시간(출근시간)

본 조사에서도 환경미화원의 출근시간은 자치구별 및 소속 업체별로 달랐다. 저녁 9시부터 출근하여 새벽까지 근무하는 형태도 있고, 오전 6시부터 출근하여 8시간 근무하는 형태도 있다. 즉, 오후 9시 이후 출근 46.8%, 오전 1시-5시 출근 11.6%, 오전 6시 출근 18.8%, 오전 7시-12시 출근 11.8%, 오후 2시-8시 출근 11.0%로 출근시간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표 4-35> 출근시간 (단위: 명/%)

구분	사례수	PM 9시-11시	AM 1시-5시	AM6시	AM 7시-12시	PM 2시-8시	
전체	(500)	46.8	11.6	18.8	11.8	11.0	
직무	수집원	(250)	50.4	8.8	19.2	11.2	10.4
	운전원	(250)	43.2	14.4	18.4	12.4	11.6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44.2	10.6	17.3	15.9	11.9
	음식물쓰레기	(116)	54.3	9.5	17.2	6.0	12.9
	재활용쓰레기	(140)	49.3	15.0	17.9	8.6	9.3
	대형폐기물	(18)	11.1	11.1	55.6	22.2	0.0

(2) 근무일과 노동시간

민간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주당 근로일 수는 6일, 계약상 1일 근로시간(식사 등 휴게시간 제외)은 8.1시간이다. 코로나19 이전/이후 1일 평균 실제 근로시간에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휴게시간은 하루 평균 1시간이다.

<표 4-36> 평균 근무일과 노동시간 (단위: 일/시간)

구분	사례수	주당 근로일 수	계약상 1일 근로시간	코로나19 이전 실제 근로시간	코로나19 이후 실제 근로시간	휴게시간	
전체	(500)	6.0	8.1	8.1	8.2	1.0	
직무	수집원	(250)	6.0	8.1	8.1	8.2	1.0
	운전원	(250)	6.0	8.1	8.2	8.1	1.0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6.0	8.1	8.1	8.1	1.0
	음식물쓰레기	(116)	6.0	8.1	8.1	8.1	1.0
	재활용쓰레기	(140)	6.0	8.2	8.2	8.3	1.0
	대형폐기물	(18)	6.0	8.1	8.1	7.9	1.0

(3) 수당

환경미화원의 약 20%는 법정수당인 연장근로수당(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현재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대지원 및 주휴수당은 약 70% 정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명절수당, 운전수당은 50%이상 지급받지 못했다. 여름휴가수당, 위험수당, 근속수당도 약 30%의 환경미화원이 받고 있었으며, 회사마다 수당체계에 다른 것을 감안하더라도 병가, 가족수당, 교통비 지원 등을

지급받는 경우는 희박했다.

<표 IV-37-a> 현재 지급받고 있는 수당(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사례수	연차 수당	연장 (시간외) 근로수당	야간 근로 수당	휴일 근로 수당	식대 지원	주휴 수당
전체	(495)	81.8	81.2	81.0	73.9	73.7	71.7
직무	수집원	(246)	80.5	83.3	81.3	73.6	74.0
	운전원	(249)	83.1	79.1	80.7	74.3	73.5
성상	종량제쓰레기	(224)	83.5	79.9	83.0	71.9	71.9
	음식물쓰레기	(115)	81.7	84.3	81.7	72.2	78.3
	재활용쓰레기	(138)	82.6	81.2	79.0	79.0	71.7
	대형폐기물	(18)	55.6	77.8	66.7	72.2	83.3

<표 IV-37-b> 현재 지급받고 있는 수당(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법정 퇴직금	명절 수당	운전 수당	여름 휴가 수당	위험 수당	근속 수당
전체	(495)	64.2	48.7	42.0	35.2	29.5	28.3
직무	수집원	(246)	68.3	47.6	11.8	32.5	42.7
	운전원	(249)	60.2	49.8	71.9	37.8	16.5
성상	종량제쓰레기	(224)	62.9	47.3	42.9	32.6	32.6
	음식물쓰레기	(115)	71.3	52.2	40.9	33.9	23.5
	재활용쓰레기	(138)	64.5	49.3	39.9	39.1	30.4
	대형폐기물	(18)	33.3	38.9	55.6	44.4	22.2

<표 IV-37-c> 현재 지급받고 있는 수당(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사례수	경조사 수당	직책/ 직급 수당	병가 (상병 휴가)	체력 단련 수당	가족 수당	교통비 지원
전체	(495)	18.6	13.5	11.3	1.0	0.8	0.6
직무	수집원	(246)	22.0	11.0	13.4	1.6	0.8
	운전원	(249)	15.3	16.1	9.2	0.4	0.8
성상	종량제쓰레기	(224)	16.5	18.3	12.1	0.9	0.4
	음식물쓰레기	(115)	19.1	11.3	12.2	1.7	1.7
	재활용쓰레기	(138)	20.3	6.5	8.0	0.7	0.0
	대형폐기물	(18)	27.8	22.2	22.2	0.0	5.6

(4) 임금수준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의 임금수준은 월 평균 세후 급여 314.5만원으로 상차원 평균 310.8만원, 운전원 평균 318.3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상별 환경미화원의 월 평균 임금은 생활쓰레기(종량제) 316.0만원, 음식물 쓰레기 312.4만원, 재활용쓰레기 316.8만원, 대형폐기물 292.7만원으로 나타났다.

임금 구간별로 살펴보면, 300만원 미만 26.9%, 300-320만원 미만이 25.3%, 320-340만원 미만이 21.5%, 340-360만원 미만이 13.7%, 360만원 이상이 12.7%를 차지했다. 환경미화원의 노임은 건설업임금실태조사 보통인부노임단가 기준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표 4-38> 임금수준(야간근무, 토요일근무, 휴일근무 포함) (단위: 명/%)

구분	사례수	300만원 미만	300-320만원 미만	320-340만원 미만	340-360만원 미만	360만원 이상	
전체	(498)	26.9	25.3	21.5	13.7	12.7	
직무	수집원	(248)	26.2	29.4	21.8	12.1	10.5
	운전원	(250)	27.6	21.2	21.2	15.2	14.8
성상	종량제쓰레기	(224)	25.9	24.1	21.4	15.2	13.4
	음식물쓰레기	(116)	27.6	28.4	19.0	15.5	9.5
	재활용쓰레기	(140)	22.9	27.1	25.7	10.0	14.3
	대형폐기물	(18)	66.7	5.6	5.6	11.1	11.1

환경미화원의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행정정보공개청구(21.10.28)를 실시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청소행정과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인건비(노무비)를 확인 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원가용역 평가서(또는 대행비)’를 요청했다.

‘20년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운전원 노무비는 기본급 1,576,911원 + 제수당(주휴수당, 연차수당,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위험수당(수거원), 운전수당(운전원)) 1,917,065원 + 상여금(기본급×200%÷12개월_한도율 400%이내) + 퇴직급여충당금을 더해서 월 평균 노무비를 4,069,860원이다. 기본급은 대한건설협회시중노임 보통인부 138,290원의 54.3%로 책정하고 있다. 성동구는 ‘18년 자료에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운전원 노무비는 기본급 1,534,534원 + 제수당 2,167,182원 + 퇴직

급여충당금을 더해서 월 평균 4,010,192원이다. 기본급은 대한건설협회시중노임 보통인부의 60%이며, 상여금은 없다. 강북구는 '18년 자료에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운전원 노무비는 기본급 1,671,987원 + 제수당(특수업무 수당 90,000원 포함) 2,152,220원 + 퇴직급여충당금을 더해서 월 평균 4,142,890원이다. 기본급은 대한건설협회시중노임 보통인부의 70%이며, 상여금은 없다. 이와 같이 자치구별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노무비 산정내역과 기본급 기준이 다른 이유는 '환경부고시 제2016-108호(생활폐기물수집 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환경부, 2016. 6. 7)'에 의거 자치단체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4-38>의 임금수준 결과는 세후 실제 지급받은 환경미화원 임금수준이며, 정보공개청구에서 받은 '자치구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원가용역 평가서' 내역에서 확인한 사항과 같이 환경미화원 노무비는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으로 기본급보다 제수당이 많다.

(5) 대체인력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의 38%는 연차휴무 사용시 회사에서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특히, 수집원(상차원)은 40% 정도가 휴가로 인한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9> 연차휴무 사용 시 회사에서 대체인력 투입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대체인력 투입한다	대체인력 투입하지 않는다	모른다	
전체	(500)	56.2	38.0	5.8	
직무	수집원	(250)	54.4	39.6	6.0
	운전원	(250)	58.0	36.4	5.6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56.2	37.6	6.2
	음식물쓰레기	(116)	57.8	37.9	4.3
	재활용쓰레기	(140)	55.0	40.0	5.0
	대형폐기물	(18)	55.6	27.8	16.7

(6) 상해보험

현재 직장에서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환경미화원은 56%, 가입되어 있지 않는 환경미화원은 11.4%로 나타났다. 32.6%는 현재 직장에서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0> 현재 직장에서 상해보험 가입 유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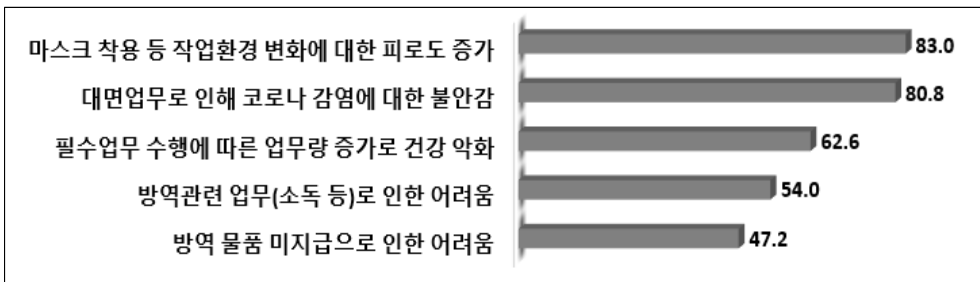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가입되어 있음	가입되어 있지 않음	모름	
전체	(500)	56.0	11.4	32.6	
직무	수집원	(250)	55.2	12.0	32.8
	운전원	(250)	56.8	10.8	32.4
성상	중량제쓰레기	(226)	56.2	12.4	31.4
	음식물쓰레기	(116)	58.6	6.0	35.3
	재활용쓰레기	(140)	50.0	15.0	35.0
	대형폐기물	(18)	83.3	5.6	11.1

7) 코로나19 상황

(1) 직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험

환경미화원이 직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 등 작업환경 변화에 대한 피로도 증가(83.0%)와 대면업무로 코로나 감염에 대한 불안감(80.8%)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필수업무 수행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건강 악화(52.5%)와 방역관련 업무(휴게실 및 청소차량 소독 등)로 인한 어려움(54.0%), 방역 물품 미지급으로 인한 어려움(47.2%)을 경험했다.

[그림 4-2] 직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험 있음(%)



환경미화원의 33.6%는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 등 작업환경 변화에 대한 피로도 증가가 항상 있다고 하였으며, 39.6%는 대면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코로나 감

염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업무량 증가로 건강이 악화된 경험은 24.6%가 가끔 있다고 하였으며, 방역관련 업무(휴게실 및 청소차량 소독 등)으로 인한 어려움은 운전원의 경우에 24.4%가 거의 없다고 하였다. 또한, 방역물품 미지급으로 인한 어려움도 25.6%는 전혀 없다고 한 반면, 22.8%는 항상 있다고 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물품 지급은 일괄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우근(2021)은 작업현장에서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는 방역물품을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방역물품에 대한 지원 요구가 높다고 하였다.

<표 4-41> 마스크 착용 등 작업환경 변화에 대한 피로도 증가 (단위: 명/%)

구분	사례수	항상 있음	자주 있음	가끔 있음	거의 없음	전혀 없음	
전체	(500)	33.6	24.4	25.0	10.8	6.2	
직무	수집원	(250)	36.8	25.2	26.4	8.4	3.2
	운전원	(250)	30.4	23.6	23.6	13.2	9.2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27.9	25.2	28.3	13.3	5.3
	음식물쓰레기	(116)	37.1	23.3	20.7	12.9	6.0
	재활용쓰레기	(140)	40.0	25.7	20.7	5.7	7.9
	대형폐기물	(18)	33.3	11.1	44.4	5.6	5.6

<표 4-42> 대면업무가 불가피하여 코로나 감염에 대한 불안감 (단위: 명/%)

구분	사례수	항상 있음	자주 있음	가끔 있음	거의 없음	전혀 없음	
전체	(500)	39.6	15.8	25.4	11.6	7.6	
직무	수집원	(250)	38.8	16.8	26.8	11.2	6.4
	운전원	(250)	40.4	14.8	24.0	12.0	8.8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36.7	15.9	27.4	11.1	8.8
	음식물쓰레기	(116)	46.6	18.1	16.4	12.1	6.9
	재활용쓰레기	(140)	38.6	15.0	29.3	12.1	5.0
	대형폐기물	(18)	38.9	5.6	27.8	11.1	16.7

<표 4-43> 필수업무 수행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건강 악화 (단위: 명/%)

구분	사례수	항상 있음	자주 있음	가끔 있음	거의 없음	전혀 없음	
전체	(500)	23.6	14.4	24.6	23.0	14.4	
직무	수집원	(250)	26.4	16.0	19.6	26.4	11.6
	운전원	(250)	20.8	12.8	29.6	19.6	17.2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20.4	15.5	24.3	23.0	16.8
	음식물쓰레기	(116)	26.7	17.2	15.5	25.9	14.7
	재활용쓰레기	(140)	27.9	12.1	30.7	20.0	9.3
	대형폐기물	(18)	11.1	0.0	38.9	27.8	22.2

<표 4-44> 방역관련 업무(휴게실 및 청소차량 소독 등)로 인한 어려움 (단위: 명/%)

구분	사례수	항상 있음	자주 있음	가끔 있음	거의 없음	전혀 없음	
전체	(500)	21.2	12.6	20.2	26.6	19.4	
직무	수집원	(250)	23.6	14.0	17.2	30.8	14.4
	운전원	(250)	18.8	11.2	23.2	22.4	24.4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16.4	13.3	23.0	27.9	19.5
	음식물쓰레기	(116)	27.6	17.2	14.7	20.7	19.8
	재활용쓰레기	(140)	24.3	8.6	19.3	29.3	18.6
	대형폐기물	(18)	16.7	5.6	27.8	27.8	22.2

<표 4-45> 방역 물품 미지급으로 인한 어려움 (단위: 명/%)

구분	사례수	항상 있음	자주 있음	가끔 있음	거의 없음	전혀 없음	
전체	(500)	22.8	12.0	12.4	27.2	25.6	
직무	수집원	(250)	26.8	12.4	12.0	27.6	21.2
	운전원	(250)	18.8	11.6	12.8	26.8	30.0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20.8	13.7	13.7	27.9	23.9
	음식물쓰레기	(116)	25.0	11.2	11.2	19.8	32.8
	재활용쓰레기	(140)	26.4	10.0	11.4	31.4	20.7
	대형폐기물	(18)	5.6	11.1	11.1	33.3	38.9

(2) 작업현장,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가

환경미화원의 작업현장이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한가에 대해서

는 별로 안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안전하지 않다가 32.6%, 별로 안전하지 않다가 31.8%로 안전하지 않는 것의 비중이 높다. 매우 안전하다는 4.0%에 불과하다. 음식물쓰레기 작업의 경우 전혀 안전하지 않다가 40.5%를 나타냈다.

<표 4-46> 작업현장,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정도 (단위: 명/%)

구분	사례수	전혀 안전하지 않다	별로 안전하지 않다	어느 정도 안전하다	매우 안전하다	
전체	(500)	32.6	31.8	31.6	4.0	
직무	수집원	(250)	33.6	32.4	30.0	4.0
	운전원	(250)	31.6	31.2	33.2	4.0
성상	중량제쓰레기	(226)	28.3	32.7	35.0	4.0
	음식물쓰레기	(116)	40.5	27.6	28.4	3.4
	재활용쓰레기	(140)	33.6	35.7	27.9	2.9
	대형폐기물	(18)	27.8	16.7	38.9	16.7

(3) 코로나19로 인한 노동환경 변화

코로나19 영향으로 노동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는 변화 없음이 42.6%, 노동강도 증가가 38.4%, 전체 근로시간 증가가 25.6%, 새로운 업무가 추가됨이 9.4%, 전체 근로시간 감소 6.2%, 일하는 방식이 바뀜 4.8%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환경미화원의 약 40%는 노동환경에 변화가 없었으나, 재활용쓰레기 작업은 노동강도 증가(49.3%)가 높았고, 전체 근로시간이 증가도 34.3% 나타났다. 음식물쓰레기 작업은 약 10%정도 새로운 업무가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근로시간 증가 비율이 근로시간 감소 비율의 약 4배 정도 높았다.

<표 4-47> 코로나19 영향으로 노동환경의 변화(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변화 없음	노동강도 증가	전체 근로시간 증가	새로운 업무가 추가됨	전체 근로시간 감소	일하는 방식이 바뀜	
전체	(500)	42.6	38.4	25.6	9.4	6.2	4.8	
직무	수집원	(250)	40.4	42.8	24.0	9.6	5.6	4.8
	운전원	(250)	44.8	34.0	27.2	9.2	6.8	4.8
성상	중량제쓰레기	(226)	45.1	31.9	23.5	8.4	7.5	4.0
	음식물쓰레기	(116)	47.4	42.2	22.4	11.2	4.3	2.6
	재활용쓰레기	(140)	31.4	49.3	34.3	10.7	5.7	6.4
	대형폐기물	(18)	66.7	11.1	5.6	0.0	5.6	16.7

(4) 코로나19 이전/이후 업무량

코로나19 상황 이전과 비교하여 코로나19 이후 하루 평균 수거하는 쓰레기 양(ton)의 변화를 성상별로 살펴보면, 종량제(생활)쓰레기는 증가가 72.2%, 감소가 15.6%를 나타냈고, 음식물쓰레기는 증가가 65.0%, 감소가 15.0%를 나타냈다. 재활용쓰레기는 증가가 80.0%, 감소는 5.7로 나타났다. 특히, 재활용쓰레기 작업 환경미화원의 35.7%는 코로나19이후 하루 평균 수거하는 쓰레기양이 매우 증가했다고 하였다.

<표 4-48> 코로나19 이후, 하루 평균 수거하는 쓰레기 양(ton) 변화 (단위: 명/%)

구분	사례 수	매우 증가	증가	동일	감소	매우 감소	해당 없음
종량제(생활)쓰레기	(115)	27.0	45.2	9.6	7.8	7.8	2.6
음식물쓰레기	(60)	16.7	48.3	15.0	11.7	3.3	5.0
재활용쓰레기	(70)	35.7	44.3	11.4	4.3	1.4	2.9

코로나19 상황 이전과 비교하여 코로나19 이후 운전하는 청소차량의 하루 평균 이동거리(km) 변화를 성상별로 살펴보면, 종량제(생활)쓰레기 청소차량 이동 거리는 44.1% 증가, 49.5% 동일, 6.3% 감소로 나타났고, 음식물쓰레기 청소차량 이동 거리는 44.6% 증가, 50.0% 동일, 5.4% 감소로 나타났다. 재활용쓰레기 청소차량 이동 거리는 62.8% 증가, 34.3% 동일, 2.9% 감소로 나타났으며 대형폐기물은 23.1% 증가, 61.5% 동일, 15.4% 감소로 나타났다. 이는 수거하는 쓰레기양이 증가한 것과 같이 청소차량 운반 이동횟수도 늘어난 만큼 이동 거리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4-49> 코로나19 이후, 청소차량의 하루 평균 이동 거리(km) 변화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매우 증가	증가	동일	감소	매우 감소
종량제(생활)쓰레기	(111)	11.7	32.4	49.5	3.6	2.7
음식물쓰레기	(56)	12.5	32.1	50.0	3.6	1.8
재활용쓰레기	(70)	17.1	45.7	34.3	0.0	2.9
대형폐기물	(13)	0.0	23.1	61.5	0.0	15.4

(5)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임금(상여 포함)에 변화

코로나19 영향으로 임금(상여 포함) 변화에 대해서는 변화 없음이 96.6%로 나타나, 코로나19로 인한 임금 변동은 거의 없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업무량은 대체로 증가했고, 근로시간 증가가 25.6%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은 환경미화원들의 시간외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고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 면접조사에서 환경미화원들은 늘어난 작업량을 맞추기 위해 자발적으로 2시간 일찍 출근한다고 밝혔다.51)

<표 4-50> 코로나19 이후 임금(상여 포함) 변화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변화 없음	감소	증가	
전체	(500)	96.6	1.4	2.0	
직무	수집원	(250)	95.2	2.0	2.8
	운전원	(250)	98.0	0.8	1.2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96.0	2.2	1.8
	음식물쓰레기	(116)	95.7	0.0	4.3
	재활용쓰레기	(140)	97.9	1.4	0.7
	대형폐기물	(18)	100.0	0.0	0.0

(6)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호 장구

코로나19 상황에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호 장구는 마스크(98.4%)를 제외하고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 장갑은 35.4% 지급받았으며, 보호복은 14.0%, 일회용 토시는 4.0%, 안면 쉴트 보호대는 1.4% 지급받았다.

<표 4-51> 코로나19,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호 장구(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마스크	일회용 장갑	보호복	일회용 토시	안면 쉴트 보호대	지급받지 못함	
전체	(500)	98.4	35.4	14.0	4.0	1.4	1.4	
직무	수집원	(250)	98.4	37.2	16.4	5.2	0.8	1.2
	운전원	(250)	98.4	33.6	11.6	2.8	2.0	1.6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98.2	38.5	12.8	4.0	1.8	1.8
	음식물쓰레기	(116)	98.3	31.9	15.5	6.0	1.7	0.9
	재활용쓰레기	(140)	98.6	29.3	11.4	2.9	0.0	1.4
	대형폐기물	(18)	100.0	66.7	38.9	0.0	5.6	0.0

51) 본문 55page 제16조의 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참고

(7) 코로나19 유증상 시 휴가

현재 직장에서 코로나19 유증상 시 휴가를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갈 수 있다가 54%, 갈 수 없다가 46%로 휴가를 갈 수 있다가 조금 더 높게 나왔다. 그리고 전혀 갈 수 없다가 31.8%, 매우 갈 수 있다는 14.6%로 코로나19 사업장 대응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2> 현재 직장에서 코로나19 유증상 시 휴가 사용 가능정도 (단위: 명/%)

구분	사례 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500)	14.6	39.4	14.2	31.8	
직무	수집원	(250)	14.0	42.0	9.6	34.4
	운전원	(250)	15.2	36.8	18.8	29.2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17.3	39.4	9.7	33.6
	음식물쓰레기	(116)	12.9	39.7	16.4	31.0
	재활용쓰레기	(140)	8.6	39.3	21.4	30.7
	대형폐기물	(18)	38.9	38.9	0.0	22.2

(8)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휴가 기준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휴가 기준은 정해진 바 없음이 79.8%로 정부가 발표한 백신 휴가 제도 권고 사항은 거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휴가는 의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결과는 환경미화원들이 백신을 맞아도 쉽게 쉴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

<표 4-53>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휴가 기준 (단위: 명/%)

구분	사례 수	백신 접종 당일 공가 휴가	백신 접종 당일 유급 휴가	정해진 바 없음	
전체	(500)	5.8	14.4	79.8	
직무	수집원	(250)	5.6	19.6	74.8
	운전원	(250)	6.0	9.2	84.8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7.5	14.2	78.3
	음식물쓰레기	(116)	3.4	13.8	82.8
	재활용쓰레기	(140)	3.6	16.4	80.0
	대형폐기물	(18)	16.7	5.6	77.8

(9) 직장(일자리)의 코로나19 대응조치

① 사업장 휴게실 및 현장 휴게실 정기 소독 실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장 휴게실 및 현장 휴게실에 정기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46.4%는 모른다고 하였다. 소독 안함은 21.6%이며, 68%가 소독을 안 하거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1회 소독은 21.4%, 월 1-2회 소독은 10.6%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휴게실의 정기 소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4> 코로나19, 정기 소독 실시 (단위: 명/%)

구분	사례수	주 1회	월 2회	월 1회	소독 안함	모름	
전체	(500)	21.4	5.2	5.4	21.6	46.4	
직무	수집원	(250)	21.6	7.2	4.8	22.4	44.0
	운전원	(250)	21.2	3.2	6.0	20.8	48.8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23.9	6.2	5.3	19.5	45.1
	음식물쓰레기	(116)	23.3	5.2	5.2	25.0	41.4
	재활용쓰레기	(140)	12.9	4.3	5.0	24.3	53.6
	대형폐기물	(18)	44.4	0.0	11.1	5.6	38.9

② 코로나19 방역지침 교육이나 안내

직장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 교육이나 안내는 '어느 정도 한다'가 42%, '항상 한다'가 24.6%로 나타났다. '별로 하지 않는다'는 22.2%, '전혀 하지 않는다'는 11.2%로 코로나19 방역지침 교육이나 안내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재활용쓰레기 작업은 코로나19 방역지침 교육이나 안내를 '전혀 하지 않는다'가 16.4%를 차지했다.

<표 4-55> 코로나19 방역지침 교육이나 안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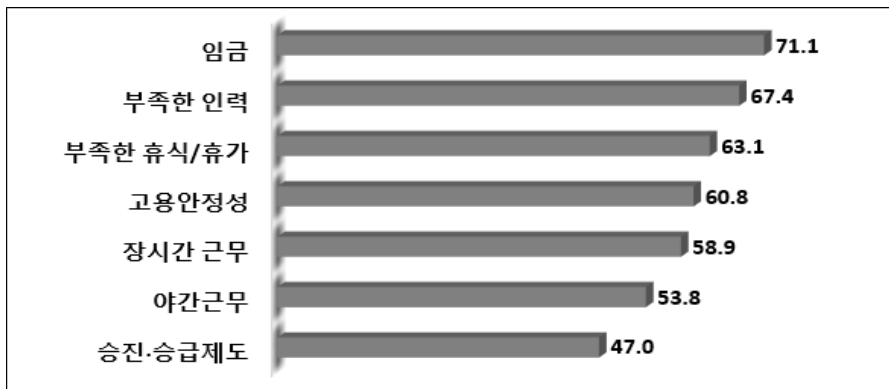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전혀 하지 않는다	별로 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한다	항상 한다	
전체	(500)	11.2	22.2	42.0	24.6	
직무	수집원	(250)	12.4	24.4	40.8	22.4
	운전원	(250)	10.0	20.0	43.2	26.8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9.7	20.8	43.4	26.1
	음식물쓰레기	(116)	9.5	25.9	40.5	24.1
	재활용쓰레기	(140)	16.4	22.1	41.4	20.0
	대형폐기물	(18)	0.0	16.7	38.9	44.4

8) 애로사항

(1) 근로조건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환경미화원은 현재 직장의 근로조건에서 임금(71.1%), 부족한 인력(67.4%), 부족한 휴식/휴가(63.1%), 고용안정성(60.8%), 장시간 근무(58.9%), 야간근무(53.8%), 승진·승급제도(47.0%) 순으로 어려움을 경험했다.

[그림 4-3] 근로조건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100점 환산)



환경미화원은 근로조건에서 가장 어려움이 임금이라고 하였으며, 수집원은 67.6%가 운전원은 65.6%가 임금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61.2%는 부족한 인력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는데, 재활용쓰레기 작업의 경우 69.3%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부족한 휴식/휴가로 인한 어려움은 53.4%가 경험했고, 수집원이 운전보다 2.8%가 더 어렵다고 하였다.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환경미화원은 50.4%이며,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53.4%가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장시간 근무로 인한 어려움은 45.8%가 경험했고, 장시간 근무가 매우 힘들다고 한 수집원은 34.0%로 운전원 23.6% 보다 10%나 더 많았다. 야간근무로 인한 어려움은 45.8%가 경험했고, 25.4%는 경험하지 않았다. 그리고 승진·승급제도에 대한 어려움은 28.6%가 경험했고, 35.6%는 경험하지 않았다.

<표 4-56> 임금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500)	44.0	22.6	16.8	6.8	9.8	
직무	수집원	(250)	48.8	18.8	19.2	4.8	8.4
	운전원	(250)	39.2	26.4	14.4	8.8	11.2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39.8	21.7	19.5	7.5	11.5
	음식물쓰레기	(116)	54.3	17.2	14.7	7.8	6.0
	재활용쓰레기	(140)	42.1	27.1	15.7	5.0	10.0
	대형폐기물	(18)	44.4	33.3	5.6	5.6	11.1

<표 4-57> 부족한 인력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500)	42.6	18.6	17.0	9.4	12.4	
직무	수집원	(250)	46.0	15.6	18.4	9.6	10.4
	운전원	(250)	39.2	21.6	15.6	9.2	14.4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38.5	18.6	16.8	10.6	15.5
	음식물쓰레기	(116)	42.2	18.1	13.8	12.9	12.9
	재활용쓰레기	(140)	50.7	18.6	17.9	5.0	7.9
	대형폐기물	(18)	33.3	22.2	33.3	5.6	5.6

<표 4-58> 부족한 휴식/휴가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500)	33.2	20.2	24.2	10.6	11.8	
직무	수집원	(250)	34.0	20.8	26.0	10.0	9.2
	운전원	(250)	32.4	19.6	22.4	11.2	14.4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28.8	20.4	24.8	12.4	13.7
	음식물쓰레기	(116)	35.3	20.7	20.7	12.1	11.2
	재활용쓰레기	(140)	40.0	18.6	25.0	7.9	8.6
	대형폐기물	(18)	22.2	27.8	33.3	0.0	16.7

<표 4-59> 고용안정성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500)	35.0	15.4	22.6	11.6	15.4	
직무	수집원	(250)	39.6	12.8	23.2	10.8	13.6
	운전원	(250)	30.4	18.0	22.0	12.4	17.2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34.5	13.7	24.3	9.7	17.7
	음식물쓰레기	(116)	40.5	12.9	19.0	13.8	13.8
	재활용쓰레기	(140)	32.1	17.9	24.3	13.6	12.1
	대형폐기물	(18)	27.8	33.3	11.1	5.6	22.2

<표 4-60> 장시간 근무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500)	28.8	17.0	28.2	13.0	13.0	
직무	수집원	(250)	34.0	15.6	29.6	10.8	10.0
	운전원	(250)	23.6	18.4	26.8	15.2	16.0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27.0	17.3	27.4	15.0	13.3
	음식물쓰레기	(116)	33.6	11.2	27.6	13.8	13.8
	재활용쓰레기	(140)	28.6	18.6	31.4	9.3	12.1
	대형폐기물	(18)	22.2	38.9	16.7	11.1	11.1

<표 4-61> 야간근무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500)	28.6	17.2	18.8	11.6	23.8	
직무	수집원	(250)	32.4	18.0	18.4	10.8	20.4
	운전원	(250)	24.8	16.4	19.2	12.4	27.2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28.3	16.8	19.9	11.9	23.0
	음식물쓰레기	(116)	29.3	12.9	14.7	14.7	28.4
	재활용쓰레기	(140)	29.3	20.7	20.0	9.3	20.7
	대형폐기물	(18)	22.2	22.2	22.2	5.6	2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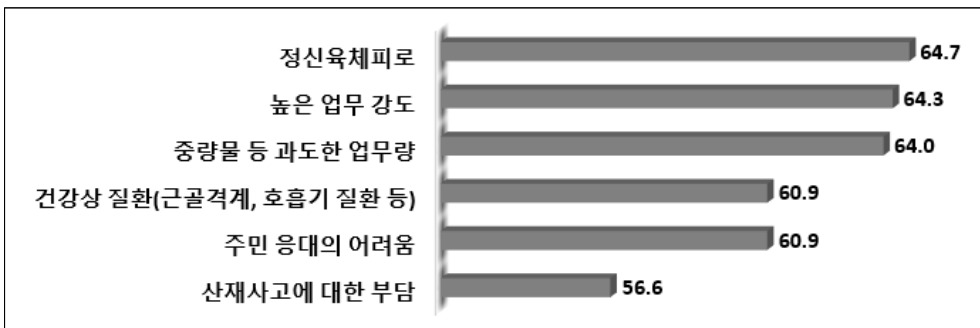
<표 4-62> 승진·승급제도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500)	20.0	8.6	35.8	10.4	25.2	
직무	수집원	(250)	21.6	6.8	40.8	7.6	23.2
	운전원	(250)	18.4	10.4	30.8	13.2	27.2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18.6	5.3	39.4	12.8	23.9
	음식물쓰레기	(116)	20.7	4.3	38.8	9.5	26.7
	재활용쓰레기	(140)	20.7	15.0	30.0	7.1	27.1
	대형폐기물	(18)	27.8	27.8	16.7	11.1	16.7

(2) 노동환경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환경미화원이 노동환경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은 정신육체피로(64.7%), 높은 업무 강도(64.3%), 중량물(1일 25Kg이상 1인 작업) 등 과도한 업무량(64.0%), 건강상 질환(근골격계, 호흡기 질환 등)(60.9%), 주민 응대의 어려움(60.9%), 산재사고에 대한 부담(산재신청이 어려움)(56.6%)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4] 노동환경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100점 환산)



환경미화원의 53.2%는 정신육체피로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고, 18.4%는 어려움이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53.4%는 근로환경에서 높은 업무 강도로 힘들다고 하였고, 23.2%는 힘들지 않다고 하였다. 중량물(1일 25Kg이상 1인 작업)등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어려움은 54.8%가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하였고, 23.8%는 어려움을 경험하

지 않았다고 하였다. 건강상 질환(근골격계, 호흡기 질환 등)으로 인한 어려움은 49.4%가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하였고, 27.4%는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환경미화원의 47.2%는 주민 응대에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하였고, 23.2%는 경험하지 않았거나 않은 편이라고 했다. 산재사고에 대한 부담(산재신청이 어려움)에 대해서는 45.4%가 어려운 편이라고 하였으며, 29.8%는 전혀 어렵지 않거나 어렵지 않는 편이라고 하였다.

<표 4-63> 정신육체피로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500)	31.6	21.6	28.4	10.8	7.6	
직무	수집원	(250)	32.0	20.8	33.6	9.2	4.4
	운전원	(250)	31.2	22.4	23.2	12.4	10.8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29.6	21.7	27.9	11.1	9.7
	음식물쓰레기	(116)	31.9	19.8	30.2	9.5	8.6
	재활용쓰레기	(140)	33.6	22.9	28.6	10.7	4.3
	대형폐기물	(18)	38.9	22.2	22.2	16.7	0.0

<표 4-64> 높은 업무 강도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500)	36.0	17.4	23.4	14.0	9.2	
직무	수집원	(250)	43.6	16.8	23.2	10.8	5.6
	운전원	(250)	28.4	18.0	23.6	17.2	12.8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33.6	17.3	25.2	12.8	11.1
	음식물쓰레기	(116)	37.1	16.4	17.2	19.0	10.3
	재활용쓰레기	(140)	38.6	19.3	27.1	9.3	5.7
	대형폐기물	(18)	38.9	11.1	11.1	33.3	5.6

<표 4-65> 종량물(1일 25Kg이상 1인 작업) 등 과도한 업무량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500)	35.8	19.0	21.4	13.0	10.8	
직무	수집원	(250)	44.4	16.8	23.6	8.8	6.4
	운전원	(250)	27.2	21.2	19.2	17.2	15.2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35.4	21.2	20.8	11.1	11.5
	음식물쓰레기	(116)	38.8	16.4	15.5	20.7	8.6
	재활용쓰레기	(140)	33.6	17.1	28.6	9.3	11.4
	대형폐기물	(18)	38.9	22.2	11.1	16.7	11.1

<표 4-66> 건강상 질환(근골격계, 호흡기 질환 등)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500)	33.6	15.8	23.2	15.2	12.2	
직무	수집원	(250)	36.0	16.8	26.8	11.6	8.8
	운전원	(250)	31.2	14.8	19.6	18.8	15.6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27.9	15.5	27.4	13.7	15.5
	음식물쓰레기	(116)	43.1	12.1	18.1	17.2	9.5
	재활용쓰레기	(140)	37.1	17.9	20.7	15.0	9.3
	대형폐기물	(18)	16.7	27.8	22.2	22.2	11.1

<표 4-67> 주민 응대의 어려움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500)	28.6	18.6	29.6	14.0	9.2	
직무	수집원	(250)	26.4	22.0	32.4	12.0	7.2
	운전원	(250)	30.8	15.2	26.8	16.0	11.2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26.1	19.0	29.6	14.6	10.6
	음식물쓰레기	(116)	35.3	14.7	26.7	14.7	8.6
	재활용쓰레기	(140)	27.9	20.0	34.3	10.7	7.1
	대형폐기물	(18)	22.2	27.8	11.1	27.8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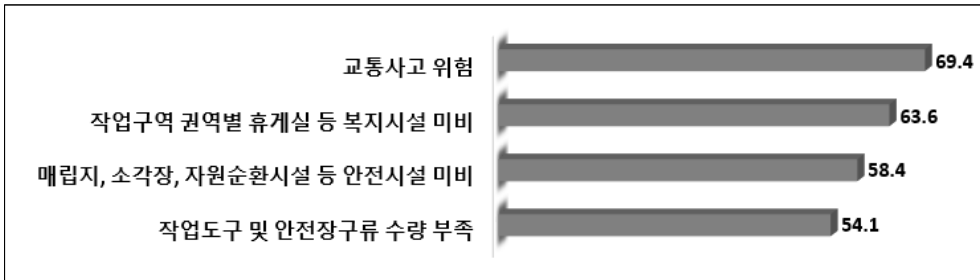
<표 4-68> 산재사고에 대한 부담(산재신청이 어려움)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500)	25.8	19.6	24.8	14.8	15.0	
직무	수집원	(250)	26.8	23.2	24.8	13.6	11.6
	운전원	(250)	24.8	16.0	24.8	16.0	18.4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23.5	18.1	25.7	15.5	17.3
	음식물쓰레기	(116)	28.4	19.0	21.6	12.9	18.1
	재활용쓰레기	(140)	28.6	21.4	27.1	13.6	9.3
	대형폐기물	(18)	16.7	27.8	16.7	27.8	11.1

(3) 작업환경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환경미화원이 작업환경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은 교통사고 위험(69.4%), 작업구역 권역별 휴게실 등 복지시설 미비(63.6%), 매립지, 소각장, 자원순환시설 등 안전시설 미비(58.4%), 작업도구 및 안전 장구류 수량 부족(5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5] 작업환경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100점 환산)



환경미화원의 63.0%는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하였고, 15.6%는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어려움이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52.6%는 작업구역 권역별 휴게실 등 복지시설 미비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하였고, 23.4%는 복지시설 미비로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은 편이라고 하였다.

매립지, 소각장, 자원순환시설 등의 시설에서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41.0%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1.2%가 어려운 경험이 없다고 하

였다. 작업도구 및 안전 장구류 수량 부족에 대해서는 41.2%가 어려운 편이라고 하였고, 34.6%는 어렵지 않은 편이라고 하였다.

<표 4-69> 교통사고 위험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500)	36.8	26.2	21.4	9.0	6.6	
직무	수집원	(250)	38.4	22.8	24.8	9.6	4.4
	운전원	(250)	35.2	29.6	18.0	8.4	8.8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34.1	26.1	23.9	6.6	9.3
	음식물쓰레기	(116)	44.0	24.1	17.2	10.3	4.3
	재활용쓰레기	(140)	36.4	27.1	22.9	10.0	3.6
	대형폐기물	(18)	27.8	33.3	5.6	22.2	11.1

<표 4-70> 작업구역 권역별 휴게실 등 복지시설 미비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500)	35.0	17.6	24.0	13.6	9.8	
직무	수집원	(250)	33.6	19.2	24.8	14.8	7.6
	운전원	(250)	36.4	16.0	23.2	12.4	12.0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30.1	18.1	28.8	12.4	10.6
	음식물쓰레기	(116)	44.0	13.8	15.5	14.7	12.1
	재활용쓰레기	(140)	37.1	17.9	22.9	14.3	7.9
	대형폐기물	(18)	22.2	33.3	27.8	16.7	0.0

<표 4-71> 매립지, 소각장, 자원순환시설 등 안전시설 미비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500)	23.6	17.4	37.8	11.4	9.8	
직무	수집원	(250)	21.2	17.2	41.6	11.6	8.4
	운전원	(250)	26.0	17.6	34.0	11.2	11.2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19.0	15.5	43.4	10.6	11.5
	음식물쓰레기	(116)	29.3	16.4	33.6	11.2	9.5
	재활용쓰레기	(140)	26.4	20.7	33.6	11.4	7.9
	대형폐기물	(18)	22.2	22.2	27.8	22.2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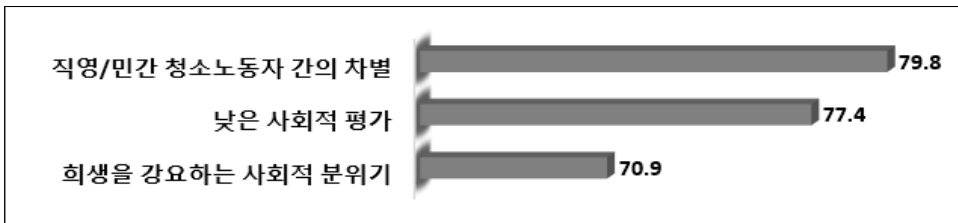
<표 4-72> 작업도구 및 안전 장구류 수량 부족 (단위: 명/%)

구분	사려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500)	25.0	16.2	24.2	19.2	15.4	
직무	수집원	(250)	25.6	18.0	24.4	20.4	11.6
	운전원	(250)	24.4	14.4	24.0	18.0	19.2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23.0	15.0	28.8	18.6	14.6
	음식물쓰레기	(116)	26.7	13.8	20.7	19.0	19.8
	재활용쓰레기	(140)	26.4	21.4	20.0	18.6	13.6
	대형폐기물	(18)	27.8	5.6	22.2	33.3	11.1

(4) 사회적 환경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환경미화원은 사회적 환경에서 직영/민간 청소노동자 간의 차별(79.8%), 낮은 사회적 평가(77.4%),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70.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6] 사회적 환경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100점 환산)



환경미화원의 77.2%는 직영/민간 청소노동자 간의 차별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했으며, 9%만이 그런 어려움이 없다고 하였다. 직영/민간 청소노동자 간의 차별은 임금, 고용뿐만 아니라 개인 안전장비물품, 복리후생 등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과정에서도 직영 공무원들은 KF94마스크(마스크가드 포함) 1인당 240매, 방진방독마스크, 응급의료키트, 에탄올 및 손소독제, 안전장갑, 의료위생약품(구급용품), 보호안경 등 가장 신속하게 지원받았으며, 민간 청소노동자들은 대행업체로부터 마스크 몇 개만 받고 필수노동자로 사회적 관심은 받으나, 지원은 미미하다며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리고 낮은 사회적 평가로 인한 어려움은 75.4%가 경험하고 있다고 했으며, 10%는 어려움이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

를 경험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은 65.2%이며, 그렇지 않은 환경미화원은 16.4%이다.

<표 4-73> 직영/민간 청소노동자 간의 차별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500)	55.8	21.4	13.8	4.0	5.0	
직무	수집원	(250)	56.8	23.6	12.8	4.0	2.8
	운전원	(250)	54.8	19.2	14.8	4.0	7.2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52.2	21.2	15.9	4.4	6.2
	음식물쓰레기	(116)	67.2	17.2	8.6	4.3	2.6
	재활용쓰레기	(140)	55.0	23.6	14.3	2.9	4.3
	대형폐기물	(18)	33.3	33.3	16.7	5.6	11.1

<표 4-74> 낮은 사회적 평가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500)	49.0	26.4	14.6	5.0	5.0	
직무	수집원	(250)	50.4	28.8	12.4	4.8	3.6
	운전원	(250)	47.6	24.0	16.8	5.2	6.4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45.6	24.8	17.3	6.2	6.2
	음식물쓰레기	(116)	62.1	25.9	6.0	4.3	1.7
	재활용쓰레기	(140)	45.7	29.3	17.1	2.9	5.0
	대형폐기물	(18)	33.3	27.8	16.7	11.1	11.1

<표 4-75>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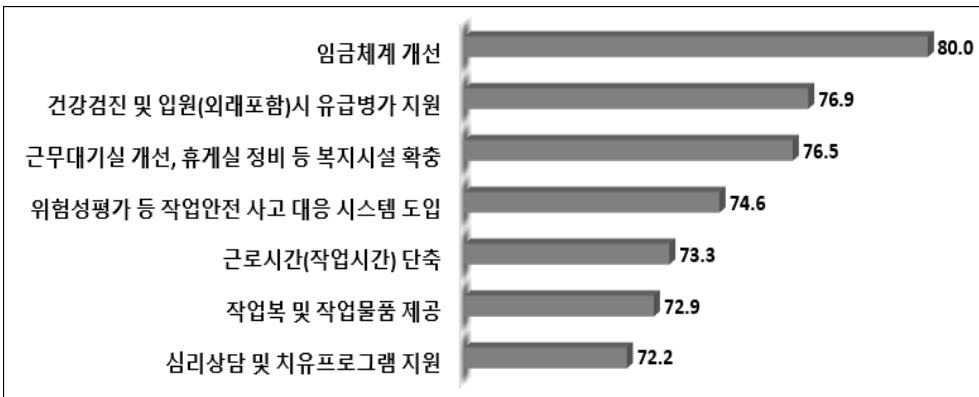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500)	41.0	24.2	18.4	10.2	6.2	
직무	수집원	(250)	42.0	24.8	19.2	10.0	4.0
	운전원	(250)	40.0	23.6	17.6	10.4	8.4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36.7	21.2	21.2	14.2	6.6
	음식물쓰레기	(116)	53.4	22.4	11.2	7.8	5.2
	재활용쓰레기	(140)	37.9	30.0	20.7	5.7	5.7
	대형폐기물	(18)	38.9	27.8	11.1	11.1	11.1

9)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 대책

(1) 환경미화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가 지원해야 할 과제

환경미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회사의 지원에 대한 동의 정도는 ‘임금체계 개선(80.0점)’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건강검진 및 입원(외래포함)시 유급병가 지원(76.9점)’, ‘근무대기실 개선, 휴게실 정비 등 복지시설 확충(76.5점)’, ‘위험성평가 등 작업안전 사고 대응 시스템 도입(74.6점)’ 순으로 많았다.

[그림 4-7]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지원에 대한 동의 정도(100점 환산)



임금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78.0%가 동의했고, 음식물쓰레기 환경미화원 중에서는 79.3%가 동의했다. 그리고 71.4%는 건강검진(공단) 및 입원(외래포함)시 유급병가 지원에 동의했고, 재활용쓰레기 환경미화원 중에서는 75.7%가 동의했다. 근무대기실 개선, 휴게실 정비 등 복지시설 확충에 동의한 환경미화원은 69.0%이며, 대형폐기물 환경미화원 중에서는 72.2%가 동의했다. 위험성평가 등 작업안전 사고 대응 시스템 도입에 동의한 환경미화원은 66.4%이며, 운전원 중에서는 69.2%가 동의했다.

근로시간(작업시간) 단축에 동의한 환경미화원은 64.2%이며, 대형폐기물 환경미화원 중에서는 72.2%가 동의했다. 그리고 64.6%는 작업복 및 작업물품 제공에 동의했고, 생활쓰레기(종량제) 환경미화원 중에서는 65.9%, 음식물쓰레기 환경미화원 중에서는 65.5%가 작업복 및 작업물품 제공에 동의했다. 그리고 63.8%는 스트레스, 정신적 소진 등 심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지원에 동의했고, 운전원 환경미화원 중에서는 67.2%가

대형폐기물 환경미화원 중에서는 72.2%가 심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지원에 동의했다.

<표 4-76> 임금체계 개선 (단위: 명/%)

구분	사례수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전체	(500)	5.0	1.4	15.6	24.6	53.4	
직무	수집원	(250)	4.4	2.0	16.0	24.0	53.6
	운전원	(250)	5.6	0.8	15.2	25.2	53.2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5.3	1.8	15.0	27.0	50.9
	음식물쓰레기	(116)	4.3	0.9	15.5	23.3	56.0
	재활용쓰레기	(140)	4.3	1.4	16.4	21.4	56.4
	대형폐기물	(18)	11.1	0.0	16.7	27.8	44.4

<표 4-77> 건강검진(공단) 및 입원(외래포함)시 유급병가 지원 (단위: 명/%)

구분	사례수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전체	(500)	2.0	4.2	22.4	27.2	44.2	
직무	수집원	(250)	1.6	6.0	19.6	24.8	48.0
	운전원	(250)	2.4	2.4	25.2	29.6	40.4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2.2	4.9	23.9	26.5	42.5
	음식물쓰레기	(116)	0.9	2.6	25.9	27.6	43.1
	재활용쓰레기	(140)	2.9	5.0	16.4	25.7	50.0
	대형폐기물	(18)	0.0	0.0	27.8	44.4	27.8

<표 4-78> 근무대기실 개선, 휴게실 정비 등 복지시설 확충 (단위: 명/%)

구분	사례수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전체	(500)	2.0	4.2	24.8	23.8	45.2	
직무	수집원	(250)	1.6	6.0	22.0	22.4	48.0
	운전원	(250)	2.4	2.4	27.6	25.2	42.4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1.3	3.5	26.5	26.1	42.5
	음식물쓰레기	(116)	2.6	5.2	21.6	22.4	48.3
	재활용쓰레기	(140)	2.9	5.0	24.3	19.3	48.6
	대형폐기물	(18)	0.0	0.0	27.8	38.9	33.3

<표 4-79> 위험성평가 등 작업안전 사고 대응 시스템 도입 (단위: 명/%)

구분	사례수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전체	(500)	2.0	4.2	27.4	26.4	40.0	
직무	수집원	(250)	2.0	4.8	29.6	22.0	41.6
	운전원	(250)	2.0	3.6	25.2	30.8	38.4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1.8	4.0	29.6	25.7	38.9
	음식물쓰레기	(116)	0.9	5.2	25.0	31.0	37.9
	재활용쓰레기	(140)	3.6	4.3	26.4	20.7	45.0
	대형폐기물	(18)	0.0	0.0	22.2	50.0	27.8

<표 4-80> 근로시간(작업시간) 단축 (단위: 명/%)

구분	사례수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전체	(500)	4.6	4.6	26.6	21.6	42.6	
직무	수집원	(250)	4.0	4.4	24.0	19.2	48.4
	운전원	(250)	5.2	4.8	29.2	24.0	36.8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4.9	4.9	24.8	25.7	39.8
	음식물쓰레기	(116)	3.4	6.9	33.6	11.2	44.8
	재활용쓰레기	(140)	4.3	2.9	25.0	21.4	46.4
	대형폐기물	(18)	11.1	0.0	16.7	38.9	33.3

<표 4-81> 작업복 및 작업물품 제공 (단위: 명/%)

구분	사례수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전체	(500)	3.4	5.4	26.6	25.4	39.2	
직무	수집원	(250)	2.4	8.8	24.0	23.6	41.2
	운전원	(250)	4.4	2.0	29.2	27.2	37.2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3.1	6.2	24.8	25.7	40.3
	음식물쓰레기	(116)	1.7	3.4	29.3	26.7	38.8
	재활용쓰레기	(140)	5.7	6.4	25.7	22.9	39.3
	대형폐기물	(18)	0.0	0.0	38.9	33.3	2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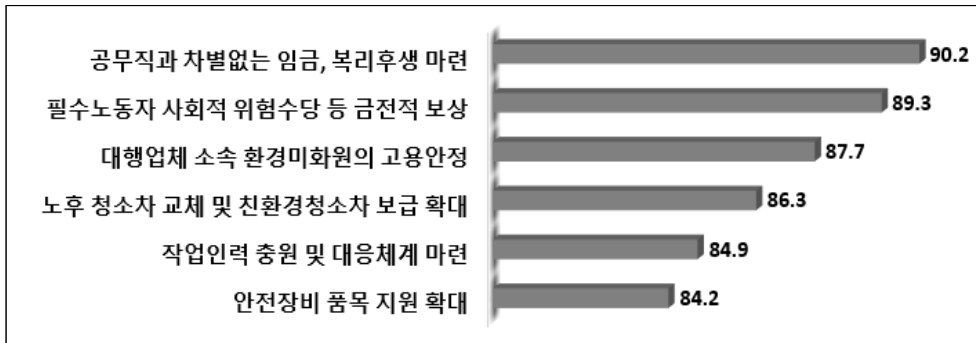
<표 4-82> 스트레스, 정신적 소진 등 심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지원 (단위: 명/%)

구분	사례수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전체	(500)	3.8	5.4	27.0	26.0	37.8	
직무	수집원	(250)	3.2	7.2	29.2	21.6	38.8
	운전원	(250)	4.4	3.6	24.8	30.4	36.8
성상	중량계쓰레기	(226)	4.0	4.4	28.8	27.0	35.8
	음식물쓰레기	(116)	4.3	7.8	21.6	29.3	37.1
	재활용쓰레기	(140)	3.6	5.0	29.3	19.3	42.9
	대형폐기물	(18)	0.0	5.6	22.2	44.4	27.8

(2) 서울지역 환경미화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지원해야 할 과제

환경미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서울시의 지원에 대한 동의 정도는 ‘공무직과 차별 없는 임금, 복리후생 마련(90.2점)’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필수노동자 사회적 위험수당 등 금전적 보상(89.3점)’,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고용안정(87.7점)’, ‘노후 청소차 교체 및 친환경청소차 보급 확대(86.3점)’ 순으로 많았다.

[그림 4-8] 서울시 지원에 대한 동의 정도(100점 환산)



직영 공무직과 차별 없는 임금, 복리후생 마련에 대해서는 93.6%가 동의했고, 음식물쓰레기 환경미화원 중에서는 96.6%가 동의했다. 그리고 93.8%는 필수노동자 사회적 위험수당 등 금전적 보상에 동의했고, 운전원 환경미화원 중에서는 96.4%가 음식물쓰레기 환경미화원 중에서는 95.7%가 필수노동자 사회적 위험수당 등 금전적 보상에 동의했다. 직영 공무직의 임금(수당 포함) 및 복리후생은 작업장려수당, 기말수당, 정근수

당, 체력단련비, 조합비부터 국내시찰, 명절 및 생일, 근로자의 날 선물, 중무식, 정년퇴임식, 체육대회,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여, 조합창립기념일, 모범조합원, 맞춤형복지, 직업연관성 질환검사비 등 그 항목이 20가지 이상이며, 이와 같은 복리후생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에게는 없다.

<표 4-83> 직역 공무직과 차별 없는 임금, 복리후생 마련 (단위: 명/%)

구분	사례수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전체	(500)	0.8	0.2	5.4	24.6	69.0	
직무	수집원	(250)	1.2	0.0	5.6	25.2	68.0
	운전원	(250)	0.4	0.4	5.2	24.0	70.0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1.8	0.4	7.1	27.0	63.7
	음식물쓰레기	(116)	0.0	0.0	3.4	22.4	74.1
	재활용쓰레기	(140)	0.0	0.0	4.3	21.4	74.3
	대형폐기물	(18)	0.0	0.0	5.6	33.3	61.1

<표 4-84> 필수노동자 사회적 위험수당 등 금전적 보상 (단위: 명/%)

구분	사례수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전체	(500)	0.6	5.6	29.2	64.6	
직무	수집원	(250)	1.2	7.6	28.0	63.2
	운전원	(250)	0.0	3.6	30.4	66.0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1.3	5.3	33.2	60.2
	음식물쓰레기	(116)	0.0	4.3	26.7	69.0
	재활용쓰레기	(140)	0.0	7.1	24.3	68.6
	대형폐기물	(18)	0.0	5.6	33.3	61.1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고용안정(일방적 해고금지)에 대해서는 89.8%가 동의했고, 대형폐기물 환경미화원 중에서는 94.4%가, 운전원 환경미화원 중에서는 92.4%가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일방적 해고금지에 동의했다. 노후 청소차 교체 및 친환경 청소차 보급 확대에 동의한 환경미화원은 87.0%이며, 음식물쓰레기 환경미화원 중에서는 89.7%가 노후 청소차 교체에 동의했다. 그리고 86.4%는 작업인력 충원 및 대응체계 마련에 동의했고, 운전원 환경미화원 중에서는 89.6%가 재활용쓰레기 환경미화원

중에서는 88.6%가 작업인력 충원 및 대응체계 마련에 동의했다. 안전장비 품목 지원 확대에 동의한 환경미화원은 86.4%이며, 음식물쓰레기 환경미화원 중에서는 88.8%가 안전장비 품목 지원 확대에 동의했다.

<표 4-85> 대형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고용안정(일방적 해고금지) (단위: 명/%)

구분	사례수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전체	(500)	0.4	0.8	9.0	27.4	62.4	
직무	수집원	(250)	0.4	1.2	11.2	23.6	63.6
	운전원	(250)	0.4	0.4	6.8	31.2	61.2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0.9	0.9	9.7	31.0	57.5
	음식물쓰레기	(116)	0.0	0.9	7.8	25.0	66.4
	재활용쓰레기	(140)	0.0	0.7	9.3	21.4	68.6
	대형폐기물	(18)	0.0	0.0	5.6	44.4	50.0

<표 4-86> 노후 청소차 교체 및 친환경청소차 보급 확대 (단위: 명/%)

구분	사례수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전체	(500)	0.4	1.0	11.6	27.2	59.8	
직무	수집원	(250)	0.0	1.6	13.2	23.6	61.6
	운전원	(250)	0.8	0.4	10.0	30.8	58.0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0.0	0.9	11.9	29.6	57.5
	음식물쓰레기	(116)	0.0	0.0	10.3	29.3	60.3
	재활용쓰레기	(140)	1.4	2.1	12.1	20.7	63.6
	대형폐기물	(18)	0.0	0.0	11.1	33.3	55.6

<표 4-87> 작업인력 충원 및 대응체계 마련 (단위: 명/%)

구분	사례수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전체	(500)	0.4	0.8	12.4	31.8	54.6	
직무	수집원	(250)	0.8	0.0	16.0	29.2	54.0
	운전원	(250)	0.0	1.6	8.8	34.4	55.2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0.9	1.3	10.6	38.5	48.7
	음식물쓰레기	(116)	0.0	0.9	16.4	26.7	56.0
	재활용쓰레기	(140)	0.0	0.0	11.4	25.0	63.6
	대형폐기물	(18)	0.0	0.0	16.7	33.3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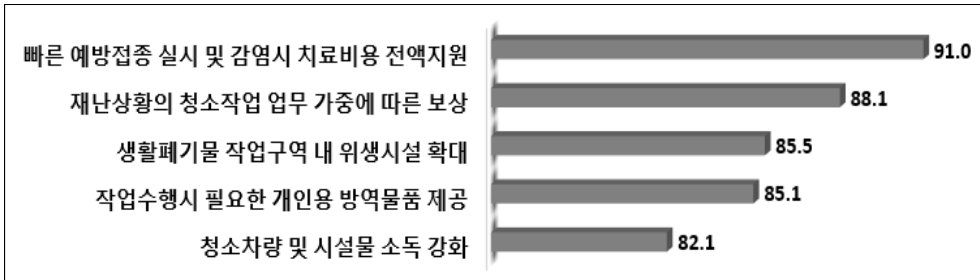
<표 4-88> 안전장비 품목 지원 확대 (단위: 명/%)

구분	사례수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전체	(500)	0.4	0.8	12.4	34.6	51.8	
직무	수집원	(250)	0.8	1.2	11.2	33.6	53.2
	운전원	(250)	0.0	0.4	13.6	35.6	50.4
	종량제쓰레기	(226)	0.9	1.3	12.4	37.2	48.2
성상	음식물쓰레기	(116)	0.0	0.0	11.2	36.2	52.6
	재활용쓰레기	(140)	0.0	0.7	12.9	30.0	56.4
	대형폐기물	(18)	0.0	0.0	16.7	27.8	55.6

(3)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서울시가 지원해야 할 과제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서울시의 지원에 대한 동의 정도는 ‘감염방지를 위한 빠른 예방접종 실시 및 감염 시 치료비용 전액지원(91.0점)’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재난상황의 청소작업 업무 가중에 따른 보상(88.1점)’, ‘생활폐기물 작업구역 내 위생시설 확대(85.5점)’, ‘작업수행 시 필요한 개인용 방역물품 제공(85.1점)’, ‘청소차량 및 시설물 소독 강화(82.1점)’ 순으로 많았다.

[그림 4-9] 코로나19 재난 시 서울시 지원에 대한 동의 정도(100점 환산)



감염방지를 위한 빠른 예방접종 실시 및 감염 시 치료비용 전액지원에 대해서는 95.2%가 동의했고, 음식물쓰레기 환경미화원 중에서는 97.4%가 동의했다. 환경미화원의 92.8%는 재난상황의 청소작업 업무 가중에 따른 보상에 동의했고, 음식물쓰레기 환경미화원 중에서는 95.7%가 동의했다. 생활폐기물 작업구역 내 위생시설 확대에 동의한 환경미화원은 86.8%이며, 운전원 중에서는 89.6%가 생활쓰레기(종량제) 환경미화원 중에서는 89.4%가 생활폐기물 작업구역 내 휴게·샤워시설 등 위생시설 확대에 동의했

다. 그리고 86.8%는 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 작업수행 시 필요한 개인용 방역물품 제공에 동의했다. 생활쓰레기(종량제) 환경미화원 중에서는 88.5%가 동의했다. 또한, 청소차량 및 시설물 소독 강화에 동의한 환경미화원은 79.4%이며, 생활쓰레기(종량제) 환경미화원 중에서는 83.2%가 동의했다.

<표 4-89> 감염병지를 위한 빠른 예방접종 실시 및 감염 시 치료비용 전액지원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전체	(500)	0.4	4.4	26.0	69.2	
직무	수집원	(250)	0.4	3.6	23.6	72.4
	운전원	(250)	0.4	5.2	28.4	66.0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0.4	4.4	31.0	64.2
	음식물쓰레기	(116)	0.0	2.6	23.3	74.1
	재활용쓰레기	(140)	0.7	5.0	19.3	75.0
	대형폐기물	(18)	0.0	11.1	33.3	55.6

<표 4-90> 재난상황의 청소작업 업무 가중에 따른 보상 (단위: 명/%)

구분	사례수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전체	(500)	0.4	0.4	6.4	32.0	60.8	
직무	수집원	(250)	0.8	0.4	7.6	32.0	59.2
	운전원	(250)	0.0	0.4	5.2	32.0	62.4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0.9	0.4	7.1	35.4	56.2
	음식물쓰레기	(116)	0.0	0.0	4.3	31.0	64.7
	재활용쓰레기	(140)	0.0	0.7	7.1	25.7	66.4
	대형폐기물	(18)	0.0	0.0	5.6	44.4	50.0

<표 4-91> 생활폐기물 작업구역 내 위생시설 확대(휴게·샤워시설 등) (단위: 명/%)

구분	사례수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전체	(500)	0.4	0.6	12.2	30.4	56.4	
직무	수집원	(250)	0.0	0.8	15.2	26.8	57.2
	운전원	(250)	0.8	0.4	9.2	34.0	55.6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0.0	0.4	10.2	35.0	54.4
	음식물쓰레기	(116)	0.0	0.9	12.9	25.0	61.2
	재활용쓰레기	(140)	1.4	0.7	15.0	26.4	56.4
	대형폐기물	(18)	0.0	0.0	11.1	38.9	50.0

<표 4-92> 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 작업수행 시 필요한 개인용 방역물품 제공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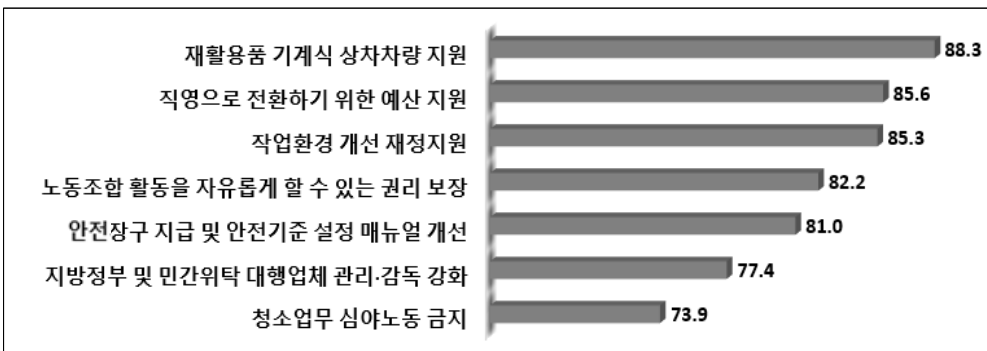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전체	(500)	0.2	0.6	12.4	32.2	54.6	
직무	수집원	(250)	0.4	0.0	12.4	30.0	57.2
	운전원	(250)	0.0	1.2	12.4	34.4	52.0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0.4	0.0	11.1	37.6	50.9
	음식물쓰레기	(116)	0.0	0.9	13.8	29.3	56.0
	재활용쓰레기	(140)	0.0	1.4	12.1	25.0	61.4
	대형폐기물	(18)	0.0	0.0	22.2	38.9	38.9

<표 4-93> 청소차량 및 시설물 소독 강화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전체	(500)	0.8	19.8	29.6	49.8	
직무	수집원	(250)	1.2	18.8	27.6	52.4
	운전원	(250)	0.4	20.8	31.6	47.2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0.4	16.4	35.0	48.2
	음식물쓰레기	(116)	2.6	19.8	25.9	51.7
	재활용쓰레기	(140)	0.0	24.3	23.6	52.1
	대형폐기물	(18)	0.0	27.8	33.3	38.9

(4) 환경미화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할 과제

[그림 4-10] 중앙정부 지원에 대한 동의 정도(100점 환산)



환경미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 지원에 대한 동의 정도는 '재활용품 기계식 상차차량 지원(88.3점)'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 지원(85.6점)', '작업환경 개선 재정지원(85.3점)', '노동조합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 보장(82.2점)', '안전장구 지급 및 안전기준 설정 매뉴얼 개선(81.0%)' 순으로 많았다.

환경미화원의 89.4%는 재활용품 기계식 상차차량 지원에 동의했고, 재활용쓰레기 환경미화원 중에서는 90.0%가 정부가 재활용품 기계식 상차차량을 지원하는 것에 동의했다. 그리고 84.8%는 생활폐기물 공급서비스 공급방식을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 지원에 동의했다. 상차원(수집원) 중에서는 79.6%가, 운전원 중에서는 90.0%가 직영 전환에 따른 정부예산 지원에 동의했다. 작업환경 개선(휴식공간, 화장실, 우천 설비 등) 재정지원에 동의한 환경미화원 85.6%이며, 음식물쓰레기 환경미화원 중에서는 90.5%가 동의했다. 그리고 75.8%는 노동조합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 보장에 동의했다. 상차원(수집원) 중에서는 69.6%가, 운전원 중에서는 82.0%가 동의했다.

안전장구 지급 및 안전기준 설정 매뉴얼 개선에 76.0%가 동의했고, 대형폐기물 환경미화원 중에서는 83.3%가 동의했다. 그리고 71.4%는 지방정부 및 민간위탁 대행업체 관리·감독 강화에 동의했다. 상차원(수집원) 중에서는 66.4%가, 운전원 중에서는 76.4%가 지방정부 및 민간위탁 대행업체 관리·감독 강화에 동의했다. 청소업무 심야노동 금지에 동의한 환경미화원은 69.6%이며, 재활용쓰레기 환경미화원 중에서는 75.0%가, 음식물쓰레기 환경미화원 중에서는 72.4%가 동의했다.

<표 4-94> 재활용품 기계식 상차차량 지원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전체	(500)	1.0	9.6	24.8	64.6	
직무	수집원	(250)	1.2	11.2	22.0	65.6
	운전원	(250)	0.8	8.0	27.6	63.6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1.3	8.8	31.9	58.0
	음식물쓰레기	(116)	0.9	12.1	22.4	64.7
	재활용쓰레기	(140)	0.7	9.3	15.7	74.3
	대형폐기물	(18)	0.0	5.6	22.2	72.2

<표 4-95> 생활폐기물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을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 지원 (단위: 명/%)

구분	사례수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전체	(500)	1.2	3.6	10.4	21.2	63.6	
직무	수집원	(250)	0.8	4.8	14.8	15.2	64.4
	운전원	(250)	1.6	2.4	6.0	27.2	62.8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1.3	4.4	10.6	25.2	58.4
	음식물쓰레기	(116)	2.6	5.2	10.3	16.4	65.5
	재활용쓰레기	(140)	0.0	1.4	10.0	17.1	71.4
	대형폐기물	(18)	0.0	0.0	11.1	33.3	55.6

<표 4-96> 작업환경 개선(휴식 공간, 화장실, 우천 설비 등) 재정지원 (단위: 명/%)

구분	사례수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전체	(500)	0.4	1.4	12.6	27.8	57.8	
직무	수집원	(250)	0.0	2.0	15.2	24.8	58.0
	운전원	(250)	0.8	0.8	10.0	30.8	57.6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0.4	2.2	15.9	30.1	51.3
	음식물쓰레기	(116)	0.9	0.0	8.6	25.9	64.7
	재활용쓰레기	(140)	0.0	1.4	10.0	26.4	62.1
	대형폐기물	(18)	0.0	0.0	16.7	22.2	61.1

<표 4-97> 노동조합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단위: 명/%)

구분	사례수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전체	(500)	1.0	1.6	21.6	19.2	56.6	
직무	수집원	(250)	0.8	1.6	28.0	12.0	57.6
	운전원	(250)	1.2	1.6	15.2	26.4	55.6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0.4	2.7	24.3	20.4	52.2
	음식물쓰레기	(116)	1.7	0.9	19.8	20.7	56.9
	재활용쓰레기	(140)	0.7	0.7	20.0	14.3	64.3
	대형폐기물	(18)	5.6	0.0	11.1	33.3	50.0

<표 4-98> 안전장구 지급 및 안전기준 설정 매뉴얼 개선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전체	(500)	2.0	22.0	26.2	49.8	
직무	수집원	(250)	1.6	26.4	20.4	51.6
	운전원	(250)	2.4	17.6	32.0	48.0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3.5	23.0	27.9	45.6
	음식물쓰레기	(116)	1.7	20.7	23.3	54.3
	재활용쓰레기	(140)	0.0	22.1	25.7	52.1
	대형폐기물	(18)	0.0	16.7	27.8	55.6

<표 4-99> 지방정부 및 민간위탁 대행업체 관리·감독 강화 (단위: 명/%)

구분	사례수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전체	(500)	4.4	3.8	20.4	20.8	50.6	
직무	수집원	(250)	4.8	5.6	23.2	16.0	50.4
	운전원	(250)	4.0	2.0	17.6	25.6	50.8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4.9	4.9	20.4	24.3	45.6
	음식물쓰레기	(116)	5.2	5.2	18.1	21.6	50.0
	재활용쓰레기	(140)	2.1	1.4	22.1	12.1	62.1
	대형폐기물	(18)	11.1	0.0	22.2	38.9	27.8

<표 4-100> 청소업무 심야노동 금지 (단위: 명/%)

구분	사례수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전체	(500)	8.0	6.2	16.2	21.4	48.2	
직무	수집원	(250)	7.2	6.4	18.8	16.0	51.6
	운전원	(250)	8.8	6.0	13.6	26.8	44.8
성상	종량제쓰레기	(226)	8.8	8.8	16.4	22.6	43.4
	음식물쓰레기	(116)	6.0	5.2	16.4	22.4	50.0
	재활용쓰레기	(140)	7.9	2.9	14.3	18.6	56.4
	대형폐기물	(18)	11.1	5.6	27.8	22.2	33.3

4. 정성조사 결과

1) 서론

이 절에서는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 근로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서울지역 환경미화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포커스 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 결과를 이용하였다.

FGI 참여자들의 기본정보 및 근무지역은 다음 <표 4-101>과 같다. 참여자들의 직 무는 운전원과 상차원, 재활용센터 내 작업원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그들의 경력기간은 최소 첫 1년 8개월부터 20년까지 다양했으며 대다수가 시작은 상차원 진입하지만, 이후 운전원으로 전환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101> FGI 참여자 정보

참여자	근무지역	직종	참여자	근무지역	직종
1	도봉구	운전원	2	강남구	운전원
2	도봉구	상차원	3	강남구	상차원
3	도봉구	운전원	4	강남구	작업원(재활용센터 분류)
4	도봉구	상차원	5	강남구	운전원
1	금천구	상차원	1	구로구	운전원
2	금천구	운전원	2	구로구	운전원
3	금천구	상차원	3	구로구	상차원
4	금천구	운전원	4	구로구	작업원(재활용센터 분류)
1	강남구	운전원	5	구로구	상차원

2) 고용안정

(1) 고용 승계

서울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은 생활폐기물 서비스 자체가 성과와 서비스 질 측정이 쉽고, 노동집약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직접 하기보다는 민간위탁에서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공공 서비스로 여겨지고 있다. 많은 지방정부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9년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가로청소의 84%, 일반 쓰레기의, 음식물쓰레기는 100%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

고 있다.

각 자치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대행계약은 통상적으로 3년 혹은 5년으로 계약되며 이후 평가를 통해 연장하거나 혹은 다른 대행사와 새롭게 계약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바로 고용안정이다. FGI에서도 일부 참여자들은 자치구의 업체 변경으로 인해 고용불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참여자 1은 회사가 바뀌면 퇴사 처리되기 때문에 고용 승계가 고용안정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도봉 3은 업체가 바뀌었을 때, 이전 회사에 찍히게 되거나 문제가 있는 근로자로 여겨지면 새로운 업체에서 고용을 거부하게 된다고 이야기 하였다. 도봉 1은 고용 승계가 조건이다 보니, 회사 내에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왕따를 시켜 스스로 퇴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해고가 이루어진다고 언급했다.

근무지	참여자	인터뷰 내용
강남	3	저희는 그리고 고용승제도 안되고 회사 옮길 때 퇴사처리 되고 옮긴 거거든요. 3년에 한 번 그렇게 움직이면 관뉘지는 사람이 많아요.
강남	1	그게 고용불안이죠. 그래서 민간위탁이 문제가 되는 게 고용승계가 이뤄지지만 연차가 없어지고 근속수당도 없어져요. 그게 계속 고용승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거죠.
금천	2	노조 가입한 사람만 승계가 되고 가입 안한 사람은 승계가 안됐어요.
도봉	3	거의 일을 하다가 회사에 찍히게 되면 그 다음부터 안 되는 거죠.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도봉	1	그렇죠. 그전에 그랬대요. 마음에 안 들면 이 사람을 딱 꼬집어서 뭐라고 그러지 지금. 그러니까 따돌림을 이제 당하게끔 한 다음에

한편, 업체가 변경되지 않아도 고용 안정성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FGI 일부 참여자들은 민간위탁업체가 노동자 처우나 계약상황에 대한 위반 등 문제가 발생하여서 구청에서 계약이 해지 된 후 들어오는 회사가 기존 회사 고용주의 가족들이 사업자등록증만 바꾸어 운영하는 형태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구조이며, 특히 고용 연속성은 존재하지만, 근무조건이나 근무환경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임을 언급하였다.

근무지	참여자	인터뷰 내용
도봉	1	계약 못하면 어차피 또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입찰 받아. 이제 계약이 또 승계가 될 거잖아요. 근데 여기 회사는 처음 들어왔을 때 아버지 그다음에 고모 부 그리고 첫 번째 사장이 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구로	2	아뇨. 대표만 바뀌고 19년 동안 회장이 아들에게 주고 그런 식인거죠.

(2) 정년보장

생활폐기물업 연합회 조사(2018)에 따르면, 전국 397개 민간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의 연령대는 55세 미만이 59.6%가 가장 많고, 이후 55세-60세가 25.88%, 60세 이상은 14.52%로 나타났다. 그리고 민간대행업체의 경우 정년을 60세로 그리고 축탁직의 형태로 평균 65세까지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근무지	참여자	인터뷰 내용
도봉	2	그렇게 쓰고 50대 후반인 분들은 대체적으로는 아는데 이게 연봉으로 해서 1년 계약인줄 몰라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너희들은 그냥 자르면 우리가 자를 수 있다. 그런 생각에 1년 해가지고 계약 식으로 이제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간을 알기 때문에. 이게 연봉제인지 아니면. 이제 축탁으로 해서 1년 계약직으로 하는 건지 알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분들은 모르죠. 그거 자체에 대해서.
도봉	1	지금 저기 노원하고 도봉구가 지금 문제대요. 노원은 지금 60대를 다 쳐낸다고. 6자 들어간 만 60세 사람들을. 아마 다 쳐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회사하고 지금 회사가 세 개거든요. 한 군데가 있어요. 회사가 한 군데 모여 있지. 지금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봤는데 옆에는 50대가 한 명인가 두 명밖에 없어요. 나머진 나머지 20대, 30대, 40대. 왜냐하면 이 한 명당 부과 보조금이 들어오잖아요. 얘기를 하더라도. 인당 20대에서 30대에서 한 1200 정도

FGI 결과 참여자들은 정년이후 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 중 계약 방식이 촉탁 직 1년 계약으로 매해 계약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근로자들도 다수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한편, 환경미화 업무가 강도 높은 육체노동이 요구되고, 최근 청년 취업난으로 청년 채용시 청년고용지원금을 업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령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이 확실치 않다고 언급하였다.

3) 노동조건

(1) 근로시간

환경부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포럼자료(2018)에 따르면, 주간근로는 03시-12시 혹은 05시-14시이며, 야간근로는 20시-5시를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환경부는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되 새벽작업으로 인한 피로누적, 짧은 가시거리에 따른 사고 위험 해소를 위해 청소작업 시간을 주간으로 운영하도록 원칙을 정하였다. FGI 일부 참여자들은 야간근로를 지속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근로 시간 역시 21시-6시로 운영되는 곳도 있어 야간근무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계속해서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야간근무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중재 재해 위험성이 높다고 언급하였다.

근무지	참여자	인터뷰 내용
강남	3	야간은 계속 야간근무만 하고 주간은 계속 주간근무만 하는 식으로
구로	4	대형폐기물만 주간이고 다 야간이에요.
금천	2	아무래도 밤에 운전하니까. 위험해서 사고가 두 건 연속으로 난 적이 있어요. 골목은 작는데 시야확보가 안되고 불법주차 때문에 통행이 불가능한 게 기사 입장에서 어렵죠.
금천	4	낮에 잠을 자도 피곤해요. 야간이라도 졸리죠. 그리고 새벽은 차들이 달리는 게 무섭게 달리거든요.
금천	3	특히 비나 눈이 왔을 때 봉투가 안보이니까 밟으면 100프로 미끄러지지.

근무지	참여자	인터뷰 내용
구로	3	운전 하다보면 중앙선 침범이나 역주행도 할 수 있고 오토바이도 많으니까 안전사고들도 있을 수 있고 위협적이죠. 청소차량은 작업할 때는 천천히 다니니까 청소차량이 사고를 내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런데 작업이 끝나고 버리러 갈 때 시간에 쫓기거나 빨리 갔다 버려야하니까 그 와중에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죠.

한편, 주간근로에서는 출근길 차량들로 인해 처리장과 작업환경 이동시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초과로 근무해야 하는 일들이 지속해서 생기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GI 일부 참여자들은 주간 업무 시에 주민들이 시선들이나 차량의 지연, 실컷이 없는 문제 등이 발생한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주민들이 악취 민원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근무지	참여자	인터뷰 내용
금천	2	주간으로 가면 반대하는 사람 주간에 많아요. 왜냐하면 냄새도 있고 골목이나 이런데서 장사하거나 좌판 깔고 하면 음식물 냄새 같은 게 싫다고 이거지. 미관도 안 좋고 차 지나갈 때 냄새도 많이 나잖아.
금천	4	그리고 출근시간에 차들이 엄청 빵빵거려요. 빨리 처리하고 비키라고.
구로	5	그렇죠. 작업공간도 되게 적어요. 42분 일하고 18분간 마대자루 묶어서 내리고 그러다보니 실제 쉬어야 할 시간에 못 쉬죠.
도봉	3	주간일 할 때는 요즘에는 더위가 어렵죠. 더위를 피할 곳이 없으니까.

<표 4-10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주간작업 여부

연번	자치구	주간작업 여부
1	종로구	직영 : 주간, 대행 : 야간
2	중구	직영 : 주간, 대행 : 야간
3	용산구	직영 : 주간, 대행 : 야간
4	성동구	직영·대행 : 야간
5	광진구	직영 : 주간, 대행 : 야간
6	동대문구	대행 : 야간

연번	자치구	주간작업 여부
7	중랑구	직영 : 주간, 대행 : 야간
8	성북구	직영 : 주간, 대행 : 야간
9	강북구	직영·대행 : 야간
10	도봉구	직영·대행 : 주간
11	노원구	직영 : 주간, 대행 : 야간
12	은평구	대행 : 야간
13	서대문구	대행 : 일부업체 주간작업
14	마포구	직영 : 주간, 대행 : 야간
15	양천구	대행 : 야간
16	강서구	직영 : 주간, 대행 : 야간
17	구로구	직영 : 주간, 대행 : 야간
18	금천구	직영 : 주간, 대행 : 야간
19	영등포구	직영 : 주간, 대행 : 야간
20	동작구	대행 : 야간
21	관악구	직영·대행 : 야간
22	서초구	직영 : 주간, 대행 : 야간
23	강남구	대행 : 야간
24	송파구	대행 : 야간
25	강동구	직영·대행 : 주간

생활폐기물 운반 및 수집 사무의 경우 근로기준법 의해 주 40시간에 유급휴일 8시간을 더해 주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이다. 생활폐기물 양이 많은 경우에는 초과근로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의 주간업무 권고로 인해 시간이 조정이 되었어도 쓰레기를 적환장 시간에 맞춰 운반해야하기 때문에 더 일찍 나와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 19 이후 생활 쓰레기양이 증가한 최근에는 그러한 경향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FGI 일부 참여자들은 코로나 19로 쓰레기양이 많아진 상태에서 주간 업무 권고가 되다 보니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들이 자발적으로 2시간 먼저 나가는 일이 태반이라고 지적하였다.

근무지	참여자	인터뷰 내용
구로	4	문제는 그게 몸이 배어 있어요. 연휴 끝나면 양이 많아지잖아요. 작업자들은 아니까 출근시간보다 2시간 미리 나와요. 그래서 시간 안에 일을 다 끝내버려요. 그래서 일이 많고 힘든데 돈을 왜 안주냐고 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십년 이상 그렇게 해서 연장이 발생할 수가 없죠.
구로	1	원래 출근시간 9시인데 7시 30분부터 나가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뽀뽀해서 겨우 시간 맞춰 끝나신다고
구로	2	교통체증이 있는 시간은 작업도 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맞춰서 나가는 거죠.
도봉	4	네, 저희는 월요일에 밥을 못 먹어요. 아예. 1톤은 큰 통을 부어야 하니까 그리고 화요일부터 토요일은 소각장 문 닫는 시간 전에 가야해요. 그래서 막 옮겨 실어야 하고 시간에 쫓겨요. 그래서 맨날 밥 먹을 시간도 없고 그래요.

다음으로 생활폐기물의 경우 명절 당일을 제외하고는 지속해서 제공해야 하는 공공 서비스이기 때문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빈틈없는 인력배치가 중요하다. 이에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들은 근무 스케줄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도 변경되기가 어렵다. FGI 참여자들은 명절 연휴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으며, 심지어 가족 장례가 발생해도 하루 밖에 쉴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근무지	참여자	인터뷰 내용
도봉	1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연차를 쓰라고 그래요. 저희는 월차가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월차를 정해야 되는데 월차라는 게 없어요. 서류상에. 아예 그냥 날짜 딱 해서 연차라고 돼 있어요. 원래 그 날짜를 정해야 되잖아요. 쉬고 싶은 날에. 근데 정할 수가 없어요. 몇 명을 정하는데 팀장이라는 사람이 지기가 적어 와서 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이 날 쉬어.
도봉	3	제가 아는 형님이 상당해서 하루 밖에 못 쉬고 들어왔었어요. 안 그러면 회사 눈치가 보이니까.

근무지	참여자	인터뷰 내용
도봉	2	임의대로 일단 이렇게 표를 이제 짍니다. 이렇게. 이제 연차를 해가지고 누구누구 첫째 주 누구누구 둘째 주 이렇게 해서 짜고 보여줘요. 보여주고 나서 이제 변경할 사람들은 얘기를 미리 해가지고 다시 변경을 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음식물 저이고 저는 이제 재활용 팀이고 운전기사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연차를 쓸 수가 없어요.
금천	4	스케줄 자체가 없고 회사에서 지정이 되면 그냥 계속 해.
금천	4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니까 휴일 있어도 다 일 하는 거지

(2) 임금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산정 방법 규정에 따르면, 일급을 기준으로 임금지급형태에 따라 기본급을 산정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임금은 각 지자체 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GI 조사에서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한 모든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들이 가이드라인에 못 미치는 기본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GI 일부 참여자들은 보통 인부 노임단가의 50%를 적용받거나 최저임금으로 기본급이 산정된다고 언급하였다. 실제로 그들이 제공한 급여 명세서를 살펴보면 최대 2,265,500원- 최소 1,952,789원의 기본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월급명세서에 세부항목에 대한 표기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당의 경우 원가 산정 규정에 의해 제 수당으로써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 휴가수당, 특수작업수당(위험수당), 운전수당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곳도 있었지만 지급되지 않는 자치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자치구 마다 지급이 누락되고 있는 수당의 항목은 차이가 있었으며 수당자체가 특별근로수당으로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지 않는 민간위탁 업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GI 일부 참여자들은 야간근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음에도 야간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으며, 회사에 문제제기를 했으나 받아드려지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 일 급: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중 보통 인부 노임단가
- 시 급: 일급 ÷ 8시간
- 월 급: 일급 × 월 근무일수
- 연 봉: 월급 × 12개월

공 표 일		2021.1.1	2020.9.1	2020.1.1	2019.9.1
번호	직 종 명				
1002	보통 인부	141,096	138,989	138,290	130,264

A구 **환경 (06월 분) (운전원)	
기본급	2,116,926
직책, 직무수당	0
운전/위험수당	100,000
야간근로수당	984,583
연장근로수당	526,085
휴일근로수당	0

B구 **미화 (06월 분) (상차원)	
기본급	1,925,789
경력수당	50,000
근속수당	10,000
조정수당	39,900
연장수당	724,755
야간수당	920,261
휴일근로수당	141,216

C구 **환경 (05월 분) (상차원)	
기본급	2,265,500
연장근로수당	984,583

근무지	참여자	인터뷰 내용
구로	2	거기에서 60% 정도만 받죠.
구로	3	수령액이 다 합쳐서 350정도 받죠.
구로	5	저희는 규정이 애매해서 최저임금으로 받아요. 최저임금에 수당이라고 해봐야 토요일 특근수당 말고는 없습니다.
도봉	2	보조금도 없고. 직책 수당도 없고. 직무 수당도 연장 근로 연차 수당 아니 연차 수당은 제가 1년이 안 됐으니까 없다고 치더라도 특별 수당 같은 거라도
도봉	3	특별근로수당이 운전수당 같아요. 그거 하나 받거든요. 운전수들만 특별근로수당이라고 주거든요.
강남	6	쪼개 놓은걸 보면 기사와 작업원의 금액차이는 있어요. 11만 원 이상의 차이는 있는데 포함은 안 되어 있지만 기본급 차이는 있는데 표기는 안 되어 있어요.

근무지	참여자	인터뷰 내용
도봉	4	운전기사가 상차원보다 20만원 많아요.
강남	4	네 추가수당 별도로 주고 일하는 시간 측정해서 하는 건 적용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강남구에도 이런 회사가 없어요. 이번 임금 협상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돈도 없고 해본적도 없다고 안 된다고 했어요. 월급에 수당을 넣어서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했어요.
구로	1	근무 시간이 야간이면 거기에 1.5배이고 휴일수당도 있고 초과근무 수당도 원래는 있어야 하고 특수작업수당 9만원도 붙어야 하고 운전수당20만원이 또 붙고

(3) 상여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상여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에 의해 기본급의 연 400% 범위 내에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FGI 조사결과, 각 자치구의 민간업체들 마다 성과급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명절에 상여금을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예 성과급이나 상여금 자체가 없다고 대답한 참여자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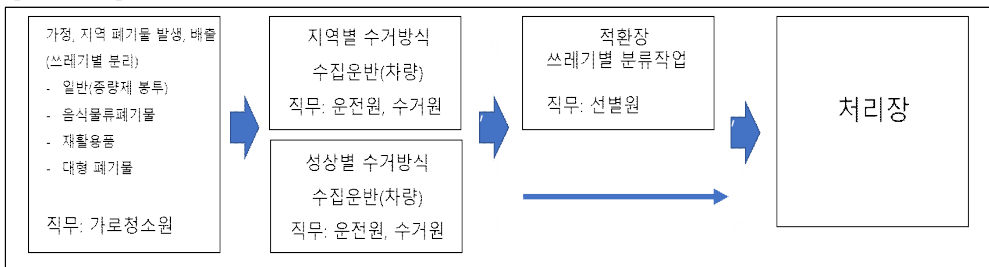
근무지	참여자	인터뷰 내용
도봉	3	성과금은 없죠
구로	5	상여금 말고 따로 단체협약을 통해서 각 20만원씩 줘요. 상여는 따로 있고 성과는 기본급 50% 명절에 25%씩 나눠서 줘요.
강남	4	없어요. 연봉계약을 하면 그걸 13개로 쪼개서 보너스 개념으로 빼놓고 그 나머지 부분을 매달 지급해요.
강남	5	기존에는 상여금이라고 해서 250%가 있어서 그걸 나눠줬는데 연봉제로 바뀌면서 그걸 매달준 것으로 된 거죠.

4) 업무 수행 방식

(1) 업무 수행과정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체계는 3단계 혹은 4단계로 나누어져 운영된다. 첫 단계로 가정 및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 그 주변을 정리를 한다. 두 번째 단계로써 수집과 운반과정인데, 이 과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수거 체계에 따라 달라진다. 지역별 수거방식은 특정구역을 맡은 업체가 해당구역의 쓰레기를 모두 수거하는 방식이다. 성상별 수거방식은 업체별로 음식물 폐기물, 생활폐기물, 재활용 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나누어 해당 종류만 수거하는 방식이다. 이후 수거체계에 따라서 지역별 수거의 경우, 세 번째 단계로 적환장에서 쓰레기를 분류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써 각 쓰레기 종류별 처리장으로 옮겨진다. 성상별 수거의 경우 적환장 과정이 없고, 바로 처리장으로 옮겨진다.

[그림 4-11]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체계



FGI 조사에 따르면 참여자들은 성상별로 수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쓰레기의 종류별로 따로 수거하는 것이다. 각 성상은 다르지만 각자 맡은 지역별 쓰레기를 운전원과 수거원은 수집, 상차, 정리, 이동, 하차를 하고, 거리청소작업은 줍기, 쓸기, 이동이라는 업무수행과정으로 이루어졌다. 다만, 각 쓰레기 종류별 그 과정에서의 산업재해 위험이나 어려운 점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지	참여자	인터뷰 내용
도봉	2	아침에 출근해서 이제 우리 휴게실에서 옷 갈아입고 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지하에 있어요. 차고지가 지하에 내려가서 차를 끌고 바로 출근합니다.

근무지	참여자	인터뷰 내용
도봉	4	생활은 아침 6시에 나와 가지고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1톤차로 4대를 해야 해요. 4대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우리는 1톤차인데 또 집어서 던져야 해서 어깨가 많이 망가져요. 일 하는 거는 그냥 6시에 나가서 원래 5시까지인데 1시에 들어와서 마무리를 또 해야 되거든요. 마대 깔고 그런 것 작업 한 시간하고 대충 씻고 5시 못되어서 들어가는 해요.
강남	1	여기도 지역 안에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 그렇게 다 따로 하시고?
강남	2	네

(2) 3인 1조

폐기물 시행 규칙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에 의거하여 3명(운전원 1명, 수거원 2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원가산정 시 과소 추정 될 경우, 이 규정이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를 방지하는 안전기준으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은주의원 자료에 따르면, 자치구 중 직영은 3인1조, 대행은 2인1조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종로구·용산구·성동구·광진구·노원구·강서구·금천구 등 7곳이고, 직영·대행 모두 3인1조로 운영하는 곳은 중랑구·마포구·구로구·영등포구·관악구·서초·강동구 등 7곳으로 나타났다.

<표 4-10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3인1조 작업 여부

연번	자치구	3인1조 작업 여부
1	종로구	직영 : 3인1조, 대행 : 2인1조
2	중구	직영·대행 : 2인1조
3	용산구	직영 : 3인1조, 대행 : 2인1조
4	성동구	직영 : 3인1조, 대행 : 2인1조
5	광진구	직영 : 3인1조, 대행 : 2인1조
6	동대문구	대행 : 일부업체 3인1조
7	중랑구	직영·대행 : 3인1조

연번	자치구	3인1조 작업 여부
8	성 북 구	직영·대행 : 2인1조
9	강 북 구	직영·대행 : 2인1조
10	도 봉 구	직영·대행 : 2인1조
11	노 원 구	직영 : 3인1조, 대행 : 2인1조
12	은 평 구	대행 : 2인1조
13	서대문구	대행 : 일부업체 3인1조
14	마 포 구	직영·대행 : 3인1조
15	양 천 구	대행 : 일부업체 3인1조
16	강 서 구	직영 : 3인1조, 대행 : 2인1조
17	구 로 구	직영·대행 : 3인1조
18	금 천 구	직영 : 3인1조, 대행 : 2인1조
19	영등포구	직영·대행 : 3인1조
20	동 작 구	대행 : 3인1조
21	관 악 구	직영·대행 : 3인1조
22	서 초 구	직영·대행 : 3인1조
23	강 남 구	대행 : 3인1조
24	송 파 구	대행 : 3인1조
25	강 동 구	직영·대행 : 3인1조

FGI 참여자들에 따르면 환경부 권고 사항인 3인 1조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3인 1조로 인력을 확충하면 단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2인 1조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특히, 연차를 사용하거나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무를 사용하는 경우 운전원 혼자서 다니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자치구에서 3인 1조를 권고함에 따라 인력이 충원되어 3인 1조로 운영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인 1조로 할 때 보다 훨씬 많은 지역을 맡아야 하는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지	참여자	인터뷰 내용
도봉	1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5톤차는 원래 3인 1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3.5톤 같은 경우는 2인 1조가 돼야 되고 그런데 생태 5톤 같은 경우도 2인 1조예요 저희 회사는 그거 두 대예요.
도봉	2	재활용이 1인. 1인 1조죠. 그리고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네 계시는데 그전에 들어오기 전에는 저번 달인가 저희가 돌아가면서 연차를 써가지고 한 바퀴를 돌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달을 갖다가 8명이니까 두 달 돌아서 잤는데. 그건 제가 이제 지역을 전체 지역을 하면서 이제 돌았어요 그러면은 제가 혼자 돌았을 경우에. 저랑 같이 일했던 분이 그 지역을 다 해야 됩니다.
도봉	4	음식물만 3인 1조 하고 있어요.
도봉	3	5톤은 안 하는 게 누가 연차라도 가면 어렵잖아요. 그러면 2인 1조예요. 실질적으로는 거기는 3인 1조라 하는데 사실 2인 1조죠.
금천	1	3인 1조 하고 계세요?
금천	2	그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금천	3	이번에 인원충원하면서 그건 맞춰졌어요.
구로	3	배출 시간대가 지역에 따라 몇 시까지 내놓으세요. 하는데 내놓는 시간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수거한 뒤에 내놓기도 하고 그래요. 나중에 내놓는 곳이 많아서 더 쌓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마다 다른데 우리는 같이 해요. 다른 사람 한명 미리 내려놓고 다른 작업자들이 도는 건데 3인1조가 2인 1조처럼 움직이고 먼저 내린 사람만큼 작업량이 많아지긴 하죠.

5) 산업재해

(1) 산업재해 경험

2015년부터 2020년 서울지역에서 일하다가 산재를 인정한 환경미화원은 5천 700명으로 사고재해자는 5천 456명, 질병재해자는 244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41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매일노동뉴스, 2020.10.15.).⁵²⁾

<표 4-104> 2015~2020년 8월 서울지역 환경미화원 산재 신청 및 승인 현황(괄호는 사망자)

구분	총합계		사고		질병	
	신청	승인	신청	승인	신청	승인
2015	1,008(12)	900(8)	938(8)	883(8)	70(4)	17(0)
2016	1,015(11)	903(6)	940(6)	874(6)	75(5)	29(0)
2017	996(15)	897(11)	942(9)	872(9)	54(6)	25(2)
2018	1,180(9)	1,096(6)	1,096(6)	1,048(5)	84(3)	48(1)
2019	1,243(12)	1,144(5)	1,135(3)	1,089(3)	108(9)	55(2)
2020.8	848(11)	760(5)	732(5)	690(4)	116(6)	70(1)
합계	6,290(70)	5,700(41)	5,783(37)	5,456(35)	507(33)	244(6)

출처: 근로복지공단, 이은주 의원 자료

환경미화원들의 업무상 사고의 재해발생형태는 전도(넘어짐), 추락(떨어짐), 충돌(부딪침), 절단·베임·찢림, 협착·감김(끼임), 낙하·비래(날아와 맞음), 붕괴·도괴(무너짐), 과도한 동작, 사업장내 교통사고, 도로 교통사고, 폭력행위, 폭발, 이상온도, 동물상해 등이 있다. 그리고 업무상 질병은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질환, 감염성질환이 있다. 최은숙 등(2011) 연구에 따르면, 생활쓰레기 수거작업에서는 전도 25.3%, 추락 18.6%, 근골격계질환 13.2%, 도로교통사고 9.7%, 협착·감김(끼임) 8.6%, 절단·베임·찢림과 충돌이 각각 7.3% 순으로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작업에서는 도로교통사고 20.5%, 전도 19.7%, 근골격계질환 15.4%, 충돌 14.5%, 추락 10.3% 순으로 재해발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작업에서는 추락31.1%, 전도 17.1%, 충돌 12.2%, 절단·베임·찢림 11.7%, 근골격계질환 9.5% 순으로 재해가 발생하였다. 대형폐기물 수거작업에서는 근골격계질환 20.7%, 전도 18.0%, 낙하·비래 16.2%, 추락 12.6%, 협착·감김 9.0% 순으로 재해가 발생하였다. 거리청소 작업에서는 전도 50.0%, 도로 교통사고 19.8% 순으로 재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GI 참여자들에 따르면 찢림과 베임과 같은 산업재해는 일상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산재로 여기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일부 참여자들은 운반차량 안에 더 많은 쓰레기를 넣기 위해 쓰레기를 밟거나 누르는 일이 있는데 그럴 때 봉투 안에 날카로운 것이 나오면서 찢림과 베임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52)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020>

봉투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안에 어떤 쓰레기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 날카로운 물건에 찢림과 베임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근무지	참여자	인터뷰 내용
금천	4	찢리고 베이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산재처리도 안 해 그런 건 밴드나 붙이고 말지.
도봉	4	생활도 한 20% 늘었어요. 원래 생활이 4대차 한다고 그랬잖아요. 쌍문 1, 2동을 도는데 코로나 이후에 한 차가 더 들어가요. 한 차에 1톤 700이 더 들어가거든요. 화요일부터는 양이 줄기는 주는데 그래도 한 번 더 나가야해요. 그래서 시간이 초과되니까 끝까지 밟고 올라가서 하고 하는 거죠. 옆에 사다리 밟고 올라가서 쓰레기를 밟고 그래요. 그러다가 사고 났잖아요. 재활용에서 쓰레기 밟다가 칼 들어가서 다 찢어졌잖아요.
도봉	2	깨진 거 아니면. 다만 저 잘못하면 모이라든지 그런 게 뾰족한 게 있어서 잘못 들으면 이제 좀 손에 찢리거나. 그니까 우리가 파상풍 걸릴 수도 있지. 그런 게 잦아요.
구로	4	봉투를 옮기다가 날카로운 것에 찢려요. 생활쓰레기는 75리터 인데, 테이프로 감아요. 그러면 혼자 못 들거든요. 재활용은 폐기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방법을 좀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야 해요.
구로	5	봉투의 투명도도 문제가 있어요. 투명하면 조심하게 되는데 야간에 불투명하면 아예 안보이거든요. 봉투가 불투명해서 안에 뾰족한 거나 칼이나 깨진 것 많아서 베이거나 찢리고 안보이니까 가벼워보이는데 들어보니 무거워서 허리가 다치기도 하고. 무거워 보여서 들었는데 가벼우면 중심을 잃기도 하고. 그래서 봉투가 좀 투명하면 산업재해도 예방되고 효율적으로 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남	5	저희는 압축기를 써서 괜찮고, 밟는 거는 소비자들이 밟아서 내는 거고. 근데 소비자가 거기다가 딱딱 채워서 내놓으면 그걸 잡고 옮기다가 무거워서 다치고, 유리 같은 게 터져나와가지고 찢리고
도봉	1	음식물 봉투 집었는데, 뾰족한 거 나오고 찢린 게 한두 번 아니에요. 막 피도 나고. 지금은 상대를 살짝 해줄 거예요. 예전에는 상대를 안 해줬어요.

다음으로 근골격계 질환도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FGI 참여자들은 무거운 쓰레기를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하거나 근육이 파열되는 산업재해도 빈번하게 경험한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물이 많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통에 담아 운반차에 옮길 때,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에서 마대로 분리하는 포대 자루를 옮길 때 와 같이 상차과정에서 근골격계 질환이 더욱 발생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지	참여자	인터뷰 내용
금천	2	음식물은 리어카를 끌거든요. 그러면 무게가 상당해서 내리막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담는 거를 25리터는 크잖아요. 그거 들면 허리 나가.
금천	4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25리터에 넣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해. 여름에 물 많이 생기면 진짜 국물 다 쏟아지고 무게도 엄청 나가 그걸 한 팔로 들어서 통에 넣으려다가 다 다쳐버려.
도봉	4	봉제공장아시죠? 가내라고 하는 곳에 쓰레기 봉지 100짜리에 가득 담아가지고 그거 들지도 못해요. 압축기로 눌러서 담아가지고 엄청 무겁단 말예요. 수건이랑 천 같은 거 담아가지고. 이 동네에 그게 많은데 그거 들다가 팔을 다쳤거든요. 전에 허리 아픈 적이 없었는데 처음에는 몰랐죠. 그거를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주고 이런 거를.
도봉	1	무거운거 들다가 어깨인대 끊어지고 막. 왜냐하면 마대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 돌멩이 유리 무기 한 번 들으면아니 100리터는 따로 인데 마대라는 게 있어요. 아 쉽게 얘기하면 포대자루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 거기 이제 돌멩이네. 유리 이런 거

한편, 작업시간에 맞춰서 할당된 쓰레기의 양을 처리하려다 보니, 휴식 없는 노동을 하다보니 근골격계 질환이 만성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FGI 일부 참여자들은 코로나 19로 인해 쓰레기 양이 약 20-30% 증가했으나 근무시간과 인력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움직이고 한 번에 많은 양을 옮기다보니 근골격계 질환이 생길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근무지	참여자	인터뷰 내용
금천	3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저녁에 작업하면서 4만보 6만보를 걸어야 해요. 중간에 한 시간 휴식시간 있어도 관절에 무리 가도록 너무 걸어요. 그렇게 차 못타고 가게 하려면 인력을 충분히 주든지 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으니깐 수거원들이 관절에 무리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평탄한 길도 아니고 다 올라가고 해야 되는데 리어카에 싣고 내리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도봉	2	우리 같은 경우에는. 들어온 지 얼마 전에. 일단 빨리 좀 서둘러서 좀 쉬죠. 좀 쉬고 커피 한 잔은 여유가 있고 좀 담배 한 대 피고 그럴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여유 자체가 없으니깐 조금 힘든 점이 있고 사람도 없는데. 그 인원은 재활용이든 음식물이든 생활이든 그거 양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 못 채우면 맨날 민원 들어오면 또 와가지고 야 너 이거 수거 왜 안 했냐고 그러고
강남	6	여기는 그런 제한까진 없는데, 소각장에서 톤수를 제한할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빨리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 있죠.
도봉	4	생활도 한 20% 늘었어요. 원래 생활이 4대차 한다고 그랬잖아요. 쌍문 1, 2동을 도는데 코로나 이후에 한 차가 더 들어가요. 한 차에 1톤 700이 더 들어가거든요. 화요일부터는 양이 줄기는 주는데 그래도 한 번 더 나가야해요. 그래서 시간이 초과되니까 끝까지 밝고 올라가서 하고 하는 거죠.

다음으로 전도, 추락과 같은 사고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GI 참여자들은 안전장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야간작업이나 기상악화 시(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오는 날) 이러한 사고가 잦게 발생한다고 하였다.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날이 더운 날에 쓰레기를 하차할 때 그 주변이 미끄러워서 추락하는 사고가 종종 일어난다고 언급하였다.

근무지	참여자	인터뷰 내용
도봉	4	비오는 날 장화신고 일하다가 미끄러져가지고 홀라당 등이 다 벗겨졌어요.

근무지	참여자	인터뷰 내용
도봉	1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노조를 왜 하려 그러면요 재차 운전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차에는 한 번 떨어졌어요. 위에 안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음식물이 차고 그러면 안에도 치워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이래요. 거기서 미끄러져 떨어졌단 말이야
도봉	3	저는 신발이 닳아서 2번 넘어졌어요. 그래서 허리 삐끗 했어요. 그래서 약 먹고 그랬어요.
금천	3	특히 비나 눈이 왔을 때 봉투가 안보이니까 밟으면 100프로 미끄러지지. 나는 미끄러져서 머리가 깨졌지. 그래서 한 달 산재 처리하고
강남	1	야간에는 깜깜하다보니 음식물 쓰레기는 기계에 고정해야 되는데 그게 헐거워져서 앞에 쏟아지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생활쓰레기는
구로	4	음식물 하다가 다쳐서 산재 받는 분 있으세요. 하차장에 음식물 붓는 곳이 있어요. 그 통을 음식물 차가 와가지고 하다가 미끄러져서 3미터 밑으로 떨어져서 갈비뼈 나가고 그래서 산재처리 기간 중에 있죠.
강남	4	일하다가 빙판길에 넘어졌고, 퇴근길에 머리를 다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
금천	2	스티로폼 수거하는 전용차량이 없어서 그냥 재활용 차량에 올라타서 쌓는데 거기에서 떨어져서 뒤통치가 다 으스러졌어. 그래서 1년 쉬고 복귀했는데 노조 없을 때는 무슨 복귀야. 다 퇴사였지.

다음으로 교통사고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사고는 야간작업이나 기상악화 상황에서 더 발생빈도가 높다고 FGI 참여자들은 지적하였다.

근무지	참여자	인터뷰 내용
구로	2	일 하고 있는 중에 택시가 칠 뻔 한다든지, 그래서 작업시간대가 바뀔 필요도 있고요.
금천	2	야간은 교통사고 확률도 높아요. 한 달에 한 두 번씩 꼭 사고가 나거든요.

근무지	참여자	인터뷰 내용
구로	3	재활용이 기사들이 제일 시끄러워요. 바람에 날리면 떨어지고 안전사고 위험이 굉장히 커요. 근데 생활이나 음식물은 신고 가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로 다닐 때 바람 불면 스티로폼이 떨어져요. 그러면 운전하다 내려서 주워야 해요. 그러면 차가 갑자기 올 수도 있고 안전사고 위험도 올라가죠.

(2) 산업재해 예방

몇 년간 작업 도중 안전사고를 당해 죽거나 다치는 환경미화원이 늘어나면서 정부는 지난 2018년 1월과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을 내놓았고, 지난해 3월에는 작업안전지침을 마련했다. 같은 해 4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이어 12월31일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이은주의원 자료, 2020).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에 따르면 환경미화원들에게는 안전화·안전조끼·장갑 등 보호장구를 지급해야 한다.

FGI 조사에 따르면, 보호장비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침에 맞게 제공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의하면 지자체, 대행업체들은 환경미화원들에게 안전화 연 2회, 안전조끼 연 1회, 장갑 월 15회 이상 지급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제공되지 않고 있었다. 일부 참여자는 절단이나 찢림 방지용 장갑조차도 최소로 제공되고 있으며, 우비 1개, 작업복도 최소로 제공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근무지	참여자	인터뷰 내용
강남	4	장갑은 한 달에 10개, 작업화는 일년에 한 벌, 작업복은 1년에 두 벌, 세 벌 정도. 우비도 1년에 한 벌이고 저희가 봄부터 가을까지는 비슷하게 착용하고 겨울부터 좀 두껍게 옷을 입기는 해요. 겨울용, 여름용이 있죠. 각 한 벌씩이요. 원래 두벌씩 줘야하는데 회사에서 돈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주겠다고 해서 알았다고 했죠.

근무지	참여자	인터뷰 내용
구로	2	작업회는 1년에 2개, 장갑은 한 달에 15개, 우비는 1년에 한 개이고 동복 한 벌, 하복 한 벌 이렇게 받아요.
금천	3	개네는 우리를 사람으로 안 봐. 동복도 한 벌인데 그게 뻘다고 하루 만에 마르냐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두 벌로 해달라고 했고, 기존에 입던 사람은 작년에 받은 게 여분이 있으면 신규라도 두 벌 주라고 하는데 안줘버려. 신입사원 다섯 명은 지급도 안했어. 그걸 노조에서 뭐라고 안 한 게 그 사람들은 사장이 노조가입 안하는 조건으로 데려온 사람들이니까 뭐라고 못하지.
도봉	3	장갑 12개랑 신발 3켤레 주죠. 1년에

다음으로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강풍,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작업 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FGI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폭설시에는 수거를 보류하지만, 폭염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염의 경우 재활용 분류, 선별장의 온도는 거의 32도 이상이 되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운영된다.

근무지	참여자	인터뷰 내용
구로	2	폭설은 수거를 보류해요. 사장님이 그런 건 욕을 먹더라도 폭설 중에 미끄러지는 것 보다는 그게 낫다고
구로	5	최근 3군데 온도를 잰는데, 에어컨 설치 있는 곳은 28도에서 29도 정도 되고 나머지는 32도거든요. 습도는 다 65% 이상 나오고 아침에 한 시간 하는 한 타임만 끝나도 온몸이 다 땀으로 젖어요. 그리고 마스크가 땀에 젖으면 숨을 못 쉬잖아요. 찢리지 않으려면 장갑도 두 겹이고 토시도 하고 앞치마도 해야 하고 최근에 나이 가장 어르신 분이 열 때문에 쓰러지셔서 실려 가신 적 있어요. 다른 분도 너무 어지러워서 쉬어야겠다고 하신 분도 있고요.
강남	4	어려운 점이 있죠. 아무래도, 더위를 먹거나 그런 것도 있고

다음으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으로써 작업안전수칙 및 안전교육 매뉴얼 개선 배포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FGI 참여안자들은 산업재해 안전교육은 형식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안전교육 내용이 건설노동자 관련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실질적인 매뉴얼 배포나 전문적인 교육 시행은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근무지	참여자	인터뷰 내용
금천	4	안전 교육 매뉴얼이 없이 그냥 청소용역을 위한 안전교육이 아니고 건설노동자 관련된 거 이런 교육 하니까 와 닿지가 않지.
금천	2	필수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도 제대로 안되고 보험업체에 넘겨서 보험이나 파는 교육이 되는 거야. 그냥 한 시간 약이나 팔고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떠들고 그거 싸인 하라고 하고 교육비를 또 떼먹어. 강사비 지급을 안 하니까.
구로	2	한 달에 한 번 집합을 하는데 지금 코로나로 중단 된 거죠.
도봉	1	안전 교육을 하는데요. 그냥 수박 곁핥기. 그냥 다 모여주세요 음식물 텀. 먼저 들어오세요. 앉아서 사진 찍고 사인하세요. 재활용 들어오세요! 사진 찍고 그런 식이에요.

(3) 산업재해 처리방식

FGI 조사결과에 따르면 산업재해 발생 후의 처리방식도 업체마다 차이가 있다. 산업재해 처리 대신 산업재해가 발생한 환경미화원에게 위로금 형식으로 공상처리 하거나 산업재해로 더 이상 일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자발적 퇴사를 강요한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노동조합이 생기고 나서야 산업재해를 인정하기 시작하였다고 언급하였다.

근무지	참여자	인터뷰 내용
도봉	1	처음에 산재를 해 준다 그랬는데. 응, 어느 날 갑자기 산재가 아니라 자른다고
도봉	3	저희 산재하면 무조건 사표 써야 해요. 회사가 그래요. 그냥 사표 쓰라고 가져와요.
구로	5	그런 건 없고, 선별하고 마대자루 옮기다가 다치거나 뼈가 깨져서 수술하신 것 도 있고 지금까지 2년간 산재가 11건은 발생을 했죠.

근무지	참여자	인터뷰 내용
도봉	4	무리해서 들다가 삐끗 한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치료비만 380이 나왔어요. 그 다음날 허리가 아파 죽겠는데 아침에 일하겠다고 나왔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전화하고 그날 딱 하루 쉬었어요. 근데 이제 내 돈으로다 하고 있는데 회사 사무실에 박 과장이라고 있어요. 디스크 초기라고 했어요.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근데 박 과장이 영수증을 올리라고 하더라고요. 영수증을 그래서 올렸는데 사장님이 따로 불러요 가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을 일을 잘해서 좋아하지 영수증 올려서 좋아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실랑이 하다가 돈 백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산재처리 안되냐고, 근데 이걸 산재처리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구로	2	다치면 산재는 해줘요.
강남	4	회사에서 힘써야 되는데 괜찮겠냐? 해서 퇴사처리 한 거죠. 본인이 또 어렵겠다고도 했고
금천	2	스티로폼 수거하는 전용차량이 없어서 그냥 재활용 차량에 올라타서 쌓는데 거기에서 떨어져서 뒤꿈치가 다 으스러졌어. 그래서 1년 쉬고 복귀했는데 노조 없을 때는 무슨 복귀야. 다 퇴사였지.

6) 코로나19 예방 및 감염 시 대응 체계

(1) 코로나19로 인한 노동환경 변화

코로나 19로 가장 큰 변화는 쓰레기양과 연관되어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택배, 배달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생활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다. FGI 조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인해 크게 증가한 재활용의 경우, 쓰레기 상차과정에서 분류를 진행해야 하는데, 노동인원은 여전히 2인 1조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인 1조로 운영되더라도 수거하는 지역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노동 강도는 줄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근무지	참여자	인터뷰 내용
구로	2	20에서 30% 늘었고 재활용이 진짜 많이 늘었죠.

근무지	참여자	인터뷰 내용
구로	5	지금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거 자체를 분리를 해야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배달이나 이런 게 많지 않았어요. 코로나 생기고 양이 폭주했거든요. 그만큼 양이 많으면 분리해서 수거 해야 되는 걸 다 알고는 있는데 키는 구청이 갖고 있어요. 전용으로 수거하는 사람을 따로 붙여달라고 스티로폼만. 근데 구청에서 그냥 한 번에 하라고 하죠.
도봉	3	많이 늘었어요. 진짜 많이 늘었어요. 음식물도 20%
도봉	1	제가 하는 경우는 쌍문동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중에는 양이 제일 많아요. 골목도 제외하고 이동거리가 제일 길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치우다 치우다. 못 치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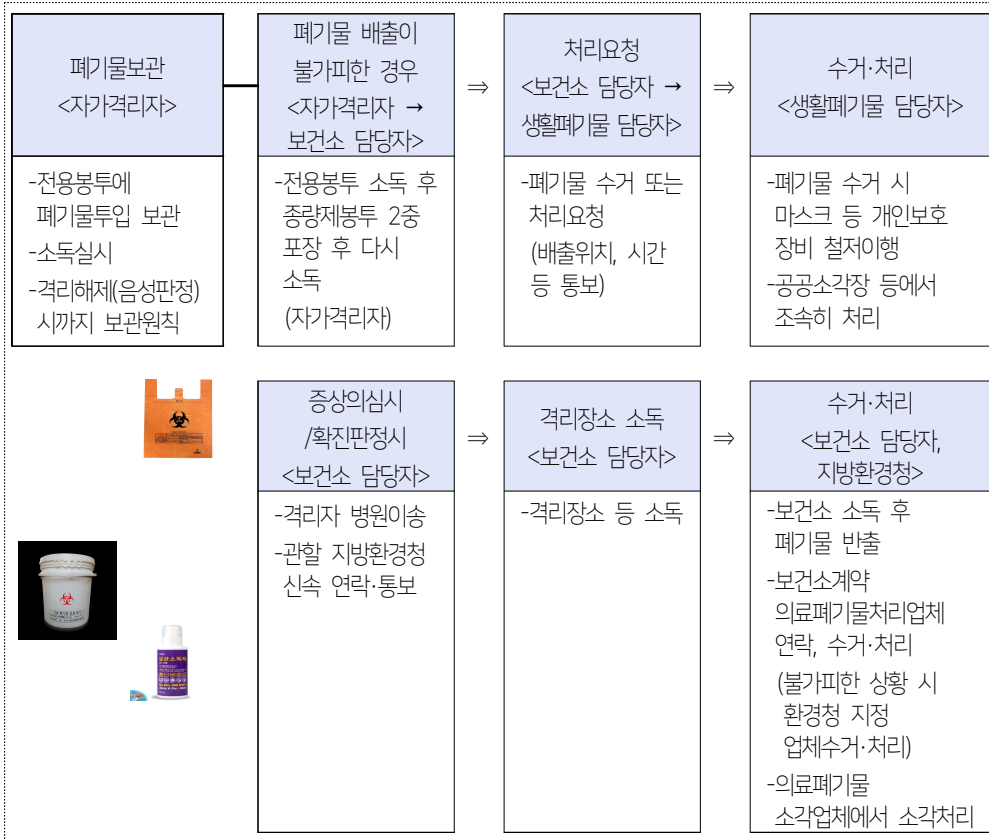
코로나 19로 인해 증가한 쓰레기양을 처리하기 위해 환경미화원들은 자신의 휴식시간을 줄이거나 초과근무로 인정되지 않아도 2시간 일찍 출근하는 등의 방법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었다.

근무지	참여자	인터뷰 내용
도봉	4	그러니까 우리 생활은 아침에 우리가 4시에 나가요. 두 시간 더 일찍 나가요 지금. 원래 초과근로 안 해주죠. 5톤차에서 하나 빼주고도 4차야. 그리고 또 한차 더 있고 그러다 보니까 3.5톤이 우리보다 양이 적어. 우리는 작업일지를 보는데 우리 1톤이 한 4차를 해서 많이 하면 한 차당 1700이 나오거든요. 3.5톤은 6천밖에 안되는데. 3.5톤 한번 가는 거보다 1톤은 4번을 가니까 양도 더 많고
도봉	1	그리고 쉬지도 못했어요. 밥 먹자마자 바로 차 타가지고 계속 이래

다음으로 코로나 19의 감염 위험성 증대이다. 코로나 19 관련 폐기물 안정관리 특별 대책에 따르면, 배출자제를 원칙으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만 배출하며, 자가 격리자는 폐기물(음식물쓰레기 포함)을 소독한 후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밀봉한 후 다시 종량제 봉투에 넣고 보건소에 연락하여 배출 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 이후 수거 처리의

경우 자가격리자를 모니터링하는 지자체 보건담당자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시·군·구 생활 폐기물 담당부서(생활폐기물처리업체)에서 수거하여 생활폐기물로 소각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 4-12] 자가격리자 폐기물 보관·처리 체계



자료: 환경부(2020) 자가격리자 폐기물 보관·처리 체계

그러나 FGI 조사결과 참여자들은 코로나 19 폐기물 수거 처리를 직접 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해야 한다. 일부 구에서는 신속처리라고 해서 관할환경청 처리전화신고를 하고 수집운반을 기존의 민간 업체에게 맡기기도 한다.

근무지	참여자	인터뷰 내용
구로	4	문제는 배출은 저녁에 하고 검사는 그 다음날 아침에 받잖아요. 간혹 양성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구청에 가서 얘기하면 대책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냥 조심하라고 하고.
강남	4	봉투는 주간 업무팀이 해요. 그걸 저희한테 다 넘긴 거죠. 회사에 다 넘긴 걸로 알고 있어요.
도봉	2	건드릴 뻔했어요. 건드릴 뻔. 그 마크가 나오잖아요. 주황색
도봉	4	생활폐기물도 치우라고 그러면 치워야 해요. 주황색 봉투에 있는 거는 안 치우는데 쓰레기봉투 속에다가 그거를 같이 넣어가지고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치워야죠. 저번에 우리도 안 치웠다고 민원 들어와서 가서 치웠어요.
도봉	3	그죠. 감염될 수 있어서 꺼리는데 회사에서 치우라고 전화 오면 치워야 해요. 일하다가 신경 쓰이니까 그냥 가서 치워버리는 거죠.

(2) 코로나19 예방 대책

환경부는 폐기물 종사자들이 개인 소독약품, 마스크, 보호안경, 보호장갑 및 일회용 가운 등으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권장하는 개인보호장비 착용을 통해 코로나 19 관련 감염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장비를 구비하고 코로나19 폐기물을 수거해야 한다. 그러나 FGI 참여자들은 개인보호장비를 받은 경우가 거의 없다. 제공되더라도 일회용 장갑이나 마스크 지원은 최소로 지원되고 그 물품들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것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마스크나 일회용 장갑과 같은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근무지	참여자	인터뷰 내용
구로	4	그러면 최소한의 병역물품이라도 달라고 해서 나온 게 구청에서 마스크랑 일회용 장갑 달라고 해서 마스크는 줄 거예요.
강남	3	회사에서 따로 준 건 없고 구청에서 나왔었는데, 코로나 전체 기간 동안 3번에 걸쳐서 20개씩 지원이 됐고 지금은 또 안 나와요.

근무지	참여자	인터뷰 내용
금천	4	구청에서 전담반 운영하라고 하는데 그냥 버리는 걸 수거하는 건 아무 조치가 없어. 일회용 장갑을 주든가 장갑도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도록 해줘야 되는데 기본적인 마스크나 일회용 장갑 같은 거. 방호복을 달라는 게 아니고 기초적인 건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방호복은 우리가 일 못하지. 근데 마스크는 좀 넉넉하게 한 개 이상 지급을 받아야 하죠. 여름에 땀 흠뻑 젖는데
금천	3	작년에 한 번하고 지금까지 소독 단 한 번도 안했어. 손세정제 지급도 안 해.

[그림 4-13] 개인보호 장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백신 접종 후 발열, 통증 등 근무에 지장, 어려움을 겪는 경우 있어 접종 당일의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 유급 휴가 등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여 접종 다음 날 1일을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1일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8월초 18-49세 택배기사와 환경미화원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우선접종 사전 예약을 실시하였다. 돌봄노동자와 마찬가지로 환경미화원 역시 필수 노동자라는 이유에서였다. 환경미화원들의 백신 접종은 빠르게 이루어졌지만, 백신접종 후 유급휴가 권고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FGI 조사결과 일부 참여자의 경우 백신 접종 후 출근하여 일을 하다가 응급실에 가거나 개인 휴일 전날 백신 접종을 맞았다고 언급하였다.

근무지	참여자	인터뷰 내용
금천	2	맞고 나서 바로 일 해요. 팔 아파도 일찍 퇴근도 못하고 다 일했어요. 애들이 팔이 아파서 일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못 쉬게 해요.
강남	5	실제로, 토요일에 주사 맞고 일요일 저녁에 일하다가 증상 있는데 한 명이 빠지면 다른 분들이 그 몫까지 해야 되니까 참고 하다가 앰볼런스 타고 가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실제로.
강남	4	네 안졌어요. 애초에 백신 맞기 전에 회사에서 백신 맞고 문제 생길 것 같으면 우리가 부담해줄 수 없으니까 맞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오 너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3) 코로나 19 감염 시 대응 체계

코로나 19 확산이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FGI 참여자들의 회사 내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언급하였다. 코로나 19 감염 시 유급휴가 처리는 되지만, 그 인력에 대한 대체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 일을 나누어서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언급하였다.

근무지	참여자	인터뷰 내용
강남	3	정부에서 코로나 걸리면 유급휴가 처리를 해줘요. 임금보장 해주고. 그리고 대체인력에 들어가야 했는데 대체인력이 안 들어오고 저희가 그 일을 다 처리했는데 그 보상을 회사에서 추가노동에 관련된 걸 13만 천 원씩 받아서 저희에게 줬죠.

확진자가 발생하여 전수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근무시간이라도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쉬는 시간에 검사받고 다시 일을 한다던가 야간 업무시 주간에 검사를 받고 다시 출근하여 일을 한다고 언급하였다.

근무지	참여자	인터뷰 내용
구로	2	쉬는 시간에 다 같이 받았죠. 업무 피해서. 야간작업을 하고 낮에 쉬는데 낮에 가서 받고 온 거죠.
구로	2	자가 격리 들어가면 임금은 보전은 해주고 검사나 이런 건 저희가 야간근무를 하니까 보상을 따로 해주는 건 요청은 안했었죠. 그냥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간 거죠.

7) 현장에 필요한 대책

(1) 고용 안정화

FGI 일부 참여자들은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는 고용의 불안정성과 작업환경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민간위탁 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고용 승계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고용승계가 고용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토로하였다. 이에 고용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직영전환을 제안하였다.

근무지	참여자	인터뷰 내용
구로	4	직고용을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이 업종도 순환이 되어야 하고 공공서비스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데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자부심보다 회피하셨던 직업일 수 있는데 인식개선이 필요하죠. 근본적으로는 직영으로 가야 하는 이유는 인건비 때문이죠. 돈 주는 거는 구청에서 하니까 직접 고용 하는 게 맞고 공공서비스니까 관리 운영을 직고용을 해야죠.
강남	5	직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무지	참여자	인터뷰 내용
구로	2	덧붙이면, 정규직으로 했을 때 저는 떠날 사람임에도 직영을 주장하는 이유가 직고용이 되어야 맞아요. 공공의 목적으로 일을 하니까 국가가 책임져야 해요. 두 번째는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노후가 보장이 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건 어렵지만 미래에는 분명히 그렇게 가야해요. 세 번째는 민간위탁으로 하느라 쓸데없이 몇 천억의 돈이 그냥 나가요. 실제 종사하는 사람의 임금이나 복지 이외에. 그래서 지금이라도 가야 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 자손들이 대대로 이 부분은 존재를 하니까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2) 적정 임금 표준체계 마련

FGI 참여자들은 강도 높은 노동인 만큼 적절한 임금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나 환경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환경부 고시 제2016-108호(「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적정수준으로 제공되길 바라고 있었다. 더불어 각 구의 예산에 따라 다르게 측정되는 임금에 대해 서울시 안에서라도 통일된 기준이 존재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근무지	참여자	인터뷰 내용
도봉	3	규정에 있는 급여만이라도 제대로 맞춰달라는 거죠. 우리는 워라밸이 꿈같은 얘기거든요? 워라밸 남들의 절반이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구로	5	그건 지자체 문제죠. 지자체가 돈 타령만 하잖아요. 공공의 이익을 바라는데 사측에 이익을 더 주고 있어요. 사측이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제대로 된 인건비가 노동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죠.
금천	1	회사가 개선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급여를 잘 지키고

(3) 작업환경 개선

FGI 참여자들은 기준에 못 미치는 보호장구 제공, 작업장 내의 휴게실 부족,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환경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호장구의

경우 업체마다 지급 양이나 지급물품의 품질의 격차가 크다고 토로했으며 이에 대한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더불어, 서울시 차원의 보호장구 제공 기준 마련을 요구하였다.

근무지	참여자	인터뷰 내용
도봉	1	그죠. 그런데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지금은 전혀 없고. 그리고 원래 구청에서 환경과가 와요. 아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현장에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구로	5	저희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자원센터가 혐오시설로 분류가 공식적으로 된 건 아니지만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보니까. 그래서 지하화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순환도 안되고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워요. 그리고 대형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 음식물 악취에 대한 해결 기준도 없고 작업환경 측정도 측정기준이 따로 지하화 된 시설에 따로 측정 기준이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지하화를 하면 안 되거든요.
금천	2	차량 교체한 것도 우리 금천이 하자고 해서 그런 거지. 근데 아직 안 바꾼 곳도 많아. 동마다 휴게실도 없고.
구로	4	인원하고 장비 보충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서울시에서는 주간근무로 빨리 전환되도록 단계를 마련해줘야 하죠. 처우에서도 직영과 민간 위탁 환경미화원 임금격차는 어쩔 수 없더라도 작업복이라든지 그런 게 차이가 많아요. 직영은 한 벌에 20만원이고 우리는 4만원이거든요. 이런 품목을 맞춰달라는 거죠. 품목도 확대를 해주고요. 그리고 야간 작업 할 때 보호 장구도 없고 무릎 보호대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10년 전 가격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는 거죠.

(4) 코로나 19 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

FGI 참여자들은 환경미화원이 코로나 19의 필수업무로써 지정하였고, 지원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낮다고 토로하였다. 특히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필수노동자를 중심으로 우선 접종했으나 이후 백신 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는 백신 접종 후 어려움을 겪은 경험을 토로하였다. 일부 참여자들은 코코로나 19 이후 필수노동자로 지칭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노동 강도 증가와 코로나 19 감염위험 증가에 대응하는 체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서울시 차원의 환경미화원들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 사업, 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위한 조치 등이 필요하다.

근무지	참여자	인터뷰 내용
도봉	3	그러면 코로나 19에서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백신휴가나 코로나 병가 권고라도 해주고 코로나 19쓰레기도 치우는 것도 명시하고.
구로	2	덧붙이고 싶은 게 건강검진이 형식적이에요. 1년에 한 번 하는데 너무 형식적이에요. 피검사랑 엑스레이 찍고 땡. 그래서 종합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해요.

8) 결론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들은 코로나19로 재활용폐기물이 증가하여, 상차과정에서 분류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여전히 2인 1조로 작업하고 있고, 증가한 쓰레기양을 처리하기 위해 휴식시간 줄이기, 자발적 2시간 일찍 출근(초과근무 인정 안됨)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작업환경에서도 개인보호장비 지원은 거의 없고, 제공되더라도 일회용 장갑, 마스크 지원은 최소로 받고 있다. 또한, 백신 접종 후 유급휴가 권고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코로나19 감염시 유급휴가 처리는 되지만, 대체인력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체계가 필수노동자인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에게 적용되지 못하는 상황이고, 정부에서 필수노동자로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을 지정하였으나, 지원은 없고, 체감도도 낮았다.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과 보호장구 제공, 작업장 내의 휴게시설 확충 등이 요구된다.

V. 서울지역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제언

1. 서울지역 필수노동자 지원 대책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은 노동실태에 기반하여 지원방향을 설계해야 하고, 지원시기 별, 지원방법별로 정책대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긴급하게 지원해야 하는 사항과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노동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구분하여 지원해야 하며, 필수노동자 업종별로 지원방향을 다르게 추진해야 한다.

5장에서는 서울지역 필수노동자 중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필수노동자 지원 대책과 필수노동자 지원조직 및 서울시의 역할,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제들을 제시한다.

1) 1단계: 긴급지원 - 감염예방, 백신휴가제, 자가격리자 폐기물 처리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필수노동자에게 가장 신속하게 지원해야 하는 것은 감염예방물품이다. 필수노동자들은 육체노동자, 대면노동자, 감염위험이 가장 높은 노동자로서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이러스 노출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마스크(오염된 마스크 교체)와 휴대용 손소독제, 장갑 등 감염예방물품이다. 그리고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을 막을 수 있도록 신속한 백신접종과 백신휴가제를 실시해야 한다.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은 작업 중에 감염위험이 높으며, 감염 시 확산의 위험도 높다. 따라서 신속하게 백신접종이 이루어져야 하고, 백신 접종 후 육체노동을 해야 하는 필수노동자들은 백신휴가제가 의무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환경부의 자가격리자 및 생활지원센터 폐기물 처리 매뉴얼에 따라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자체는 취급 폐기물 기준과 처리방법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그리고 자가격리자의 의료 폐기물을 처리 할 때는 폐기물 소독 및 처리 지원, 방역복, 기타 방역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 2단계: 단기적 지원 - 인력 충원, 사회적 위험수당, 유급 병가

감염위험과 더불어 과중한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필수노동자에게 시급한 문제는 인

력 확충이다. 코로나19가 아닌 평소에도 인력부족으로 강도 높은 노동으로 산업재해가 빈발하고 있는데, 업무량이 급증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인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보건의료, 택배·배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은 과로 누적으로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은 코로나19 이후 전체적으로 증가한 생활쓰레기 양과 배달 및 택배로 인해 급증한 재활용쓰레기(스티로폼 등)는 기존의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서울시에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필수노동자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인력 1명이라도 현장에 더 투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짧은 기간 내에 사회적 위험수당(재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위험·기피 업무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들은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상태에서 재난상황까지 겹치면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중첩되어 더욱 고통 받을 수 있다. 특히,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의 경우 코로나19로 감염위험 뿐만 아니라 늘어난 생활폐기물량으로 직업성 질환이 가중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필수노동자로 일을 해야만 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필수노동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단기적으로 필수노동자는 건강검진 및 입원(외래포함)시 유급 병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은 소속한 대행업체의 유급병가 지원에 매우 동의하고 있으며, 감염 및 질병위험에 노출된 환경미화원의 작업특성상 노동자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병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서울시는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사업소득자에게 입원 및 검진 시 발생하는 소득공백에 대한 생활비를 지급함으로써 질병 완화와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4주 이내 외래 진료(검진)시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⁵³⁾

3) 3단계: 중장기적 지원 - 환경공무직 수준의 보호 안전장구, 휴게시설 마련

필수노동자로서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환경미화원에 대한 중장기적 지원방향은 안전한 작업환경, 쾌적한 휴게시설 완비, 직영 공무직과의 차별 해소이다.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은 직영이나 공공위탁 소속과 비교해 임금, 고용상태 등의

53)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1282>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작업복 및 보호 안전장구 지급, 휴게실 사용 등 근무여건의 차별도 심각하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공공성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소속 환경미화원은 직영 환경공무직 보다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구가 민간위탁 대행비(용역비) 원가에서 복리후생비를 지급 품목의 현실적인 가격으로 증액 책정해야 한다. 그리고 구청에 산정되어 있는 복리후생 품목에 직영 공무직이 지급받고 있는 무릎보호대, 손목보호대, 발목보호대, 겨울 방한장갑, 발열 조끼, 동복1벌을 추가해서 지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1년 또는 2년마다 민간위탁 환경미화원의 종합건강검진도 필요하다. 구청에서는 지역 종합병원과 연계하여 근골격계 질환, 폐질환 등에 대해 정밀건강검진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환경공무직이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 전용 휴게공간을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환경미화원에게도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⁵⁴⁾ 민간위탁 휴게시설은 확대·개선해야 한다. 현장 근무대기실을 확충하고, 작업현장 쉼터 설치가 운영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구역 각 거점 해당 등에 폭설, 폭우, 폭염 발생시 임시 대피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임시휴게실(쉼터)가 마련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2020년 총 2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샤워, 난방, 편의시설을 교체하는 등 112개소의 개선작업을 마무리 했으며, 2021에는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50-200개소의 노후 휴게시설의 개선작업을 시행했다(서울시 생활환경과 보도자료).⁵⁵⁾

하지만 현장에는 지금도 낡은 컨테이너 안에서 환경미화원들은 작업복을 갈아입고, 일반 건물 지하의 환기조차 어려운 휴게공간에서 쉬고 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관계자는 “서울 도심의 경우 지상 휴게공간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 서울시에서 공간을 임대해 준다면, 냉난방시설, 세탁기 등은 업체가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2. 서울지역 필수노동자 지원 조직과 서울시의 역할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필수노동자 전담조직을 구성했다. 노동정책담당관 내 ‘필수노동지원팀’은 필수노동자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건강권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 등 필수노동자 맞춤형 지원조직이다. 서울시는 ‘필수노동지원팀’에서 서울지역 필수노동

54)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83795

55)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 보도자료 “서정협 권한대행, 설 명절에도 현장근무 ‘환경미화원’ 노고 격려” 2021.02.10

자 지원사업을 총괄하고, 직종별 담당부서와 협력체계를 마련한다면, 효과적으로 서울지역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는 지원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수노동자와 관련된 서울시 산하 출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기관의 기능들을 확대해야 한다. 대표적인 노동자 지원기관은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시 이동노동자 쉼터,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권역/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등이 있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취약계층 노동기본권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택배기사, 택시기사, 배달종사자,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등 필수노동자 노동실태 조사를 통해 노동자 지원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지역 필수노동자 지원방향과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 노동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하고 있다. 또한,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코로나 19 이후 변화된 노동시장에서 필수노동자의 보호·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 중간지원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필수노동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필수노동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니즈(needs)를 찾아 노동자 수요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교통·운송 필수노동자의 지원조직인 서울시 이동노동자 쉼터는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운영하고 있고,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취약한 환경에 노출된 이동 노동자들에게 방역물품(마스크, 손세정제 등)을 지급하여, 현장의 많은 이동노동자들이 지원을 받았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휴식을 위한 단순한 공간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직무교육, 건강, 법률상담 지원의 복합공간으로 자리잡았다.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는 코로나19 이후, 요양보호사 건강권 피해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요양보호사 산재 신청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산재 신청과정 지원 및 권리구제를 통해 돌봄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보장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돌봄종사자에 대한 노동 상담을 지원하며, 이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서울시 권역 및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현장 밀착형 지원조직으로 필수노동자에게 직접 다가가서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자치구 내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고, 지원기능을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조직이다.

이처럼 서울지역은 '노동존중특별시'로 노동자가 존중받는 다양한 정책과 지원조직이 갖추어져 있다. 필수노동자 지원·보호에 있어서도 서울시는 정부지원이 미치지 못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지원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필수노동자 업종별로 수요를 파악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합한 시기에 당사자에게 직접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지원 대상, 지원 내용(현금·현물),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서울지역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노동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그리고 서울시 민간위탁기관인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 필수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노동전문 민간위탁기관인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필수노동자들에게 노동자 눈높이에서 노동자가 요구하는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난상황에서도 필수노동자들이 버틸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 서울지역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수요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을 수행하는 환경미화원은 서울시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서비스 인력이다. 서울시 생활환경과 및 자치구 청소행정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관리하고, 환경미화원 후생복지와 노사 단계교섭 등 노동조합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은 직영(공무직)과의 차별, 근무여건에 대한 어려움, 위험한 작업 실태와 부족한 장비 등에 대한 어려움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미화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사업체), 서울시민 등 생활폐기물 처리에 책임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1) 근로조건 개선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은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거리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구청 직영 공무직과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모두 서울시 공공서비스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들의 임금격차는 크고,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은 직영 공무직이 받고 있는 복리후생(체력단련비 등)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필수노동자인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는 자치구 및 서울시와 협의하여 직영/민간의 임금격차를 축소하고, 사회적 위험수당, 유급병가 등의 복리후생을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중장기적 고용안정

서울시 공공부문의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의 고용안정적 측면만 고려하면, 직영 공무원 전환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직영 전환은 서울시 113개사의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업체와 서울시민, 관련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로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다.

그렇다면 ‘공익성’과 ‘필수성’의 관점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미화원의 고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현행 시스템에서 찾아보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가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대행업체 사업자 변경 시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은 40%가 정규직이고, 60%가 비정규직이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종사자 인력을 정규직 채용으로 하는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더 나아가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사업자 변경 시 고용승계 또는 소속 자치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그리고 재계약 또는 채용 시 급여·직위 등에 있어서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기관의 현미경 감시·감독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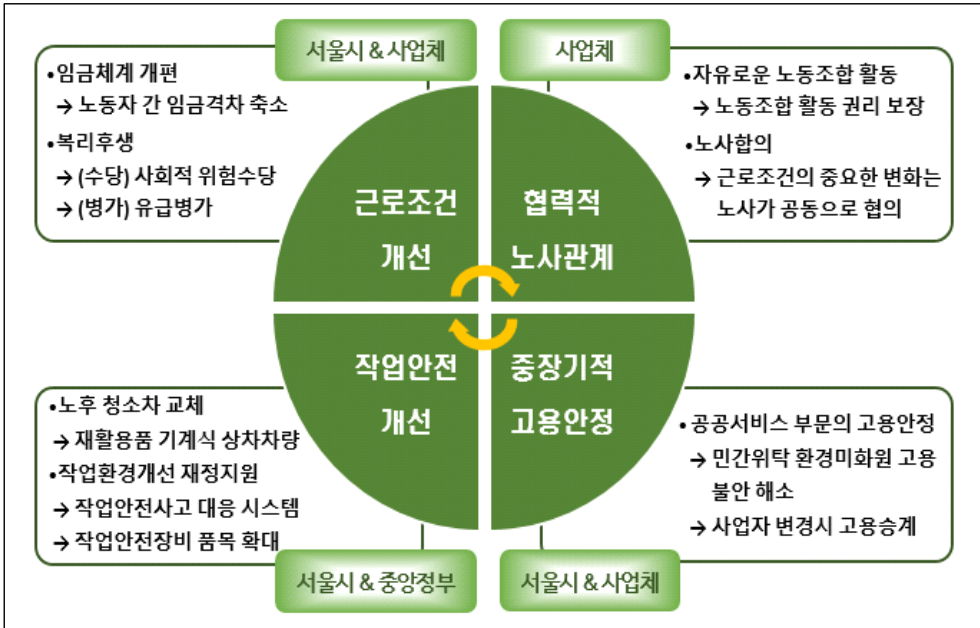
3) 작업안전 개선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 개선을 위해 노후 청소차 교체 등 청소환경 재정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서울시는 환경미화원들의 노동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보호를 위한 안전 및 시설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미화원의 업무여건을 고려해 휴식 환경 뿐 아니라 샤워시설 등 개인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작업구역 내 휴식공간은 환경미화원의 60%만 보유하고 있으며, 휴식공간이 있더라도 30%는 부족하고, 20%는 불청결한 상태이다. 그리고 안전 보호 장구 보호안경, 미끄럼방지 장화, 의료위생의약품, 절단보호 장갑, 무릎보호대, 허리 손목보호대는 50% 이상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25

개 자치구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요구되며, 대행업체는 소속된 환경미화원들에게 지원받은 사항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

[그림 5-1] 서울지역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수요



그리고 중앙정부는 작업안전 개선을 위해 재활용품 기계식 상차차량과 친환경 청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작업안전사고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재활용품 기계식 상차차량을 이용하면 환경미화원이 보다 안전하게 재활용쓰레기 운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친환경 청소차는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여, 작업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 또한, 중앙정부는 환경부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수칙 가이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생활폐기물 작업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협력적 노사관계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는 소속된 종사자(환경미화원)들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노사가 공동으로 협의하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조합이 있는 곳은 민간위탁대행 업체를 감시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곳은 지금도 인건비 착취, 열악한 복리

후생, 노동력 착취, 적정인력 미채용을 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체는 정당하고 자유로운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 조합원(환경미화원)도 사업장 내의 조합 활동에 있어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한다. 또한,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화에 대해서는 노사가 공동으로 협의하여 협력적으로 노사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4. 서울지역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제

1) 임금체계

서울지역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은 임금체계 개선과 직영공무직과 차별 없는 임금 및 복리후생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다.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의 임금체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첫째,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대행업체 노무비 산정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의 노임은 ‘건설업임금실태조사 보통인부노임단가’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의 노임단가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건설업 보통인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관계자는 환경부에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 노임단가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와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기준을 마련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데, 건설업과 마찬가지로 생활폐기물업도 노임단가기준을 마련한다면, 현장에서 논란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둘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의 노무비 계산에 대한 단서 “※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음”으로 인해 ‘건설업임금실태조사 보통인부노임단가’에서도 자치구별 재정여건에 따라 54%~70%를 지급하고 있다. 공공서비스의 필수업무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있는 사업과 같이 시장성의 원리만 적용해서 환경미화원의 임금에 격차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셋째,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은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으로 제수당이 기본급보다 많다. 따라서 정확하게 일한 시간을 인정받아야 합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일부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은 시간외 근무시간에 대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쓰레기양이 증가하여 근무시간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수당은 받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해서 작업시간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치구는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의 운영관리에 대해 감

시·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로 늘어난 작업시간에 대해서는 합당한 임금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

2) 민간위탁과 고용안정

필수노동자들이 고용불안 없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접고용 및 민간위탁의 고용구조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의 의료, 돌봄, 생활폐기물 공공서비스의 전달체계는 기관별로 직접 전달하는 곳도 있고, 민간에 위탁하는 등 전달체계가 혼재되어 있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심각하다. 민간위탁은 서울시 및 자치구가 민간위탁 업체에 노동자의 임금, 사무실임대료와 관리비 등 모든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이러한 민간위탁 소속 필수노동자는 저임금과 고용불안, 노동권 보호 박탈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지고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 차원에서 서울시가 시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필수노동에 대해서 서울시가 직접 운영관리 할 수 있는 고용구조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특히,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민간위탁은 예산집행의 비효율, 청소비용증가, 청소업체의 부정과 자치단체와의 유착의혹, 종사자의 희생과 노사관계의 악화 등 부정적 결과에 대한 의견과 언론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승현·정지훈(2017)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선택된 민간위탁이 생활폐기물 처리량과 재활용 처리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1인당 지방세 부담은 생활폐기물 처리량과 재활용 처리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대행체계가 세금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이 예산절감과 업무효율 개선이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민간위탁 환경미화원들은 대행업체 변경시 대량 해고와 상시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공공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직영)들 간 차별도 경험하고 있다. 민간위탁 환경미화원은 직영 공무원이 받는 수당(체력단련비, 작업장려수당, 기말수당 등)과 복리후생(명절, 생일, 근로자의 날, 종무식, 체육대회, 산업시찰 및 해외연수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안전 장구류, 휴게 및 편의시설까지 차별대우를 받는다. 즉, 민간위탁이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전문성이라는 명목으로 환경미화원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성과 열악한 처우 상태를 방치하고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3) 생활폐기물 재활용쓰레기 수거 차량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재활용 쓰레기 수집·운반 차량이 개선(1

톤 차량에서 3.5톤 압착 차량 보급)되어야 한다. 현행 1톤 일반차량, 1톤 카고 차량으로 재활용쓰레기를 수집 운반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근골격계질환 및 생명의 위협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사회적인 비용의 증가와 산업재해의 증가를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차량의 구조적인 개선과 재활용 쓰레기 수거 운반 압착 차량으로 전면 교체해야 한다.

또한, 매연을 발생시키는 경우 차량을 친환경 차량(전기차 또는 수소차량)으로 교체하여 질병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한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유재현 판사)은 2021. 1. 14. 순천시에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폐암 진단(폐암 발암 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장기간 노출)을 받는 환경미화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자의 직업성 질병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차량을 운행하거나 발전소를 돌리면서 화석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대표적인 대기 오염 물질인 이산화질소(NO₂)가 퇴행성 뇌질환인 파킨슨병 발생과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⁵⁶⁾

4) 생활폐기물 수거 및 운반 작업의 선진화

환경미화원은 중량물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는 50L 이하로 부피 제한이 필요하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배출 용기가 비치되어야 한다. 음식물 비닐봉투는 들집승·조류로부터 훼손되며,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의 경우에도 10L이하로 부피제한이 필요하다. 재활용쓰레기는 분리배출이 절실히 요구된다. 배출방법의 지속적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 재활용쓰레기의 부피를 줄이려다 낙상, 미끄러짐, 골절 등 산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수거차량은 압착 차량으로 교체되어야 한다. 대형폐기물의 경우는 리프트 차량으로 수거차량의 구조 변경이 필요하다. 그리고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는 지자체 자체 처리가 되어야 하며, 소각장 시설 건설, 선별장 시설 확보, 집하시설 및 처리시설(대형폐기물)이 마련되어야 한다.

근무형태는 야간 격일지역 수거 ⇒ 야간 매일 전 지역 수거 ⇒ 주간 매일 전 지역 수거로 변경되어야 한다. 현 자치구 조례에도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대중교통 혼잡, 주민 생활에 불편을 이유로 야간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치구들이 있다. 환경미화원들의 안전과 업무 효율화를 위해 매일 전 지역 주간 수거를 시행해야 한다. 3인 1조 작업 준수와 자치구의 감시·감독기능 강화, 청소차량 안전기준 준수 위반치 처벌 조항도 마련되어야 한다.

56) <http://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60455>

5) 환경 및 자원순환에 대한 교육, 주민과의 협의체

환경 및 자원순환에 관한 교육은 유치원에서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에 대한 인식과 3R(Reduce·Reuse·Recycle)의 활동, 사회적 실천과 연계한 환경소양 등 가정, 학교, 직장, 지역 기타 모든 장소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폐기물 및 자원순환, 환경보전과 같은 생활환경에서부터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대기, 에너지와 같은 지구환경에 대해 폭넓은 교육을 실시하여 환경문화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가 높아져야 한다.

또한,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협의체(구청, 주민, 업체, 노동자)를 구성하여, 환경보호에 대한 주민공동체 의식을 함양해야 한다. 생활폐기물 배출을 줄이고, 자원회수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주민과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주민과의 협의체에서는 환경과 쓰레기 처리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청소노동자의 애로사항과 해결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

참고문헌

[해외문헌]

- Cybersecurity &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2020, April 17). Guidance on the essential critical infrastructure workforce: Ensuring community and national resilience in COVID-19 response (Version 3.0).
- Exposed, S(2020). Attacked: Failures to protect health and essential workers during the pandemic. Amnesty International.
- Knäbe, T., & Carrión-Crespo, C. R(2019). The scope of essential services laws, regulations and practices.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Kossek, E. E., & Lee, K. H(2020). The coronavirus & work-life inequality: Three evidence-based initiatives to update US work-life employment policies. Behavioral Science & Policy.
- World Health Organization, covid19.who.int_confirmed cases per week(2021. 09.16)
[https://econofact.org/essential-and-frontline-workers-in-the-covid-19-crisis\(2020.04.30\)](https://econofact.org/essential-and-frontline-workers-in-the-covid-19-crisis(2020.04.30))

[국내문헌]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201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작업 가이드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2018).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작업 가이드
- 관계부처 합동(2020).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2020.12)
- 권오성(2021). 필수노동자 지원에서 중앙·지방정부·노동센터의 역할에 대한 토론편, 제20회 서울 노동권익포럼
- 김규연(2017). 서울시 환경미화원 건강 및 안전 실태조사, 일과건강·노동환경건강연구소 2017 노동자 건강권 포럼
- 김신범 외(2010). 환경미화원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한 제안, 한국환경보건학회지, 36권 3호
- 김원·최인자·허승무·윤간우·조명심(2018),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실태 조사 및 건강검진 개선에 관한 연구, 안전보건공단
- 김준현(2020), 미국의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CARES Act」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41호

김진하·황민영(2021) 택배기사 근로환경 문제와 개선 방안, 정책리포트(2021.03.08.)

김철·남우근·장귀연·박주영·우문숙·공성식·권용희·박정환(2019). 공공부문 민간위탁 제도개선방안, 전국민중노동조합총연맹, 사회공공연구원,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남우근 외(2021). 강서구 필수노동자 현황 및 노동환경 실태조사, 강서구 ·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류춘호(2017). 지방정부의 민간위탁과 공공감사 전략, 감사논집 29호

마포구(2020).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연구용역, 청소행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행정과(2020). 2020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결과 공개자료 2020.12.30

성동구(2021). 성동구 필수노동자 정책 자료집

송파구(2021).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안, 국가법령정보센터

안전보건공단(2020). 국제, '코로나 일상'속 필수노동자의 안전보건 확보 방안, 주요 국제안전보건동향 476호

OECD(2020). OECD 고용전망 2020 - 코로나19: 보건 위기에서 일자리 위기로, 한국노동연구원, 이경희, 김영아 감수

외교부(2020). 코로나19 관련 캐나다 정부 경제지원 방안(2020.04.30.)

유기영(2011).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유기영(2015). 서울시 폐기물관리체계 A에서 Z까지, 서울연구원

이승운 외(2021). 성동구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및 지원 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성동구청

정진호 외(2018). 경비업 근로시간 개선을 통한 고용안정 효과, 한국노동연구원

조흥학(2015). 서비스업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연구원

채민석(2020). 코로나19 확산과 영국의 필수노동자,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최서연(2019). 환경미화원 작업실태와 산업재해 감소 방안,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최은숙 외(2011). 환경미화원의 작업별 산업재해 발생형태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간호학회지, 20권 2호

현승현·정승훈(2017). 지방정부의 민간위탁 수준이 생활폐기물 처리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1권 4호

환경부 외(2018).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 관계부처 합동

환경부(2016). 생활폐기물수집 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환경부(2020). 자가격리자 폐기물 보관·처리 체계

서울지역 필수노동자(환경미화원) 노동실태 조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서울지역의 민간위탁 환경미화원들을 대상으로 노동권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조사이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설문은 연구조사/정책수립을 위한 자료로만 사용되며 소속업체를 비롯한 개인정보는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 주관기관 : 서울노동권익센터
- ◆ 주관담당자 :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실 최은영 연구위원
- ◆ 조사기관 : (주)케이스탯리서치
- ◆ 조사담당자 : 윤주희 차장 (전화 : 02-6188-6051)

PART A. 일반사항

1. 귀하의 현재 직장 지역은 서울 내 어디입니까?

- | | | | | |
|--------|-------|--------|--------|-------|
| ① 종로구 | ② 중구 | ③ 용산구 | ④ 성동구 | ⑤ 광진구 |
| ⑥ 동대문구 | ⑦ 중랑구 | ⑧ 성북구 | ⑨ 강북구 | ⑩ 도봉구 |
| ⑪ 노원구 | ⑫ 은평구 | ⑬ 서대문구 | ⑭ 마포구 | ⑮ 양천구 |
| ⑯ 강서구 | ⑰ 구로구 | ⑱ 금천구 | ⑲ 영등포구 | ⑳ 동작구 |
| ㉑ 관악구 | ㉒ 서초구 | ㉓ 강남구 | ㉔ 송파구 | ㉕ 강동구 |

2. 귀하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명 무엇입니까? _____

3. 귀하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얼마입니까?

- ① 1-4명 ② 5-9명 ③ 10-29명 ④ 30-99명 ⑤ 100-299명 ⑥ 300명 이상

4. 귀하의 업무 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환경미화 총 업무 경력	현재 직장 경력
_____ 년 _____ 개월	_____ 년 _____ 개월

※ 환경미화 총 업무 경력 ≥ 현재 직장 경력

PART C. 노동환경(작업환경, 휴게시설)

11. 귀하가 현재 지급 받고 있는 **안전 보호장구**는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주세요. (중복응답)

- | | | |
|--------------------|-----------------|------------------|
| ① 안전모 | ② 안전화 | ③ 형광안전조끼, 형광티 |
| ④ 작업복 | ⑤ 반코팅 장갑 | ⑥ 절단보호장갑 |
| ⑦ (형광)작업우의 | ⑧ 미끄럼방지장화 | ⑨ 보호안경 |
| ⑩ 방한용품(의복, 장갑, 장화) | ⑪ 마스크(미세먼지, 방진) | ⑫ 무릎보호대, 허리손목보호대 |
| ⑬ 의료 위생의약품 | ⑭ 기타() | |

12. 귀하가 현재 하고 있는 **안전수칙**은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주세요. (중복응답)

- ① 미끄럼방지 신발, 손 보호 장갑 등의 개인보호구 착용
- ② 안전근무복, 반사판이 부착된 안전조끼 착용
- ③ 작업환경 및 조건에 맞는 보호구 착용
- ④ 차량에 매달려 이동하지 않음
- ⑤ 야간작업시 헤드램프 등 간이용 조명기구 사용
- ⑥ 중량물 취급시 이동대차 등을 활용

13. 귀하의 **청소차량에 있는 안전장치**는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주세요. (중복응답)

- ①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 ②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전방영상장치
- ③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좌우측방영상장치
- ④ 비상시 적재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 ⑤ 비상시 적재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 ⑥ 없음

14. 귀하가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중복응답)

- ① 폭염·강추위 ② 폭설·폭우 ③ 태풍·강풍 ④ 미세먼지(매우 나쁨) ⑤ 작업중지 받은 적 없음

18-1. (18번 ②응답자) 귀하의 고용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계약직 ② 임시직 ③ 촉탁직 ④ 일용직

18-2. (18번 ②응답자) 현재 일하는 곳에서 귀하의 근로계약기간은 얼마입니까?

-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1년 미만 ③ 1년-2년 미만
④ 2년-3년 미만 ⑤ 3년 이상

18-3. (18번 ②응답자)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횟수는 몇 회입니까?

- ① 갱신한 적 없음 ② 1회 ③ 2회
④ 3회 ⑤ 4회 ⑥ 5회 이상

19. 귀하의 사업장에 정년퇴직 연령이 정해져 있습니까?

- ① 정해져 있다→(만 _____ 세) ② 정해지지 않았다 ③ 모른다

PART E. 노동조건(임금·근로시간)_휴게시간 포함

20. 현재 직장의 근무 시간(출·퇴근시간)은 보통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8시간 미만 근무자는 출근 시간 기준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 ① AM 1:00 ~ AM 10:00 ② AM 2:00 ~ AM 11:00 ③ AM 3:00 ~ PM 12:00
④ AM 4:00 ~ PM 1:00 ⑤ AM 5:00 ~ PM 2:00 ⑥ AM 6:00 ~ PM 3:00
⑦ AM 7:00 ~ PM 4:00 ⑧ AM 8:00 ~ PM 5:00 ⑨ AM 9:00 ~ PM 6:00
⑩ 기타()

21. 귀하의 평균 근무일과 노동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1. 주당 근로일 수	주 () 일
2. 계약상 근로시간 *식사 등 휴게시간 제외	일 평균 () 시간
3. (코로나19 이전) 실제 근로시간 *식사 등 휴게시간 제외	일 평균 () 시간
4. (코로나19 이후) 실제 근로시간 *식사 등 휴게시간 제외	일 평균 () 시간
5. 휴게시간	일 평균 () 시간

- 계약상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으로, 규칙적인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연장근로(시간외근로/휴일근로) 시간은 제외
- 실제 근로시간 : 작업준비 시간 등 사실상 회사의 통제 하에 있는 일체의 시간을 포함
- 휴게시간 : 휴식시간, 식사시간 및 개인 용무 등에 사용하는 시간

22. 귀하가 현재 지급받고 있는 수당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골라주세요. (중복 응답)

- ① 연장(시간외) 근로수당 ② 야간근로수당 ③ 휴일근로수당
- ④ 연차수당 ⑤ 주휴수당 ⑥ 체력단련수당
- ⑦ 직책/직급 수당 ⑧ 근속수당 ⑨ 운전수당
- ⑩ 위험수당 ⑪ 경조사수당 ⑫ 여름휴가수당
- ⑬ 병가(상병휴가) ⑭ 명절수당 ⑮ 교통비지원
- ⑯ 식대지원 ⑰ 가족수당 ⑱ 법정퇴직금
- ⑲ 기타(_____)

23. 귀하가 현재의 직장에서 받고 있는 임금수준(야간근무, 토요일근무, 휴일근무 포함)은 어느 정도입니까? 월 평균 세후 급여(4대 보험 및 소득세 포함된 세후 급여)

월	(_____)	만원
---	---------	----

24. 귀하가 연차휴무 사용 시 회사에서 대체인력이 투입됩니까?

- ① 대체인력 투입한다 ② 대체인력 투입하지 않는다 ③ 모른다

25. 귀하는 현재 회사를 통해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 ① 가입되어 있음 ② 가입되어 있지 않음 ③ 모름

PART F. 코로나 상황

26. 귀하의 직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래의 내용 중 경험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용	항상 있음	자주 있음	가끔 있음	거의 없음	전혀 없음
1	대면 업무가 불가피하여 코로나 감염에 대한 불안감	①	②	③	④	⑤
2	필수업무 수행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건강 악화	①	②	③	④	⑤
3	방역관련 업무(휴게실 및 청소차량 소독 등)로 인한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4	마스크 착용 등 작업환경 변화에 대한 피로도 증가	①	②	③	④	⑤
5	방역 물품 미지급으로 인한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27. 귀하의 작업현장이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 ① 전혀 안전하지 않다 ② 별로 안전하지 않다
- ③ 어느 정도 안전하다 ④ 매우 안전하다

28. 코로나19 영향으로 노동환경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골라주세요. (중복응답)

- ① 전체 근로시간 증가 ② 전체 근로시간 감소 ③ 일하는 방식이 바뀜
- ④ 새로운 업무가 추가됨 ⑤ 노동강도 증가 ⑥ 변화 없음

29. 코로나19 이전/이후 업무량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5에서 응답하신 직무분야**별로 해당하는 문항에 응답해주시시오.

29-1. **[상차원]** 코로나19 상황 이전과 비교하여, 귀하가 작업하는 쓰레기 종류별 하루 평균 수거하는 쓰레기의 양(ton)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쓰레기 종류	코로나19 이후, 하루 평균 수거하는 쓰레기 양(ton) 변화 정도					
① 생활쓰레기(종량제)	①매우 증가	②증가	③동일	④감소	⑤매우 감소	⑥해당없음
② 음식물쓰레기	①매우 증가	②증가	③동일	④감소	⑤매우 감소	⑥해당없음
③ 재활용쓰레기	①매우 증가	②증가	③동일	④감소	⑤매우 감소	⑥해당없음
④ 대형폐기물	※대형폐기물은 쓰레기 양(ton) 작성하지 않음					

29-2. **[운전원]** 코로나19 상황 이전과 비교하여, 귀하가 운전하는 청소차량의 하루 평균 이동 거리(km)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 ① 매우 증가 ② 증가 ③ 동일 ④ 감소 ⑤ 매우 감소

30.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임금(상여 포함)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 ① 변화 없음 ② 감소 ③ 증가

31. 귀하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코로나19로 인한 보호장구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주세요. (중복응답)

- ① 마스크 ② 일회용장갑 ③ 보호복
④ 일회용 토시 ⑤ 안면 쉴트 보호대 ⑥ 지급받지 못함

32. 귀하는 현재 직장에서 코로나19 유증상 시 휴가를 갈 수 있는가?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33. 귀하는 현재 직장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시 휴가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① 백신 접종 당일 공가 휴가 ② 백신 접종 당일 유급 휴가 ③ 정해진 바 없음

[직장(일자리)의 코로나19 대응조치]

34.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장 휴게실 및 현장 휴게실에 정기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① 주 1회 ② 월 2회 ③ 월 1회 ④ 소독 안함 ⑤ 모름

35. 귀하의 직장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 교육이나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 ① 전혀 하지 않는다 ② 별로 하지 않는다 ③ 어느 정도 한다 ④ 항상 한다

PART G. 애로사항

36. 현재 귀하는 근로조건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용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임금	①	②	③	④	⑤
2 고용안정성	①	②	③	④	⑤
3 승진·승급제도	①	②	③	④	⑤
4 장시간 근무	①	②	③	④	⑤
5 야간근무	①	②	③	④	⑤
6 부족한 휴식/휴가	①	②	③	④	⑤
7 부족한 인력	①	②	③	④	⑤

37. 현재 귀하는 노동환경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용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중량물(일25KG이상 1인작업) 등 과도한 업무량	①	②	③	④	⑤
2 높은 업무 강도	①	②	③	④	⑤
3 산재사고에 대한 부담(산재신청이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4 주민 응대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5 건강상 질환(근골격계, 호흡기 질환 등)	①	②	③	④	⑤
6 정신육체피로	①	②	③	④	⑤

38. 현재 귀하는 작업환경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용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교통사고 위험	①	②	③	④	⑤
2 매립지, 소각장, 자원순환시설 등 안전시설 미비	①	②	③	④	⑤
3 작업구역 권역별 휴게실 등 복지시설 미비	①	②	③	④	⑤
4 작업도구 및 안전장구류 수량 부족	①	②	③	④	⑤

39. 현재 귀하는 사회적 환경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용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낮은 사회적 평가	①	②	③	④	⑤
2 직영/민간 청소노동자 간의 차별	①	②	③	④	⑤
3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	①	②	③	④	⑤

PART H.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 대책

40. 환경미화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회사가 지원해야 할 과제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내용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임금체계 개선	①	②	③	④	⑤
2 근로시간(작업시간) 단축	①	②	③	④	⑤
3 근무대기실 개선, 휴게실 정비 등 복지시설 확충	①	②	③	④	⑤
4 작업복 및 작업용품 제공	①	②	③	④	⑤
5 건강검진(공단) 및 입원(외래포함)시 유급평가 지원	①	②	③	④	⑤
6 위험성평가 등 작업안전 사고 대응 시스템도입	①	②	③	④	⑤
7 스트레스, 정신적 소진 등 심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지원	①	②	③	④	⑤

41. 서울지역 환경미화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지원해야 할 과제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내용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 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작업인력 충원 및 대응체계 마련	①	②	③	④	⑤
2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고용안정(일방적 해고금지)	①	②	③	④	⑤
3 필수노동자 사회적 위험수당 등 금전적 보상	①	②	③	④	⑤
4 안전장비 품목 지원 확대	①	②	③	④	⑤
5 노후 청소차 신속 교체 및 친환경청소차 보급 확대	①	②	③	④	⑤
6 서울시 지역 공무원과 차별 없는 임금, 복리후생 등 개선 방안 마련	①	②	③	④	⑤

42.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환경미화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지원해야 할 과제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내용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 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재난상황의 청소작업 업무 가중에 따른 보상	①	②	③	④	⑤
2 생활폐기물 작업구역 내 위생시설 확대(휴게, 샤워시설 등)	①	②	③	④	⑤
3 청소차량 및 시설물 소독 강화	①	②	③	④	⑤
4 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 작업수행시 필요한 개인용 방역 물품 제공	①	②	③	④	⑤
5 감염방지를 위한 빠른 예방접종 실시 및 감염시 치료비용 전액지원	①	②	③	④	⑤

서울지역 필수노동자(환경미화원) 노동실태 FGI 질문지

1. 고용안정(고용형태·계약형식)

- 현재 일자리(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본인 포함 동료들의 고용은 안정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고용형태
- 현재 일하시는 곳에서 얼마나 오래 일하셨습니다? 그동안 업체가 변경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에 대해 이야기 해주십시오.
- 현재 사업장은 위탁계약을 받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고용승계가 잘 이루어지는 편입니까?
- 현재 사업장에서의 정년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2. 노동조건

1) 근로시간

- 근무표(근무스케줄)이 배치 될 때, 노동자 의견을 반영하여 배치되는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배치되는지요?
- 근무스케줄 변경이 유동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도 무조건 출근해야 하는 구조인지? + 갑작스런 사정에 의해 변경 후 부당한 처우를 받으신 경험이 있으신지?
- 주간 근로시의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야간 근로시의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실제 근로시간 보다 초과해서 근로하신 경험(연장근로)이 있으십니까?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에 대해 이야기 해주십시오.
- 휴일근로를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2) 임금

- 월급 명세서에 세부항목(수당, 보험료 등)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습니까?
-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산정 방법 규정에 따르면, 일급을 기준으로 임금지급형태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은 기본급을 산정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하시는 곳에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급여를 산정하고 있습니까?

-일 급: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중 보통인부 노임단가
-시 급: 일급 ÷ 8시간
-월 급: 일급 × 월 근무일수
-연 봉: 월급 × 12개월

공 표 일		2021.1.1	2020.9.1	2020.1.1	2019.9.1
번호	직 종 명				
1002	보통인부	141,096	138,989	138,290	130,264

- 수당 관련하여 원가 산정 규정에 의해 제수당으로써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 휴가수당, 특수작업수당(위험수당), 운전수당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 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및 야외에서 야간에 작업이 이루어지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특수작업수당(위험수당) 월 90,000원을 적용되고, 청소 차량 운전자에 한하여 운전수당 월 200,000원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 지급되지 않는다면, 어떤 항목이 현재 누락 되고 있습니까?
- 성과급과 관련하여 고정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까?

3. 업무수행방식 및 업무범위

- 현재 업무수행방식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실수 있습니까? 하루 노동과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해주십시오.
- 현재 사업장에서는 환경부 권고사항인 3인 1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 현재 본 사업장은 성상별(쓰레기 종류별)로 운영되는지 아니면, 지역별(총 쓰레기 통합수거)로 운영되는지? 만약 변경되었다면 그로 인한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요?

4. 산재 위험

- 귀하가 경험한 산재 위험을 이야기 해주십시오.
- 귀하의 사업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재위험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그 과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해주십시오.

예) 적환장 마감시간 때문에 업무를 서두르다,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일어날 뻔 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자세히 이야기 해주십시오.

야간 근무시,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일어날 뻔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자세히 이야기 해주십시오

초과 근무시,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일어날 뻔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자세히 이야기 해주십시오.

기상악화(폭우,폭설,폭염등)으로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일어날 뻔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자세히 이야기 해주십시오.

과노동으로 인해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일어날 뻔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 작업 용품 미비 혹은 노후로 인해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일어날 뻔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 안전장치 미비로 인해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일어날 뻔한 경험이 있으니까?
-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감정노동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자세히 이야기 해주십시오.
- 산재위험에 대해 현재 사업장에서는 어떠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 산재안전교육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방식은 어떠합니까?

5. 코로나 상황에 대한 질문

- 코로나 19 영향으로 근로시간에 변화가 있으십니까? 시간의 변화 경험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해주십시오.
- 코로나 19 영향으로 쓰레기량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업무량과 노동강도에 변화가 있으십니까? 있다면 그 경험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해주십시오.
- 작업현장에서 코로나 19 감염위험이 느끼신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해주십시오.

6. 직장에서의 복리후생

- 현재 회사 내 휴게실이 성별로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휴게실 환경은 어떠합니까?
- 휴식시간에 휴식 시에 눈치를 주거나, 휴식을 못하게 하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백신 휴가가 제공되었습니까? 제공되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되었습니까? (공가, 병가(유급휴가), 본인 연차에서 삭감, 유급휴가)
-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유증상자 접촉으로 자가격리시 휴가가 제공됩니까? 제공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됩니까? (공가, 병가(유급휴가), 본인 연차에서 삭감, 유급휴가)
- 가족돌봄휴가나 상조휴가가 자유롭게 제공됩니까?

7. 현장에 필요한 대책

-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서울지역 환경미화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지원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환경미화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지원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을 위해 회사가 지원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집필진

- 최은영 (서울노동권익센터 연구위원)
- 이상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선임연구원)

서울지역 필수노동자 노동실태와 권익개선방안
: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을 중심으로

- 발행연월일 2021년 12월 31일
- 발행인 이남신
- 발행처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105 전태일기념관 5층
 02)6925-4349, www.labors.or.kr

ISBN 979-11-87917-24-3

(비매품)